제31호 / 2007 · 9 · 1

시대의 논리

민족연구 31

조정남 편

교 양 사 회

발 행 처 : 교양사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507호

편 집 인 : 조정남(☎010-4716-3616)

발 행 일 : 2007년 9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ISSN 1229-2796 / 값 15,000원

이 책의 편집발행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자유공모분야)에 의해 수행 되었음"

31
2007
Autumn

시대의 흐름 민족연구

특 집 현대의 다문화가족

6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 김현희
50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 김희선
86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김범수
113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 이용승

〈인터뷰〉
129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140 **충남지역 여성 1명** – 김재원 / 김희선
부산지역 여성 3팀 – 김재원

〈르 포〉
154 **세계 국제결혼여성대회**

특별논단
164 崔溥漂海登陆及行经台州地名考析 – 王金龙
번역 / 최철호 (교양사회 대표)

Minjok Yeonku

Vol. 31

CONTENTS

Study on the Circumstances and Present Situation of Immi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 6

Hyun-Hee Kim (Researcher, Pyeongtaek University)

Study on Supporting Programs for Multicutural Family in Korea. --- 50

Hee-Seon Kim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Study on Supporting Program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Japan: Case Study on the Yamagata Prefecture. --- 86

Bum-Soo Kim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

Policy on Multicultural Family in Germany. --- 113

Yong-Seung Lee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Study on Choi Bu' s Mooring and Landing Point and his Travel Routes across Taizhou at Zhejiang in China. --- 164

Wang Jing Long (Professor of Taozhu Education Academy for Grown-ups)

특집

현대의 다문화가족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 김현희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 김희선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김범수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 이용승

〈인터뷰〉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충남지역 여성 1명 – 김재원 / 김희선

부산지역 여성 3팀 – 김재원

〈르 포〉

세계 국제결혼여성대회

특집

한국의 결혼이민[1] 배경과 현황

김 현 희
(평택대 · 다문화가족센터 연구원)
amen0708@hanmail.net

들어가면서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반목과 적대적인 거리 구획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보와 경제, 그리고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탈국가화 현상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2]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차단의 벽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지역적인 거리나 국경과 같은 차단의 벽을 무의미하게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초국가주의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더 좋은 돈벌이를 위하여 자국의 값싼 노동시장을 떠나 값비싼 외국의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

1) 본고에서 결혼이민이란 1890년대 말부터 시작 된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정남,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제30호, 2007, pp. 6-15

편화되었다. 요컨대 현대 사회는 세계화 현상으로 정보과 돈과 사람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른바 국경 없는 시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80년 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였다. 법무부는 2007년 4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93만 8,863명으로 밝힘으로써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외국노동자들의 유입은 서구의 경우 몇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동시에 발현된 셈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지하철이나 거리 어디에서나 흑인과 백인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가 통용되는 이국적인 모습이 일상화됨으로써 외국인 10%로 분류되는 이민사회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산업현장을 지키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우리사회의 풍조 속에서 3D업종의 산업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가동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및 노동력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예고하였으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며느리를 대신하여 가정을 지키며 대를 잇는 안주인의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단일민족의 신화는 타민족과 문화를 거부하고 차별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사업장 이동, 산업재해 노출, 인권유린 등 극도의 박탈감으로 충돌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최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사건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자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과 인권보장, 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외국인력정책이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산재된 문제로 노동자의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한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주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가시화되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각 행정부서에서 정책과제 제시와 적극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합류하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중앙정부 발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다문화가 만능인 양 너도 나도 다문화 붐을 이루는 현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초기단계여서 미흡함과 제한점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동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의 중복과 지역별, 지방자치단체별, 민간단체별 심한 서비스의 편차와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일회성 교육, 지역적 접근성의 어려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글 · 요리 ·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85%이상 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가시적인 한국사회의 조기정착과 적응, 동화 그리고 재사회화를 우선하여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의 절박한 문제는 미숙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부부갈등, 가정폭력, 임신과 출산, 보육 및 교육문제, 자녀의 부적응, 취업의 어려움, 자국 송금에 대한 부담 등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결혼이민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폭력을 겪으며 급증하는 이혼율로 가정이 해체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요컨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지원대책은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확보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이민자들이 korean dream을 안고 입국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우리사회에 존재할 이유와 우리사회가 그들을 지원해야할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현황과 결혼생활, 자녀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으며, 중복된 서비스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긴급하고 우선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이 있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 · 추진하는 기초자료로써 결혼이민자의 유입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전제될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규모를 예측하게 하고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포용과 관용으로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유입배경

우리사회에 결혼이민자를 유입하게 된 배경은 초국가적인 세계화로 인한 인구

이동과 국내의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남녀 성비불균형 현상과 맞물려 있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과 함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본의 세계화와 인구이동

세계화(Globalization)[3]는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영국에서는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라는 이름으로 ' 탈(脫) 규제화 정책 '이 본격화되면서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1989년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경제의 유일 체제가 자본주의로 고착되면서 ' 시장경제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시장 본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경제의 중심논리가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축소시키며,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경제를 확대하였고 세계인구의 20%가 세계 소득의 82.7%를 차지하는 이른바 20대 80의 사회를 초래하였다. 2000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하루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2달러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무려 30억에 이르고, 세계 노동인구의 1/3은 실직자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방편으로 국경을 넘게 되고 그 나라의 불안전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가속력을 더하여 국제무역 활발과 교통 · 통신 수단의 발달로 자본과 상품과 사람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였다. 심지

〈그림 1〉 이민도 세계화 '타국살이' 2억 명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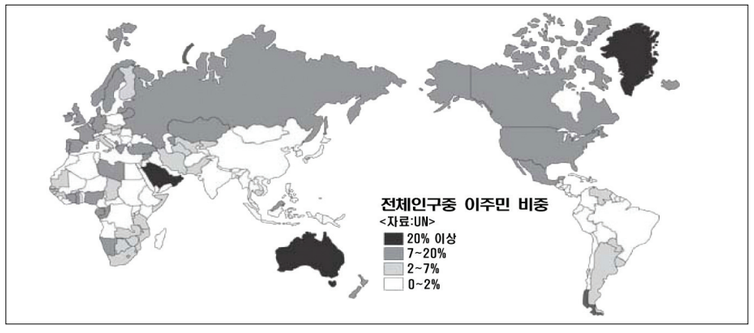

자료 : 〈경향신문〉 2006. 7. 21

3) 세계화에 대하여 Microsoft 백과사전, "Globalization," in Encarta 2000, 항목에서는 세계화를 부자나라 종주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초국가적 투자, 커뮤니케이션, 정보 테크놀로지의 확산, 자유시장의 힘이 지방, 지역, 민족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통하여 세계의 문화, 경제, 하부구조(경제구조)를 통합하고 민주화하는 것.

어 IBLO(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MAI(다자간무역협정) 등의 기구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4)]

<그림 1>과 같이 '타국살이' 즉 이민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민 인구는 현재 약 2억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경제부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유럽, 북미,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의 절반가량은 여성으로 선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부자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라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부자나라로 국경을 넘는 것은 철저히 통제를 당하고 있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노동통제정책을 통하여 외국노동인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는 불법체류자, 소위 미등록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절대빈곤, 지독한 실업 등의 상황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게 되는 노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생존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이주민의 유입은 체계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1987년 이후 제조업과 건설부문의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이 전무했으므로 이 시기에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전원은 미등록자들이 되었다. 그 이후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급증하여 현재 4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들은 산업현장에서 3D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력정책상의 미흡함과 폐쇄주의적 단일민족 의식으로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및 인권침해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다문화가 공존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대량 유입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부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남성들의 이주는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의 이주는 결혼이나 성산업 관련 취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규제에 따라 성산업과 관련된 이주는 다소 주춤하는데 비하여 결혼을 통한 이주는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른바 '남성=노동이주, 여성=결혼이주' 라는 이주의 성별구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5)] 이러한 국제결혼은 시기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비율 차이가 나타나며, 이민의 목적도 조금씩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 취득 및 경제적 지위향상 등 'korean dream'을 안고 결혼하는

4) 김범수,『다문화사회복지론』(파주:양서원, 2007), p. 5
5) 김이선 외,『여성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6). p.5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남녀성비불균형

최근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2년 신생아 49만 5천명(1.17)에서 2003년에는 49만 3천명(1.19)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인구전문가들은 출산률을 1.8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가임여성 수가 너무 부족하여 결국 인구는 줄어들 것이며, 2050년에는 1천만 명의 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고령화를 촉진시킨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은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2004년 8.7%였던 노인 인구는 2018년에는 14%로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데 2005년에는 생산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고령화를 대비하여 왔다. 선진국의 인구는 2050년 까지 현재의 12억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50여 저개발국 · 개도국의 인구는 현재 53억에서 78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도국의 인구증가는 곧 바로 식량부족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킨다.[6)]

특히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뿌리박혀 남자가 여자 보다 많은 성비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국제결혼정보는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남녀성비 불균형은 제3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흡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원인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에는 국제결혼이 기지촌 여성과 미군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결혼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제결혼과 혼혈아에 대한 편견이 지금도

6) 김범수,『다문화사회복지론』(파주:양서원, 2007), p. 6.

심하다. 최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회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남성이 제 3세계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7)]

첫째, 우리나라의 남녀 성비불균형과 함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결혼을 당연히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은 관습적인 결혼 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은 해야 하며, 자녀를 낳아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이 제 3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과는 값싸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고 있지만, 제 3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종교는 이러한 국제결혼(심지어 얼굴도 보지 않고)을 공공연하게 선교행사로 치르고 있다. 또한 길거리 마다 공공연하게 "000여성과 결혼알선"등이 나붙어 있는 데도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이 난립하여 매매혼적인 결혼시장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넷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펼치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최근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영향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의 시작은 1995년부터 정부가 농촌 총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농

7) 한국염,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과제," 『한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제와 향후 방향성』(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2007), p. 39.

촌총각의 배우자로 대거 유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당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 여성들은 6개월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잠적하는 일이 생기는 등 위장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녀차별적인 국적법을 평등하게 바꾸면서 종전에는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던 국적취득을 위장결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적신청 자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2000년대에 와서는 초창기의 중국여성과의 결혼은 주춤해지고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05년 국민 8쌍 중 농촌 지역의 35%가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가 되자 여성결혼이민자 급증에 따른 문제가 국정과제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어 정부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특히 사회의 관심이 농촌의 국제결혼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례까지 제정하여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5월 말 현재 지자체가 농촌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8개 도 60개 시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기초단체 246곳의 1/4에 해당된다. 1인당 평균 지원 예산은 500만원이며,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도와 시 · 군이 공동부담 형식으로 결혼을 지원하고 있다.[8] 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예산 현황은 <부록 1>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지자체가 농어민 장가보내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약 28억 5천만 원 상당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예산보다 평균 6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록 2>에서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예산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착 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국제결혼가정 상당수가 가족불화를 겪고 있으며,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을 위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은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농어민 후계자 양성의 일환으로서의 농촌총각 구하기가 섣부른 국제결혼을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사회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결혼이민자를 유입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았다. 즉, 결혼이민자 유입배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흐름과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았다.

8) 한국염,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자료집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2007), pp. 7-15.

결혼이민의 현황

한국의 결혼이민의 현황으로서 결혼이민자의 성별, 시기적 변화 , 수적 변화, 국적, 학력, 연령, 소득, 지역 분포, 결혼생활, 자녀, 복지서비스 이용 그리고 결혼이민자지원기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별, 성별 변화

1990년대 초에는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표 1>에서처럼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 경우에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이 주종을 이루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소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일반적인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05년에는 국제결혼이 43,375건으로써 전체 결혼 건수의 13.6%로 나타났으며, 이는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셈이 된다.

<그림 2>는 국제결혼 성별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한국 남성과 외국

〈표 1〉 국제결혼 추이: 1990~2005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한국인 남성		외국인남성+ 한국인 여성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375	**13.6**	31,180	9.9	11,941	3.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인 여성의 결혼은 31,18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11,941건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써 전체결혼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림 2〉 국제결혼 성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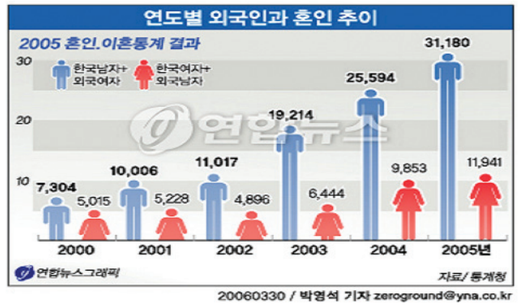

그러나 2006년 혼인건수는 2005년도에 비하여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가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 예고로 향후 중국교포 등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전년보다 3.1% 감소하였으며,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의 시기적 변화는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결혼을 둘러 싼 제도적 변화에 따라 다소 굴곡이 있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 여성들이었으며.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국계 중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국제결혼이 97~99년에는 현저히 퇴조하였는데, 이는 당시 IMF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와 함께 한국계 중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 사기 결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남성들의 피해와 관련 범죄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1998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국적취득이 어려워진 것도 결혼 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후반에는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이 주춤하고 미국, 일본, 중국 이외 지역 출신들과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통일교를 통한 동남아 일부 여성들과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통일교의 국제결혼 사업인 '참가정운동' 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일본인 여성교도와 한국인 남성교도간의 결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통일교 측에서 범세계적인 참가정운동을 벌여 통일교도 이외의 필리핀과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도 대거 '축복결혼' 대열에 합세시켰으며, 통일교도가 아닌 한국 남성들도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결혼정보회사나 사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 그리고 통일교를 통한 필리핀, 태국인,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결혼정보업체들이 증가하는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의 수요를 자신들의 사업 대상지역을 끌어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비용[9]은 국제결혼정보회사에 따라, 결혼 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결혼 성사비용은 보통 200~300만 원 정도로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10] 결혼정보회사는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 주며 한국남성이 결혼의사를 밝히면 일정을 조절하여 혼인절차를 대행해 준다. 이러한 과정은 먼저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45일 후 2차 출국 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의 성사를 위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부장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시집에 순종 잘하는 한국 전통여인상에 맞추어 상업화하고 있으며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나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의 직장을 속이며, 자국에 송금 가능성,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허위정보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장된 정보에 의해 여성들은 결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한국에 와 보면 현실과 달라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속수무책일 뿐이며, 이로 인하여 초기부터 결혼생활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수적 변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주 노동자 수의 증감에 맞추어 국제결혼도 같은

9) 쥬피터라는 국제결혼문화원의 경우 중국은 500만원, 베트남 600만원, 필리핀 500만원, 러시아 700만원.
10) 한국염,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과제," 『한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제와 향후 방향성』(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2007), p. 37.

〈그림 3〉 국제결혼의 수적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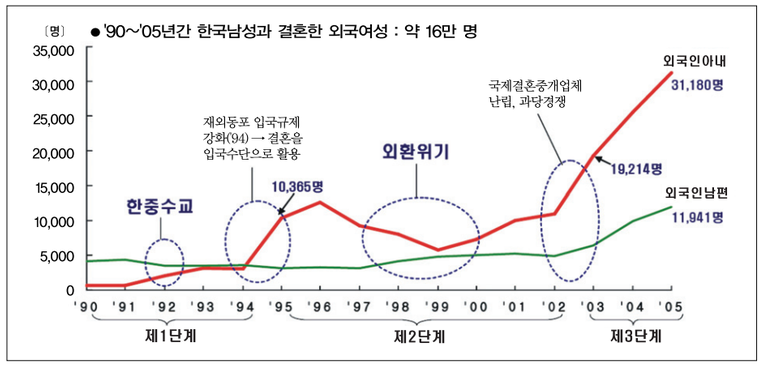

흐름을 보인다. <그림 3>은 국제결혼의 수적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결혼의 추이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한 단계이다.

제2단계는 1994년 재외동포입국규제 강화로 결혼을 입국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한다. 그러나 IMF의 외환위기와 중국계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중국여성과의 결혼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결혼이 감소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다시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행당된다. 2000년대 초,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과 2003년 7월 한 · 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 · 중국 중에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중국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영향에 따라 국제결혼은 더욱 상승세를 타게 된다.

국적별 변화

우리나라에 개인적인 국제결혼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보다 대규모의 결혼은 한국 전쟁 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우리나라에 미군이 점령하였고, 6.25를 거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계속 주둔하게 되었으며,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전후의 혼란, 경제파탄, 다수의 인명살상 속에 55만 여명의 여성들은 과부가 되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존재로 전락하였으며, 전쟁의 궁핍한 상황에서 일부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호구지책의 일환으로 매춘에 종사하였다.[11] 이러한 초기의 국제결혼은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의 인구이동이 보편화되면서 국제결혼도 급증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여성들로서 1% 미만의 소수였으나 1992년부터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계 중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중국인의 위장결혼, IMF 등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인과의 결혼이 감소하고, 그 대신 통일교를 통한 필리핀, 태국 등의 여성과 결혼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문화나 생활양식, 가족 중심적 사고, 유교적 습관, 종교, 얼굴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고,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순종적이며 출산율도 높고, 참을성도 많아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로 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별 현황은 <표 2>과 같다. 2006년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을 보면 중국, 베트남 여자가 외국인 처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높은 증가율(74.0%)을 보였고, 캄보디아는 전체 외국 여자와의 혼인의 1.3%에 불과하나 151.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여자와의 혼인은 2005년 보다 큰 폭의 감소율(-29.2%)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별 현황

(단위 : 건, %)

가구소득	전체 (945)		중국 동포 (340)		기타 외국 (605)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66,009	64.8	1,143,340	67.7	805,845	61.5
본인	**(415,677)**	**(27.9)**	(507,629)	(30.0)	332,627	(25.4)
남편	**(529,773)**	**(35.5)**	(616,353)	(36.5)	451,574	(34.5)
기타가구원	(20,559)	(1.4)	(19,357)	(1.1)	1,644	(1.7)
이전소득	13,563	0.9	5,155	0.3	20,832	1.5
정부지원금	(7,555)	(0.5)	(4,864)	(0.3)	9,986	(0.8)
친지·민간	(6,008)	(0.4)	(651)	(0.0)	10,847	(0.8)
자본소득	24,894	1.7	23,881	1.4	25,808	2.0
사회보험소득	15,156	1.0	15,508	0.9	14,839	1.1
기타소득	470,758	31.5	501,266	29.7	443,203	33.8
총 가구소득	**1,490,380**	100.0	1,689,511	100.0	1,310,528	100.0

* 기타에 포함

※ 자료: 통계청,「2006년 혼인 통계 결과」, '06.3

11) 최강민. "단일민족의 신화와 혼혈인", 語文論集(제 35), 중앙어문학회, 2005. p. 290.

다음의 <그림 4>는 결혼 성별에 따른 국적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국제결혼 건수는 43,121건으로 전체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하였으며,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은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순이다.

학력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양하며, 조사표집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결혼 성별에 따른 국적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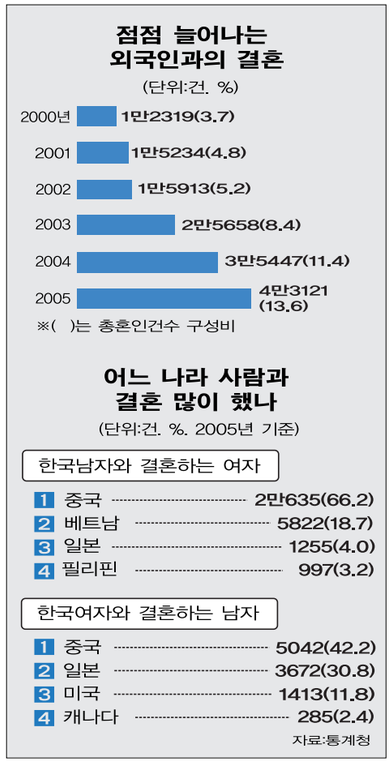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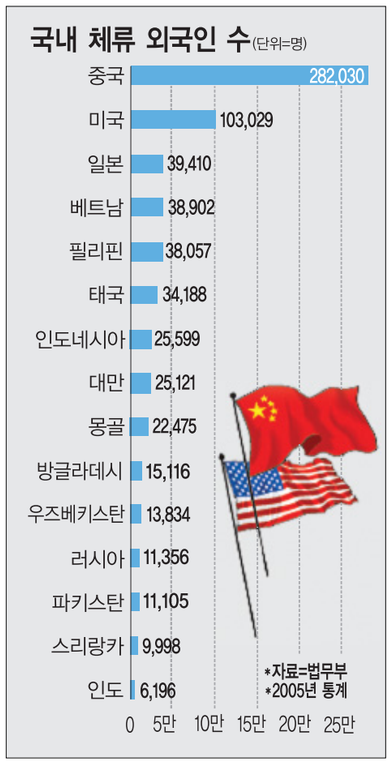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여성 346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서울정책포커스>에서 결혼이민 여성의 학력은 고졸(32.7%)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06년 경남 진주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고졸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이상이 28.6%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는 고졸이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졸이 31.3%로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졸업은 10.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상은 74.4%로 전체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4>는 한국인 남편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은 74.5%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한국 남성 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남편의 학력은 농촌과 도시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94)	(66)	(55)	(31)	(37)	(10)	(8)	(9)	(13)	(423)
중학교 미만	7.7	1.5	7.3	19.4	5.4	10.0	0	0	15.4	7.3
중학교	20.6	10.6	18.2	19.4	27.0	30.0	0	0	7.7	18.2
고등학교	57.2	51.5	40.0	48.4	56.8	50.0	75.0	44.4	38.5	**52.7**
전문대 이상	14.4	36.4	34.5	12.9	10.8	10.0	25.0	55.6	38.5	**2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한국인 남편의 학력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91)	(65)	(55)	(31)	(37)	(10)	(8)	(9)	(13)	(419)
중학교 미만	7.3	1.5	0	6.5	13.5	20.0	0	0	0	5.7
중학교	25.7	20.0	3.6	6.5	40.5	20.0	0	0	0	19.8
고등학교	51.3	53.8	41.8	29.0	45.9	10.0	0	22.2	23.1	**44.9**
전문대 이상	15.7	24.6	54.5	58.1	0	50.0	100.0	77.8	76.9	**2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82,828명 중 75%는 도시지역(동지역)에 거주하며, 25%는 농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함을 밝히고 있다.

연령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연령은 90세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 젊은 층이 많다. <표 5>는 외국인 총인구 연령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연령은 주로 20대에서 40대의 연령층이 많다. 2006년도 조사에서 볼 때, 25세에서 29세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세에서 34세, 35세에서 39세, 20세에서 24세, 40세에서 44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젊은 층으로써 20세부터 44세 까지가 전체의 73%에 해당된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주민 대상으로 한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21~30(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31~40세(33.9%), 44-50세(12.8%), 20세 이하(6.3%), 51세 이상(1.3%), 무응답(1.6%)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은 조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2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제결혼의 성별 연령 차이는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경우 평균 연령차가 2.4세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경우 남자가 평균 11.5세로 나이 차이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이 차는 많게는 30세까지 나는 경우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외국인 여성은 나이가 어리고, 그에 비해 한국 남성은 나이가 많아 연령차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나이와 관련하여 결혼의 형태를 보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경우 전체 19,214명 중 11,175명이 초혼으로 전체의 60%가 초혼이다. 40%의 재혼의 경우 사별이 756명인데 비하여 이혼 후 재혼이 7,025명이며, 이중 90% 이상이 이혼 경험이 있다. 한국 남성의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당하는 의처증,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에 있어 아내 구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미루어 전 부인과도 가정폭력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된다.[12)]

소득

보건복지부(2005)는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임을 밝혔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3.7%이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표 5〉 외국인 총 인구 연령별 현황

(기준: '06.12.31)

연령/연도	2006		2005		2004		2003	
0-4	6,112	0.97%	6,053	1.25%	5,917	1.26%	5,861	1.31%
5-9	7,508	1.19%	7,328	1.51%	7,034	1.50%	7,674	1.72%
10-14	7,106	1.13%	7,144	1.47%	6,982	1.49%	7,654	1.71%
15-19	10,874	1.72%	8,785	1.81%	7,540	1.61%	7,417	1.66%
20-24	**73,858**	**11.71%**	54,606	11.25%	43,610	9.29%	41,676	9.32%
25-29	**109,019**	**17.29%**	84,595	17.43%	85,285	18.18%	85,827	19.20%
30-34	**103,062**	**16.34%**	84,027	17.31%	89,731	19.12%	89,639	20.05%
35-39	**100,800**	**15.98%**	76,809	15.82%	76,615	16.33%	68,195	15.26%
40-44	**69,401**	**11.01%**	54,313	11.19%	53,391	11.38%	46,030	10.30%
45-49	50,598	8.02%	35,780	7.37%	35,250	7.51%	37,442	8.38%
50-54	40,929	6.49%	27,502	5.66%	23,461	5.00%	19,811	4.43%
55-59	27,743	4.40%	19,331	3.98%	18,788	4.00%	15,181	3.40%
60-64	11,400	1.81%	8,905	1.83%	7,819	1.67%	7,247	1.62%
65-69	6,098	0.97%	5,212	1.07%	4,118	0.88%	4,025	0.90%
70-74	3,155	0.50%	2,646	0.55%	1,916	0.41%	1,748	0.39%
75-79	1,601	0.25%	1,289	0.27%	914	0.19%	825	0.18%
80-84	859	0.14%	710	0.15%	475	0.10%	440	0.10%
85-89	349	0.06%	287	0.06%	217	0.05%	198	0.04%
90 이상	155	0.02%	155	0.03%	120	0.03%	124	0.03%
계	630,627	100%	485,477	100%	469,183	100%	447,014	100%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및 16개 시,도청 홈페이지

가구도 상당수 있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 6>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149만 원 정도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27.9%인 41만원이고, 남편의 근로소득은 가구소득의 35.5%인 53만원으로 남편의 평균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여성이 그 이외의 여성보다 소득의 기회와 소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보다 쉬운 한국계 중국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 보다 취업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에서는 출신국의 취업여부를 파악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중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등의 여성은 대부분 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91.7%의 높은 취업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 8>은 출신국별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의 취업은 중국, 필리핀, 태국 여성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59%로 나타나 본국에서의 취업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한국남성과

12) 한국염,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과제,"『한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제와 향후 방향성』(명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2007), p. 36.

〈표 6〉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가구소득	전체 (945)		중국 동포 (340)		기타 외국 (605)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66,009	64.8	1,143,340	67.7	805,845	61.5
본인	**(415,677)**	**(27.9)**	(507,629)	(30.0)	332,627	(25.4)
남편	**(529,773)**	**(35.5)**	(616,353)	(36.5)	451,574	(34.5)
기타가구원	(20,559)	(1.4)	(19,357)	(1.1)	1,644	(1.7)
이전소득	13,563	0.9	5,155	0.3	20,832	1.5
정부지원금	(7,555)	(0.5)	(4,864)	(0.3)	9,986	(0.8)
친지·민간	(6,008)	(0.4)	(651)	(0.0)	10,847	(0.8)
자본소득	24,894	1.7	23,881	1.4	25,808	2.0
사회보험소득	15,156	1.0	15,508	0.9	14,839	1.1
기타소득	470,758	31.5	501,266	29.7	443,203	33.8
총 가구소득	**1,490,380**	100.0	1,689,511	100.0	1,310,528	100.0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 또는 본국의 경제적 지원 등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것임을 참작한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지만 가정에서 반대를 하거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취업의 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9>는 2005년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기준과 소득-욕구 비율로 본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지출수준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먼저 주관적 지출수준과 관련 있는 지표를 보면 전체 가구의 48.2%가 소득이 주관적인 빈곤선 이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지출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무려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빈곤률을 보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7〉 출신국의 취업 여부

(단위: %, 명)

(N)	중국 동포 (448)	중국 한족 (164)	일본 (101)	필리핀 (77)	베트남 (66)	태국 (19)	몽골 (15)	구소련 (29)	기타 (26)	전체 (945)
본국에서 취업(%)	**91.7**	**92.0**	**100.0**	**92.2**	68.2	**100.0**	**93.3**	76.7	**100.0**	**91.0**
미취업	8.3	8.0	0	7.8	31.8	0	6.7	23.3	0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8〉 출신국별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

(단위: %, 명)

전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945)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59.0	**59.6**	**77.4**	33.7	**72.7**	48.5	**63.2**	33.3	41.4	50.0

<표 10>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을 나타낸 표이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을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대적 생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먹는 문제' 를 100가구 중 16가구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의료보장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71.6%가 건강보험(직장,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4.8%가 의료급여(1, 2종) 수혜자였으나,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않았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4 정도(23~28%)가 제도적인 의료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를 물어본 결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7.2%가 '아무 것도 없다' 고 응답하였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27.2%가 '아무 것도 없다' 고 응답하여 의료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관적 기준과 소득-욕구 비율로 본 경제적 지위

(단위: %, 명)

	주관적 월 최저지출액 기준			소득-욕구비율(최저생계비 기준)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00)	(303)	(397)	(945)	(340)	(605)
50% 이하	**39.0**	38.6	39.5	44.2	39.4	48.6
100% 이하	**48.2**	46.2	50.4	**52.9**	47.3	58.0
120% 이하	56.7	53.7	60.0	58.3	53.2	62.8
140% 이하	61.8	58.9	65.1	60.8	57.1	64.2
160% 이하	67.4	63.6	71.6	66.5	63.1	70.0
180% 이하	70.0	67.7	72.6	69.8	66.8	72.6
210% 이하	77.5	76.9	78.1	72.5	69.8	74.9
210%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득-욕구비율은 가구의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소득-욕구비율이 100(%)이면 해당 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와 같다는 것이고, 150%이면 해당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소득-욕구비율이 50%라는 것은 해당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표 10〉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단위: %, 명)

	전체 (907)	중국 동포 (302)	기타 외국 (605)
거의 매달	**4.5**	2.8	6.1
서너 달 정도	**2.6**	2.8	2.4
한두 달	**8.4**	5.0	11.5
거의 없음	84.5	89.5	80.0
계	100.0	100.0	100.0

이상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인 향상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판이하게 다르다. 오히려 끼니를 거를 때도 있을 정도로 빈곤하며, 의료보장도 쉽게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업의 기회조차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별 분포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82,828명('06년 말 기준) 중 75%는 도시지역(동지역)에 거주하며, 25%는 농촌지역(읍 · 면지역)에 거주함을 밝히고 있다.[13)]

<그림 6>은 2005년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66,659명의 지역별 거주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기 · 인천에 31.8%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서울에도 25.1%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

〈표 11〉 의료보장의 실태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544)	(216)	(203)	(52)	(73)
직장가입건강보험	28.3	26.0	33.6	36.2	15.0
지역가입건강보험	43.3	44.2	37.9	46.8	53.0
의료급여 1종	3.1	0.0	4.4	1.9	9.4
의료급여 2종	1.7	1.5	0.7	1.9	5.1
아무 것도 없다	**23.6**	**28.3**	**23.4**	13.2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하는데 재중동포는 언어의 부담이 적으므로 취업을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에서 가장 국제결혼이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67.5%)로 나타났다. 이는 주한 외국대사관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로서는 호남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은 2005년 지역별 국제결혼율을 지도로서 나타낸 것이다. 지도상에서는 대도시 보다 농촌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도상에서 인구밀도 보다 지역의 면적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4년도 국제결혼율이 30%이상이었던 5지역이 2005년에는 23곳으로 늘어났으며, 서울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농촌으로 나타나 국제결혼으로 영향을 미칠 농촌지역의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결혼을 신고한 205건 중 82건(40.0%)이 국제결혼이었다. 보은군의 국제결혼율은 2003년(19.7%), 2004년(27.8%)에 이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율이 40%대를 기록하기는 보은군이 처음이다. 이어 전남 함평군(37.6%), 전북 임실군(37.5%), 전북 진안군(37.4%), 충북 단양군(37.3%), 뒤를 이었다. 최근

〈 그림 6〉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거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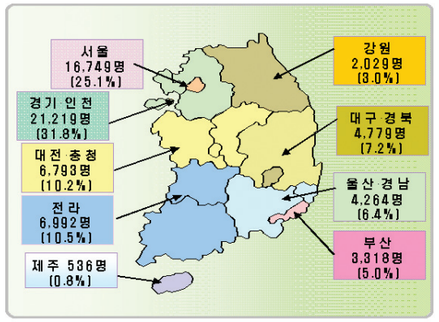

* 자료 : 법무부(2005.12)

〈그림 7〉 지역별 국제결혼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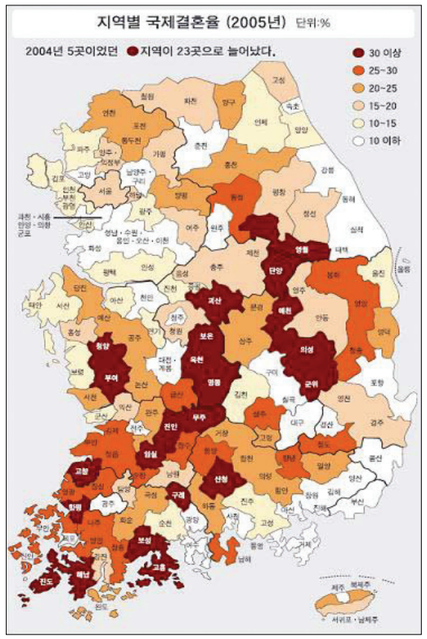

지역별 국제결혼율 지도는 대법원 호적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작성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역이 기준이다. 지도는 대도시보다 농촌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국제결혼율 30%가 넘은 23개 지역은 외국대사관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를 제외하면 모두 농촌이었다. 이는 향후 혼혈인구의 증가를 예고하는 선행지표의 성격도 있다.

의 국제결혼은 전반적으로 농촌 시골마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최근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8>은 2005년 농림어업종사자(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혼인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총 결혼 건수 8,027건 중에 국제결혼이 2,885건 35.9%로 3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9%가 늘어난 수치이다.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2004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베트남 여성이 전년도 보다 2.7배가 급증하여 5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생활의 갈등심화와 폭력은 결국 이혼을 불러 오는데 그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림 8〉 농어촌 국제결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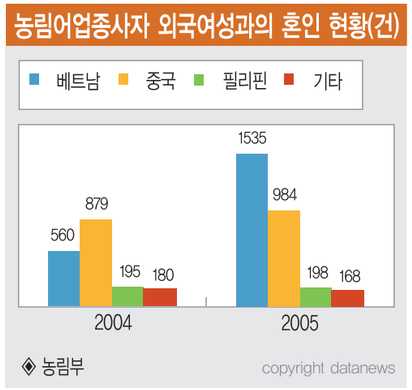

* 자료 : 데이터 뉴스, 2006. 10. 25

결혼생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생활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이 가족과 모든 것을 접어두고 국경을 넘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9>에서는 이주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되어 결혼을 선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종교' (29.4%)였고 배우자와의 사랑이 25.5%, 경제적 여건 향상에 대한 기대 22.9%, 본국 가정에 대한 경제지원 7.9%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돈)와 관련되어 국제결혼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 30%이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배우자와의 만남은 종교단체의 주선이 50%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이웃 등 아는 사람의 소개(21.5%), 부모 형제 친척에 의

〈그림 9〉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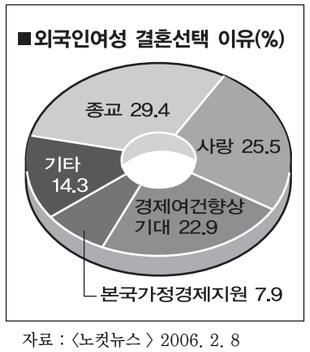

자료 : 〈노컷뉴스 〉 2006. 2. 8

한 소개(12.5%), 결혼정보업체(9.2%), 행정기관(3.1%), 배우자와의 직접 만남(2.3%) 등이었다. 일본 국적의 여성들은 종교단체 주선이 많았으며, 조선족은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업체의 소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타국에 왔으나 한국의 생활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그들의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인신매매성 결혼과 언어의 어려움 및 의사소통의 부재,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부갈등을 느끼며,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표 12>는 부부싸움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남편과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7.9%) 순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표 13>는 부부폭력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부부 폭력의 형태는 모욕적인 말(31.0%)이나 물건을 던지는 것(23.7%)에서부터 세게 밀거나 구타하는 행위(13~14%), 심지어는 남편이 성행위를 강요(14%)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9.5%)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 성격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대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서울대 이순형 교수팀[14]의 조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농촌에 시집 온 외국인 여성 중 46.6%, 즉 거의 절반 정도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민자 10명 중 1명은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하며, 3명 정도는 욕설과 인신비하 등 상습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10%가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한 경험

〈표 12〉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 별 부부갈등 사유

(단위: %, 명)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649)	(279)	(112)	(85)	(64)	(36)	(16)	(11)	(27)	(19)
남편과의 성격차이	**33.4**	36.6	24.1	36.5	40.6	25.0	37.5	.0	29.6	42.1
남편과 생활방식 차이	**21.6**	25.4	25.0	11.8	10.9	11.1	18.8	18.2	33.3	31.6
경제 문제	**11.7**	8.6	17.0	16.5	14.1	2.8	6.3	27.3	14.8	5.3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7.9**	3.2	16.1	16.5	4.7	2.8	.0	18.2	7.4	10.5
음주	**10.8**	9.7	9.8	9.4	15.6	19.4	18.8	27.3	3.7	.0
부모와의 불화	2.8	3.6	.0	2.4	3.1	8.3	.0	.0	3.7	.0
나 또는 남편의 외도	1.7	1.1	.9	.0	.0	19.4	.0	.0	.0	.0
기타	10.2	11.8	7.1	7.1	10.9	11.1	18.8	9.1	7.4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63.830, p<.001

〈표 13〉 부부폭력의 형태

(단위: %, 명)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21)	(755)	(76)	(38)	(32)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50.0	16.1	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게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20.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3.4	47.4	42.1	15.6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24.859, p<.000

이 있으며, 6~7%가 외출금지나 의처증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을 당한 뒤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참았다' 고 38.2%가 답했고,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관련 기관에 도움을 호소하거나 법률적 지원을 받는 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한 여성도 52.9%나 됐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지난해 11월 개설된 이주여성긴급전화(1366)로 접수한 400여건 중 반가량이 가정폭력에 관한 것"이라며 "정부나 민간단체 등에서 학대당하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현재 천안, 인천에서만 운영되는 상습폭행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도 각 시 · 도로

〈그림 10〉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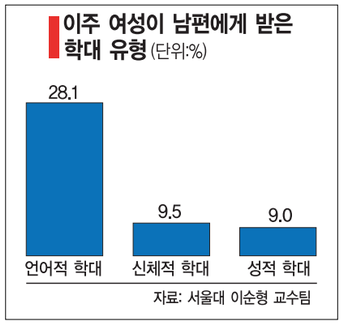

확대 ·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림 11>은 2005년 농림부의 자료로 농촌의 국제결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학대 유형별 비율을 보면 '생활비 또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35.7%)', '본국송금 금지 및 방해(26.8)', '외출금지(24.4)', '의처증 증세(22.0)', '신분증을 뺏는다(22.0)' 의 순으로 나타났며 상당수의 가정이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여성 이민자들은 가장 큰 불편으로 언어를 꼽았다.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말하기가 가능하다고 답한 여성은 26.1%에 불과했으며, 조금이라도 한국어 듣기가 가능한 자는 32.2%(매우 능숙하다 13.5%, 약간 잘 한다 18.7%) 에 그쳤다. 따라서 언어가 미숙하여 표현이 힘들고, 설

〈그림 11〉 남편의 학대유형별 비율

농촌 남성 소개 방법별 돈 지불 여부 (단위:%)

구 분	전 체	부모 · 형제 소개	친구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기 타
없 다	49.1	50.0	66.7	26.8	59.6	71.4
있 다	50.9	50.0	33.3	73.2	40.4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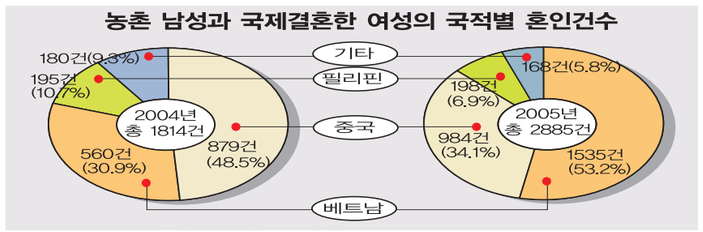

14)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이순형 교수팀이 농림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7, 8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농촌지역의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명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서로의 오해가 생기지만 대화기술이 부족하여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참거나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결혼 전 한국어 코스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생활의 갈등심화와 폭력은 결국 이혼을 불러 오는데 그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총 이혼은 매년 증가하여 2006년 6,280건으로 2005년 보다 46.8%가 증가하였다. 그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이혼은 전년도 보다 64.1% 증가하였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23.8%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은 한국인의 이혼의 평균 보다 높게,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율은 처음에는 낮았으나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률을 추월하여 급증하는 반면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율은 서서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2006년 통계청에서 밝힌 국제결혼의 이혼국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은 중국이 63.6%를 차지하고, 베트남이 15.2%, 일본이 5.0%로 나타난다. 중국의 처는 타국에 비해 혼인 누적건수가 많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11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처의 연령은 20대가 39.6%를 차지하며,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다음으로 3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 순으로 나타나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20대 이하 연령층의 구성비는 타국에 비해 비

〈그림 12〉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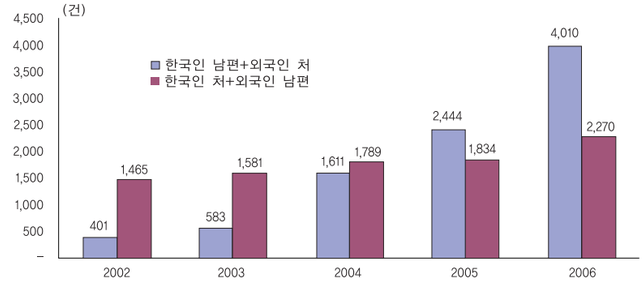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2006

〈그림 13〉 국제결혼의 국적별 이혼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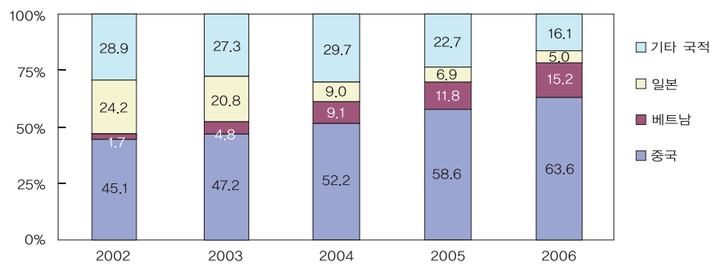

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혼 원인은 성격차이 49.2%, 경제문제 14.9%, 가족 간 불화 9.5%, 배우자 부정 7.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부부폭력, 이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기능강화 방안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부모의 최대의 관심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여 잘 살아가는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바램은 자신의 자녀만큼은 그들이 경험한 동일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으며,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이 이국땅의 힘든 환경에서도 극복하며 살아가야할 이유는 자녀의 안녕과 행복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자녀의 성공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첫 임신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여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 또는 아기에게 젖먹이는 방법이나 육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06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가구의 상당수는 빈곤과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자녀를 돌볼 여력이 부족하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률(15.8%)이 일반 가정(56.8%)의 절반도 못 미치는 등 자녀양육환경이 매우 취약함을 밝히고 있다.

1997년 국적법 개정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고 그 자녀는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

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과 농어촌 지역에 국제결혼의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므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통계청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므로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한 셈이다. 최근 농촌의 일부학교의 경우 국제결혼아동이 20%되는 곳도 적지 않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교육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농어촌 또는 도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국땅의 힘든 환경에서도 자녀의 안녕과 행복을 기대하며, 자녀의 성공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일 것이나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림 14>는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층에 속하면서도 도시지역에 사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 문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저소득층의 자녀(①)나 도시지역의 저소득층(②)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는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결혼가정은 대부분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49.5%), 자녀의 수는 1명(27.1%) 또는 2명(16.0%)이 가장 많고, 3명 이상(6.4%)도 있었으며, 최근에 결혼한 부부도 많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50.5%)도 절반에 해당된다.

<그림 15>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그림 14〉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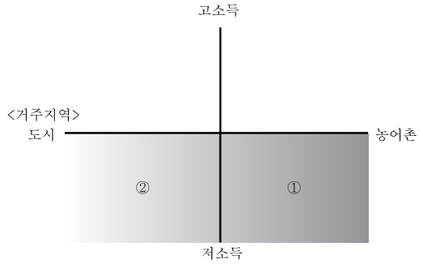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전남, 전북, 경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초 · 중 · 고등학생 전체 13,445명 중 초등학생이 11,444명으로 가장 많으며, 2006년에 비해 68.1%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5>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630,627명이며, 등록 외국인(합법체류자) 중 5세 이상 19세 이하는 25,488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4%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는 2006년에는 11.6%, 2007년에는 13% 감

〈그림 15〉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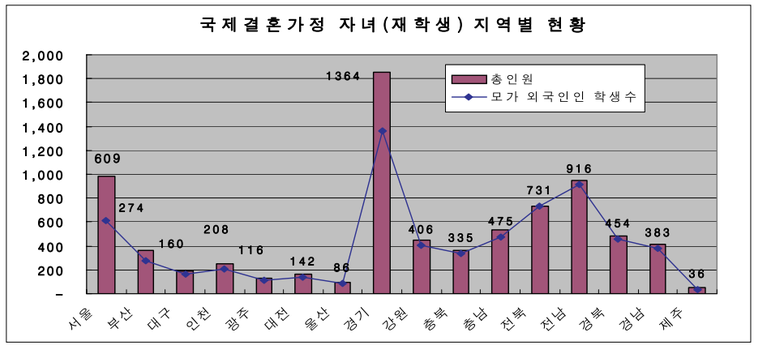

〈표 1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 (단위: 명)

연 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5월)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소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형성에는 개입되는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재학생 수가 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취학률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16>은 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취학자녀의 부모(40.6%)와 미취학자녀 부모(34.1%)가 동일하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이다. 그 다음으로 미취학자녀의 부모는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거나 아동의 건강관리, 취학자녀의 부모는 학교 성적문제 및 학습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심지어는 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자들도 있다.

이명신의 진주지역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주민들이 자녀양육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의 진로걱정, 자녀를 돌보는 일, 경제적 궁핍을 전수할 가능성, 교육에 대한 남편과의 의견차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5] 국제결혼가정 부모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실제적으로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학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종차별적 태도이다. 그들은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집단 폭력의 대상, 학교 부적응, 학습부진, 중도 탈락률 증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정체성 혼란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17>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집단

〈표 15〉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

(단위: 명)

연 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계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 외국인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 8,341명('06.12.기준) 제외

〈표 16〉 자녀양육의 어려움

(단위: %, 명)

	미취학자녀(0~5세)	취학자녀(6~17세)
아동 돌볼 사람 없음	28.2	
아이 맡길 보육시설 양과 질의 문제	6.1	
아동 건강관리 어려움	13.0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어려움	34.1	40.6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	3.1	7.1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6.3	5.7
성적문제 및 학습부진		10.5
학교생활 부적응		1.8
사례수	365	185

〈표 17〉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 비율도 13.4%(교육개발원, '05)로 나타나나, 가장 큰 따돌림 이유는 ' 잘난 척(29.4%) '으로 국제결혼 자녀와 차이를 보임

따돌림을 당한 이유를 타나내고 있다.[16] 그 중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들이 중 · 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크다. 2001년 펄벅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의 경우 1.1%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모로서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림 16〉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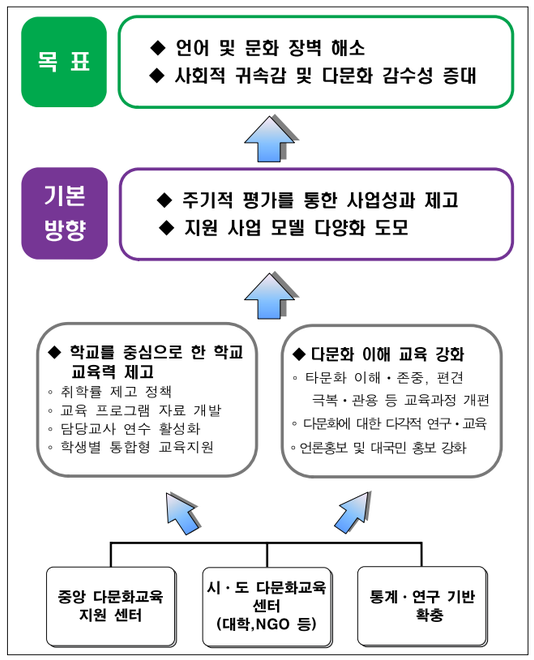

한편, 국제결혼 자녀 교육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정책 수립 · 추진,

15) 이명신, "진주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 및 결혼안정성",「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전략」,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6. p.101
16) 2005년 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심의 교육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그림 16>와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다문화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반, 방과후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표 18>은 2006년 한국어반, 방과후 학교 운영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811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 경기, 충북 등 9개의 학교에서는 9학급의 158명을 대상으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은 중앙과 지방간에 역할분담 및 지원체제, 교사 및 일반인의 다문화이해, 학교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핵심교원 양성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결혼 자녀를 위하여 의료와 생계비 지원,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문화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인종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그들도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관용과 수용을 베풀어 이들도 뒷받침만 잘 하면 누구나 하인즈 워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 이용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17]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3.24)'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차이(3.02)', '언어장벽(2.83)', '자녀교육(2.58)', '편견 및 차별(2.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대상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남편' (53.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 및 친

〈표 18〉 2006년 한국어반,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 (단위: 명)

구 분	초	중	고	계
학교수	89	5	3	97
강좌수	103	5	3	111
학생수	811	34	13	858

17) 이명신, "진주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 및 결혼안정성",「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전략」,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6. pp. 94-96

〈표 19〉 결혼생활의 어려움 및 도움을 청하는 대상

(단위: 명, %)

		전체	중국	연변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어려움의 정도*	부부갈등	2.15	2.42	2.67	2.11	2.09	2.00	1.60
	고부갈등	2.02	2.22	2.50	1.80	1.90	2.00	2.20
	자녀양육	**2.24**	2.67	2.50	2.17	2.10	1.86	2.00
	자녀교육	**2.58**	3.00	3.00	2.75	2.00	2.71	2.20
	경제적 어려움	**3.24**	3.55	3.67	3.38	3.09	2.86	3.00
	문화차이	**3.02**	3.09	2.33	3.50	3.09	2.71	2.60
	언어장벽	**2.83**	2.18	2.33	3.82	2.82	2.86	2.40
	편견 및 차별	**2.52**	2.36	2.67	3.09	2.45	2.00	2.40
	외국인으로서 소외감	2.49	2.09	3.00	3.00	2.73	2.00	2.20
	친정에 대한 무시	1.67	1.82	2.00	1.82	1.36	1.29	2.00
도움청하는 대상	혼자서 해결	**3(6.1)**	2(16.7)	-	-	-	1(14.3)	-
	남편	**26(53.1)**	5(41.7)	1(33.3)	8(72.7)	5(45.5)	3(42.9)	4(80.0)
	시어머니	4(8.2)	1(8.3)	-	1(9.1)	1(9.1)	1(14.3)	-
	이웃 및 친구	**6(12.2)**	3(25.0)	-	1(9.1)	1(9.1)	-	1(20.0)
	같은 외국인 친구	**45(10.2)**	1(8.3)	-	-	3(27.3)	1914.3)	-
	사회복지기관, 상담소	**-**	-	-	-	-	-	-
	기타	5(10.2)	-	2(66.7)	1(9.1)	1(9.1)	1(14.3)	-

* 5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구' (12.2%), '같은 외국인 친구' (10.2%)였다. 그러나 ' 사회복지관이나 상담소 '에 도움을 청하는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편 중국과 일본여성의 경우 '혼자서 해결' (6.1%)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해결하는 방안을 물어본 결과 친구와 이야기 한다, 또는 혼자서 해결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부부간의 불화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찾는 경우는 매우 부족했다. 이는 부부간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20〉 결혼 상태별 부부간의 불화에 도움을 준 사람

(단위: %, 명)

	전체 (812)	기혼 (667)	동거 (21)	별거 (75)	이혼 (35)	사별 (14)
나의 가족 친척	**18.6**	17.7	33.3	21.3	25.7	7.1
남편 가족 친척	10.6	12.4	4.8	-	-	28.6
모국인 친구	**29.3**	29.2	28.6	42.7	8.6	14.2
한국인 이웃 친구	7.3	7.2	9.5	5.3	14.3	-
제3국인 친구	0.6	0.6	-	1.3	-	-
이주여성 상담소	**1.6**	0.9	-	9.3	-	-
종교단체 성직자	**5.9**	4.9	4.8	13.3	2.9	21.4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1.0**	0.9	-	-	5.7	-
기타	10.1	11.5	9.5	-	2.9	14.3
전혀 없다	**15.0**	14.8	9.5	6.7	**40.0**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0>은 결혼 상태별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상담자나 도움을 준 사람을 나타낸 표이다. 이들이 가장 쉽게 상담하는 사람은 모국인 친구(29.3%)이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친정식구(18.6%)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성직자(5.9%)를 찾는 경우는 조금 있었으나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소(1.6%)나 복지기관이나 관련 공무원(1.0%)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전혀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15.0%) 혼자서 삭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멘토링을 통해 한글교육, 정서적 지원을 통한 상담, 자녀교육 상담, 자녀 학습지원, 생활정보 지원 등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람들의 경우, 부부불화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한 사람은 40%나 되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부부간의 불화를 적극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그냥 묻어두는 방안을 많이 사용하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홍보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그들을 외부로 끌어내어 문제해결방안을 지원하거나 접근성이 어려운 자를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빈곤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본국에서 취업 경험도 많아 맞벌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취업에 희망률(71.1%)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가 어리거나(47.5%) 언어의 장벽(22.5)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의 증대를 위해서 이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에서는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단계적인 '한국어교실',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생활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낮고 남편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낮은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농촌에 거주하거나 경제적인 사정 또는 남편의 음주 및 폭력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복지시설 접근성의 어려움, 시설 이용 기회와 시간의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소외되며, 이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따라서 멘토링과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멘토링을 통해 한글교육, 정서적 지원을 통한 상담, 자녀교육 상담, 자녀 학습지원, 생활정보 지원 등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지원기관 현황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타 4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37개소와 이 밖의 전국 외국인 근로자센터 등 300여 개소에서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지원기관 현황은 <부록 3>과 같다. 정부는 이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전국을 6개 권력(서울권, 인천 · 경기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 · 울산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지역별 지원사업기관은 <표 21>과 같다.

나오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에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초기단계의 다양한 미비점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가장 기본적인 결혼이민자의 유입배경과 현황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의 결혼이민의 배경으로서 초국가적인 자본의 세계화와 인구이동,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 남녀 성비 불균형에 따른 특수상황,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선

〈표 21〉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기관

구분	지역	사업기관
관리기관	총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운영기관	서울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경기·강원권	인천여성의 전화
	충청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호남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영남권	창원여성의 전화
	부산권/울산권	부산여성회

* 자료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단(2007)

18) 여성가족부 외, "여성가족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P. 40

택하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또한 우리사회의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특성과 결혼생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5가지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정착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korean dream을 품고 국제결혼을 선택하지만 입국하기 전부터 국제결혼정보센터나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의 허위정보와 비싼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국경을 넘게 된다. 낯선 이국 땅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언어, 문화의 장벽에 부딪히고 차별과 배제로 인한 소외를 당하며, 시댁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통로인 결혼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농어촌의 농촌장가 보내기 사업 등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혼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인 언어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도록 결혼 전 단계에서 어학코스 마련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국의 취업경험과 특성을 살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실제적인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결혼 중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남성과 한국여성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들이 공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착토대를 마련하여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국제결혼 가정은 대부분 사랑에서 출발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차이 극복을 돕는 기술부족 즉, 의사소통기술 부족, 대화기술의 부족, 문제해결능력 부족, 분노조절기술 부족 등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며 심지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하거나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해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이 절반이 넘으며, 자녀 때문에 피신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자녀들 역시 폭력의 피해로 정서장애를 겪으며 사회에 부적응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국 전 또는 입국 직후 의무적으로 한국생활의 정보와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법에 대한 전국민적 홍보와 함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기관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피해자를 발굴하며, 부부상담 및 교육, 자녀

상담, 가족치료 등 가족기능강화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해야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외국여성과 자녀를 위한 쉼터를 확대, 지원함이 필요하며, 상담 시 외국여성의 자유로운 언어구사능력이 부족하여 상담 진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담통역원을 양성하여 지원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요컨대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 향상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데, 이는 부부관계 향상이 언어, 문화 차이도 쉽게 극복하고 자녀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백년대계로서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이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결혼 연령이 매우 낮으며, 첫 임신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출산 · 육아 ·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의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이용률이 56.8%인데 비하여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15.8%에 머물고 있다. 취학자녀일 경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며,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집단 폭력, 정체성 혼란, 낮은 취학 및 진학률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 부족 등으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출산지원, 보육지원, 양육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지원대책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으나 전국의 다문화가족에게 미치기는 역부족이므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자녀지원의 일환으로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대학생 등 관심있는 자를 모집하여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 사업을 통하여 언어와 학습지원을 하면서 고민이나 진로상담도 하고 또한 그 가정문제를 상담함으로 정서적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기 ·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 이므로 특히 교사나 친구들의 태도가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끼친다. 따라서 학교의 교사, 일반 학생, 학부모들이 다문화를 수용하고 다문화자녀를 배려하며 동등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 요리, 문화체

험에 한정되고 있으며, 일회성이어서 다음 단계로 연관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관마다 중복되고 산발적이며, 체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이민자들의 동화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긴급한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소수자를 위해 다수가 변화할 수 있는 즉, 다문화 가정의 남편과 자녀, 학교 교사, 일반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복지시설 혹은 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정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자들은 찾아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이나 접근성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이동복지관 또는 이동지원센터 형식의 서비스개발 등 전달체계와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다. 우리사회에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각 문화마다 고유한 특성과 장점이 있으므로 타문화를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사고가 뿌리내리도록 유치원부터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제도권 속에서 다문화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에 노출된 채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불법체류자로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증오와 범죄, 그리고 폭력으로 가속화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균열이 심해지기 전에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재검토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해 보았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초기 단계이므로 이 시점에서 기본적인 현황을 기초토대로 하여 하나씩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노력한 만큼 서로의 갈등은 좁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위에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료 1〉 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시도	시군구	예산총액	1인당 예산	인원수	조례제정 여부	비고
충북	영동군	18	3	6		
	괴산군	73	5	10		*기타경비 23백만원
	단양군	64	8	8		
충남	보령시	50	5	10	○	
	금산군	120	6	20	○	
	연기군	60	3	20	○	
	부여군	90	3	30	○	
	청양군	50	5	10	○	
전북	정읍시	35	2	10		*기타경비 5백만원
	남원시	50	5	10		
	완주군	75	5	15	○	
	진안군	40	5	8		
	무주군	50	5	10		
	장수군	100	5	20	○	
	임실군	60	5	12	○	
	순창군	100	5	20	○	
	고창군	50	5	10		
전남	강진군	50	5	10		
	해남군	150	5	30		*06년 56명 283백만원
	장성군	100	5	20		
	진도군	42	2	21		
	신안군	18	6	3		
경북	경북도	100				*도비:시군비:자부담=1:4:5
	포항시	32	5	8		
	경주시	24	5	6		
	김천시	12	5	3		
	안동시	24	5	6		
	구미시	12	5	3		
	영주시	63	5	14		
	영천시	12	5	3		
	상주시	24	5	6		
	경산시	12	5	3		
	군위군	24	5	6		
	의성군	16	5	4		
	영양군	24	5	6		
	영덕군	40	5	10		
	청도군	24	5	6		
	고령군	24	5	6		
	성주군	24	5	6		
	칠곡군	8	5	2		
	봉화군	24	5	6		
	울진군	12	5	3		
경남	경남도	90			○	*도비:시군비=3:7
	창원시	21	6	5	○	
	진주시	54	6	9	○	
	통영시	10.5	5	3	○	
	사천시	10.5	5	3	○	
	거제시	7	5	2	○	
	김해시	16.8	6	4		
	밀양시	10.5	5	3		
	양산시	16.8	6	4		
	의령군	44	5	10	○	

	함안군	56.4	5	9	○	
	고성군	24	6	4		
	남해군	174	6	30	○	
	하동군	14	5	4	○	
	산청군	20	5	4	○	
	함양군	150	5	30	○	
	거창군	54	6	10	○	
	합천군	94	5	20	○	
합계		2847.5		574		

자료: 여가부 제출 자료 및 각 시군 2007년 세입세출예산서

〈자료 2〉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예산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이민자및가족지원 예산액(A)	국제결혼비용지원 예산액(B)	비용-예산비율 (B/A)	결혼이민자 및 가족 지원 사업 예
충북	괴산군	4.5	73	16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전통문화체험 캠프
	단양군	20	64	3	산모도우미 지원, 방문교육 사업
충남	보령시	0	50	-	-
	금산군	0	120	-	-
	연기군	0	60	-	-
	부여군	0	90	-	-
	청양군	17	50	3	자녀 국어학습지 지원
전북	정읍시	29	35	1	한글및컴퓨터 교육, 생활교육, 가족 교육, 가족사랑 나누기 행사
	남원시	39	50	1	전통혼례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한글교육 및 상담 등
	진안군	10	40	4	가족화합 프로그램 및 교육, 정착지원
	무주군	6	50	8	사회적응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교실
	장수군	41	100	2	한글교육 및 문화교실, 사랑캠프, 공무원 결연맺기, 합동결혼식
	임실군	8	60	8	한글교육, 전통체험 및 예절교육
	순창군	46	100	2	한글교육, 문화체험, 자녀학습도우미, 합동결혼식, 교육도우미 등
전남	해남군	21	150	7	각종 교육, 문화체험, 베트남의날행사등
	장성군	14	100	7	문화체험 및 가족캠프, 어울한마당 및 멘토링 행사, 한글교육 등
	진도군	29	42	1	사회적응교육, 외국문화 체험장 등
	신안군	15	18	1	공동체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경북	포항시	10	32	3	가족캠프 운영, 문화유적 탐방
	경주시	0	24	-	-
	김천시	5	12	2	대모결연 및 화합행사
	안동시	0	24	-	-
	구미시	0	12	-	-
	영주시	0	63	-	-
	영천시	4	12	3	대모결연 행사
	상주시	12	24	2	문화체험, 이주여성도우미 운영
	경산시	20	12	1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군위군	2	24	12	어울림 한마당 및 대모결연
	의성군	0	16	-	-
	영양군	0	24	-	-
	영덕군	0	40	-	-
	청도군	2	24	12	우리말 솜씨자랑 대회, 배우자교육
	고령군	0	24	-	-

	의성군	0	16	-	-
	영양군	0	24	-	-
	영덕군	0	40	-	-
	청도군	2	24	12	우리말 솜씨자랑 대회, 배우자교육
	고령군	0	24	-	-
	성주군	0	24	-	-
	칠곡군	0	8	-	-
	봉화군	0	24	-	-
	울진군	0	12	-	-
경남	창원시	3.6	21	6	교육도우미
	진주시	0	54	-	-
	통영시	0	10.5	-	-
	사천시	8	10.5	1	정착지원사업
	거제시	0	7	-	-
	김해시	5	16.8	17	국적별 언어교육
	밀양시	1	10.5	11	결혼기념일 축하카드 전달사업
	양산시	2	16.8	17	국제결혼가정 교육 캠프
	의령군	0	44	-	-
	함안군	0	56.4	-	-
	고성군	0	24	-	-
	남해군	0	174	-	-
	하동군	0	14	-	-
	산청군	12	20	2	한글교육
	함양군	4	150	38	여성결혼이민자 자매결연
	거창군	12	54	5	생활문화교육
	합천군	0	94	-	-
계		402.1	2,465	6	

* 대체로 시군 자체 시책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나, 중앙 · 시도사업 예산이 포함된 곳도 있음.

자료: 여가부 제출 자료 및 각 지자체 2007년 세입세출예산서

〈자료 3〉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지원기관 현황

NO	지원기관 명	주소	전화번호
1	하피엘룩인도네시아교회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37 1층	02-854-5915
2	사랑의전화정보센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9-22	1566-1414
3	남부교육센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 13동 638-2호 2층	02-855-2550
4	나섬공동체-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8-8	02-458-2981
5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606호	02-454-2581
6	희년선교회/(사)국제민간교류협회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44-43번지	02-858-7829
7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01호	02-957-1074
8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8층	02-3141-6091
9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구선교교육원내)	02-312-1686

10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2층	02-576-2852
11	성동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동 22-5 경동빌딩 2층 성수의원안	02-468-7910
12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147-22	02-2282-7974
13	생명의전화복지관(외국인문화학교)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96-155	02-916-9193
14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45번지 아이코리아 내 사랑동3층	02-443-3844
15	남북문화통합교육원(하자센터)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982-1	02-2677-9200
16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03-26	02-6900-8000
17	온누리미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02-790-6052
18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10 용산여성문화회관1층	02-797-9184
1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178-68(4층)	02-3672-8988
20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201-6	02-2238-0992
21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6-2번지 2층	02-749-6052
22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5가 노동사목회관5층	02-953-0468
23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02-2678-2193
24	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 81-1 5층	051-441-6403
25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어울림)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193-9 송광B/D 4층	051-802-3439
26	부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수로 795	051-320-8342
27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영3동 38-1 부산광역시여성회관	051-610-2072
28	대구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77-15	053-475-2324
29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백은관53-1,2호	053-580-6819
30	까리타스이주노동자문화센터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398-2번지	032-427-7275
31	여성복지관	인천시 남구 주안6동 여성회관길 16	032-440-6545
32	남동선교회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2-2	032-822-2806
33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천시 서구 가좌동 564-11 영창테크노타운 2층 22호	032-576-8114
34	강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84-5번지	032-933-0980
35	여성발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6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062-383-4141
36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2 (두리예식장옆 성당옆 2층 살림교회내)	042-631-6242
37	대전빈들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43	042-621-8892
38	울산시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74-3136
39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49-14	062-971-0078

40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325	031-674-9130
41	천주교구리이주센터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2-21	031-566-1142
42	김포이주노동자센터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81-10	017-226-7615
43	남양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8-7 남양주시청 제2청사2층	031-590-8211
44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살롬의집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95-9	031-594-5821
45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3-18	032-348-7575
46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032-654-0644
47	수원여성의전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0-1 한성빌딩3	031-232-7780
48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349-2	031-671-0631
49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610-11 다솜교회 내 3층	031-372-9301
50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736 보광빌딩 4층	031-339-9133
51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1-1(6F)	031-333-6644
52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 633-3번지	031-652-8855
53	하남외국인문화센터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156, 2층	031-796-1881
54	수원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0번지	031-257-8504
55	부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층	031-320-6440
56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3-762-8131
57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033-251-8009
58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785번지	033-648-3019
59	청주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154	043-223-5253
60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다목적회관1층	043-733-1915
61	아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용화동 352-7 홍주빌딩 3층	041-547-6004
62	천안외국인근로자센터	충남 천안시 두정동 1503 노동복지회관 3층	041-565-5801
63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 백석대학교 진리관110호	041-550-2768
64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남 공주시 중동 321 3층	041-856-0881
65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041-750-3990
66	김제이주여성쉼터	전북 김제시 서암동 393-1번지 지하	063-545-8506
67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063-850-6043
68	논실마을사람들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221번지 논실마을학교	063-352-3362

69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560-2 2F(남도주유소옆)	063-272-2794
70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전남 목포시 대성동 172-9	061-272-1560
71	영암이주여성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2층 영암이주여성센터	061-463-2929
72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 춘천시 저전동 206-12번지 2층	061-742-1050
73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061-331-0709
74	전라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35번지 전라남도여성회관	062-673-3188
75	(사)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의회	경북 경주시 황남동 270-11번지	054-774-1119
76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부설 다문화가족센터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산24-1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054-455-2816
77	칠곡여성종합상담센터/ 칠곡이주여성인권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1-1번지	054-973-8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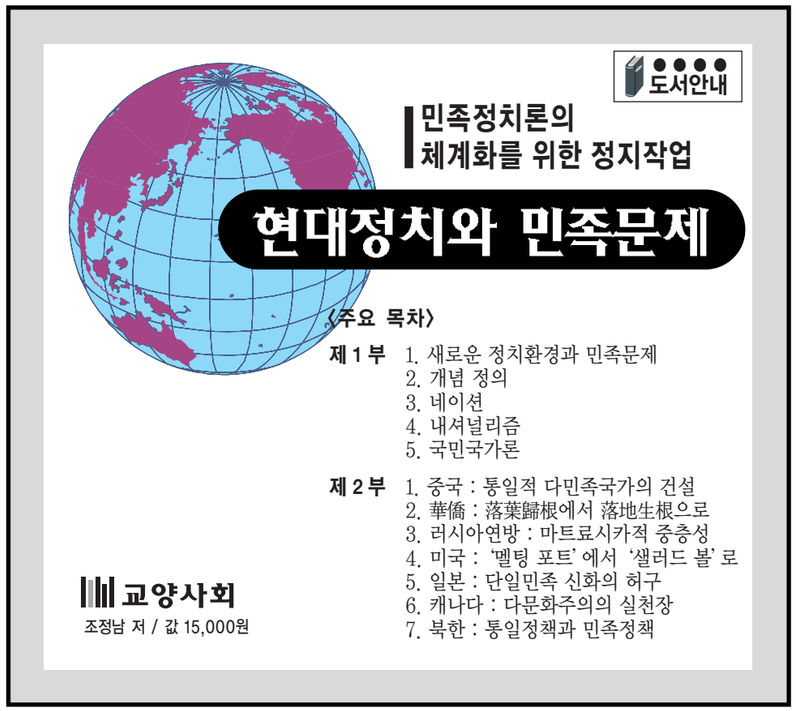

특집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김 희 선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pisces307@naver.com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경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최근 적극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종합대책이 최근 수립된 것은 요구에 비해 다소 지체된 감이 없지 않다. 과거 정책들은 단순히 출입국 및 정착, 자녀의 국적 문제 등에 중심이 두어졌고 여성부를 비롯한 개별부서가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한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자 이들 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8년 이래 국적법에서 고수되어 왔던 부계혈통주의의 국적 취득 원칙을 1998년 개정함으로써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었다. 또한 개정을 통해 무분별

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막기 위해 이주여성은 결혼 후 국내체류 2년 후에야 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들을 취해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여성부가 이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2002년 이후 여성부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위한 쉼터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주식회사 태평양으로부터 지원 받은 여성발전기금을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왔으며, 2006년 4월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무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면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생되고 있는 보건과 복지 측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2000년대 이후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다문화가족 및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2006년 4월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의 발표로 중앙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었고 각 행정부서들에서는 정책과제들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추진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1]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재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방향을 설정해 이주여성의 이주와 정착, 이와 관련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사업들을 개별 중앙행정부서에서 사업의 계획을 형성하고 시행에 옮기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중이다.

정부의 결혼여성이민자 종합대책의 내용

국제결혼을 관리 법률 제정 계획

국제결혼 중개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국제결

1) 본 연구는 2007년 삼성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김범수 외,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정리·수정한 글이다.

혼의 진정성 ·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형법 · 옥외광고물관리법 · 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수사요령'을 하달하고 정기적 · 지속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중개업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인권침해적인 중개절차와 배우자 결정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존중적인 중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 ·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표준화하는 심사지침(결혼사증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관련서류 확인 등)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입국 후 혼인파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인터뷰, 국내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주요 송출국(베트남, 중국 등)에 있는 국제기구 또는 현지 공공단체 등에 핫 라인(Hot-Line)을 설치하여, 잠재적 국제결혼 여성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국제결혼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현지교육 등으로 외국인여성에게 한국어 및 문화 관습 등을 입국 전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또한, 한국남성들이 불법적인 국제결혼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요 송출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결혼절차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여권발급 창구와 민원창구 등에 배치하고, 관련부처 · 지자체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지원사업

가정폭력피해자의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와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 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 및 간이귀화 신청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법

률 · 의료 시스템 미숙 등으로 배우자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음에 따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 후 여성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 청취, 사실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의 발표로 중앙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었고 각 행정부서들에서는 정책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정도가 심각하고 혼인파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긴급구원 조치를 강화를 위해, 6개 언어지원 외국인전용 핫라인「1366」센터 설치,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강화하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여 가정폭력 치료에 필요한 상담 · 의료 · 심리치료 서비스를 심도 있게 제공하고, 혼인파탄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법률서비스 이용시 언어통역자를 동석시키고, 진술서 작성 및 행정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출장, 방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 및 교육사업

정착초기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집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 · 군 · 구는 지역에 위치한 직업훈련기관, 복지시설 등의 위치와 이용방법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착단계에서는 문화부 · 교육부 · 여가부 · 법무부 · 행자부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 · 진도별)를 개발하고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를 제작 ·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 EBS 방송에서 언어 ·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 · 면 · 동 단위로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간 상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결혼여성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다문화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고 교사역량 강화를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교육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현행 교과서를 검토 · 분석하여 인종차별적 교육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해 나가며, 사회 · 도덕 · 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타문화 이해, 편견극복을 강조하는 교육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상담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국제결혼 자녀교육 추진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평가 · 교육청 평가에도 반영한다.

둘째 시 · 도 교육청별로 다문화교육 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원자격 연수, 직무연수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한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 · 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취학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다언어로 제작하여 이민자 가정에 우송하면, 컴퓨터 동영상 또는 TV 영상물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정보?방송시설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에 제공한다.

넷째 학습부진 아동교육을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방과 후 특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연계하여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학생회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또래상담 등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을 유도하며, 토론문화 조성 등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육성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지원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

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 · 부자복지법' 의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26개 고용안정센터에 통역요원 29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여성의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직업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도 교육한다.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 ·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직업분야(문화해설 통역사, 국제교육 강사, 사회복지 상담사) 인력으로 양성하여, 방과 후 교사, 복지시설 상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임신 · 출산 · 육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다국어 안내책자를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군구 134개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07년도에 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전 대상에게 확대하며, 방문간호사업 대상에도 포함하여 건강문제 발견, 건강상담, 투약지도,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저소득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및 인식 강화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편견 및 차별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 ·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농촌복지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적 편견해소와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정책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중앙 · 지방공무원의 연수프로그램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부처에서는 다문화 정책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 정부보유 홍보매체 · 언론 · 이주노동자 인터넷 방송국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 다문화이해 강좌 개최, 시청각 교재 등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다문화 행사나 모임을 통한 주민간의 교류나,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다문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며, '결혼이민자의 날', '결혼이민자 참여 문화체험 학습' 등을 활성화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가족정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에 단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 · 지원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거주지 정보제공 및 오리엔테이션,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이민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며, 2006년에 51개소를 시작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시 · 도, 시 · 군 · 구협의회(117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2,600개소에 구축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인프라 활용하여 자원봉사팀을 조직하고, 상담안내, 이민자 대상 통역, 차량이동 봉사, 직업훈련 안내, 정착이민자의 봉사참여를 유도한다.

중앙행정부서의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이 주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2세들에 대한 통합과 복지차원의 접근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편 농림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중의 상당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상황을 반영해 농촌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각 행정부서의 계획된 사업들은 아래 <표 1>과 같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부처간 협력과 상호 조정을 위해

〈표 1〉 중앙 행정부서의 지원사업

담당부처		지원사업
주관	협조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체	무료건강검진과 복지상담 등의 사업 시행 중,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 발간 계획, 저소득 가정 산모도우미 파견, **빈곤층 혼혈인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지원, 건강보험 가입안내 외국어 리플렛 제작.**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인신매매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 이혼한 경우라도 **자녀접견을 위해** 이혼 후 2년 이상 영주자격 부여, 거주 자격만 있다면 자유로운 취업 허용. **결혼이민자 영주권 신청 조건 완화.**
노동부	여성가족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 요소를 반영하며 인종차별적 요소의 수정,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사와 혼혈학생 1:1 후견 교사제 계획, 가정에서의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 집으로 우송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EBS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IT를 활용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재 개발 중.
문화광광부	지방자치체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 발간',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운영 지원, 이주여성 자녀 위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 주관,** 다문화 축제를 지원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정체성 형성에 기여
농림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체	농촌의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체, 시민단체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2006년에 51개소 개설), 자원봉사 참여 유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체	국내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했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국인과 차별 없는 혜택을 받도록 정책 개선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차원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민간단체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비롯한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각 행정부서의 사업계획들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건복지부

(1)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2)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3)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는 결혼이민자

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각 부처의 생활 및 복지관련 정부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국어로 수록된 책자를 제작 · 배포

(4)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이민자 자녀를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민자 가족 등을 외국인 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원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2007년 1월부터 국적 취득 전인 여성결혼이민자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의 수혜대상에 포함,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을 실시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국어 건강보험 제도(대상, 방법 등)안내 소책자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의 의료보장도 받을 수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무료지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 여성결혼이민자 포함

(7)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저소득 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산전 후 지원,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

(8)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자원봉사 강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여러 문화권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지식, 문화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 제공,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2) 농림부

(1)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적응지원 계획 수립 등 지원대책을 추진

(2) 세부사업은 신속한 적응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교육과 상담 지원,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도록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3)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에 대하여는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선진 농업현장 견학 · 문화탐방 등 격려

(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중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 방문교육 도우미를 통하여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의 2세들은 혼혈인으로 간주돼 이들을 전반적인 혼혈인에 대한 지원 및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사업들에 포함시키고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유관부처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토대로 지역 내에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에 옮기면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래와 같다.

(1)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2)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교사 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 교육 연수 활성화, 한국어(KSL)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현행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문화적 배타성 완화,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다문화?다인종 교육요소 반영

(4)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

(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4) 여성가족부

(1)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및 협력

(2)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훈련,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실적의 보고,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의 활동

(3)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4) 언어 · 문화 이해 교육

(5) 다문화가족 생활정착 지원

(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7)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9)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평가

정부에서는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면서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이주정책과 정착 이후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로 인식해 정부의 지원사업을 이주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 영구 정착해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2세들은 혼혈인으로 간주해 이들을 전반적인 혼혈인에 대한 지원 및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사업들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의 기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의 핵심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결혼중개에 대한 영역을 이주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은 미비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내용이나 중개과정과 이윤추구를 위해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에 대한 행정, 사법당국의 관리 감독대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지는 비자발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격자의 입국 및 위험질병에 대한 노출과 확산에 관한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

둘째 정부가 파악한 문제점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전체 여성결혼이민자가 대상이 되기보다는 부분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의 변화를 위한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6년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종합대책안 발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 여성가족부가 위치하면서 중심부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했고,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등 중앙 행정부서가 서로 연계하여 공동목표와 방향 아래에서 각 부서별 지원사업을 실행에 옮기게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실행은 그동안 몇 개의 소수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 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정착, 한국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지원책까지 포괄하고 있어 기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종합

대책안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결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각 영역에서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는(특히 기업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성을 가지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정부 부처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지원사업의 확장은 민간부문의 지원역량을 감소시키고 비효율적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통합 및 지원정책을 진행했던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이주여성과 2세들의 기여방안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조사에서 89%정도가 취업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취업의지가 강하다.(정일선, 2006: 35) 실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고학력의 엘리트 여성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주여성에 대한 모국어 상담원, 영어 및 중국어 등의 외국어 강사, 관광통역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며, 이들을 기업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노동력으로 충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 이주여성에 대한 학력, 연령별, 국적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제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문제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대략 80%정도가 미취학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에 대한 공공 보육시설 이용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가정의 시설이용이 56.8%인데 반해 다문화가족의 경우 15.8%에 머물고 있어 공공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거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일선, 2006: 35)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장점을 발양시킬 수 있도록 대학교육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단기간 동안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이 아닌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에 입각해 교육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결국 기업 및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종합대책은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농촌총각과 결혼해 정착하고 있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기대 이하의 주거환경과 생활양식에 부적응하기도 하며 언어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도시지역과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구성한 경우 전체의 1/3정도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경우이다.(이혜경, 2006: 17) 즉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분명히 무시할 없는 수의 국제결혼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종합대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만 초점이 두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의 여성의 결혼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주요 서비스 실태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한데,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우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유적 탐방,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교육, 간단한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도 이주여성 대상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이 가족 외부에서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3)]

이주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건강검진, 심리치료, 도우미 파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교육, 즉 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취업기술 교육과 일자리 알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 장기자랑이나 야유회 등의 위안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의 풍물을 전시하고 요리를 체험하는 기회도 있으며, 여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각각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이 다문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한

국어교육(74.0%)과 한국요리강습(44.6%), 전통문화체험(34.7%), 생활예절교육(24.0%)과 같이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만한 가족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 컴퓨터교육(12.8%)이나 교양취미교육(14.0%), 위안행사(12.0%) 등을 시행하는 기관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각종 상담(법률, 심리),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이주여성의 출신문화 교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매우 10%미만의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후도우미 · 가사도우미 파견(0.8%), 친정 보내기 사업(2.1%), 풍물전시교류(3.3%), 요리교류(2.9%) 등은 2005년에 비해 시행기관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어 서비스 추진기관의 증가세에 비해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결혼 이주여성들은 본국의 가족들과는 이별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정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와 부부관계에 관한 교육은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부부관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8.7%에 그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온정의 표시, 공감의 형성, 자신의 표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혼 이주여성에게 안정적인 부부 관계는 한국 사회에의 적응은 물론 모든 사회관계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종교계(기도교계)에서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런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거나 이들을 위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마땅한 상담이나 의논 상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5.4%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지방정부 다문화 복지서비스의 한계

양적인 확대에 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경험과 현실, 요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개발하기 보다는 여성 일반, 또는 소외계층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복지 서비스 현황 (서비스제공 자치단체의 비율)

한국 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 한글?한국어교육(74.0%) - 한국요리강습(44.6%) - 문화유적 탐방(22.3%) - 전통문화 체험(다도, 전통놀이, 전통악기, 농악, 전통혼례 등)(34.7%) - 생활예절 교육(24.0%) - 일상생활적응(6.6%)
가족관계증진	- 가족상담(4.5%) - 부부관계교육 (부부캠프)(8.7%) - 가족관계교육(고부관계교육, 부모역할 교육, 자녀교육, 가족캠프)(25.6%)
사회적 연망 형성지원	- 멘토링('친정부모맺기' 등), 여성단체와의 결연(5.4%) - 이주여성모임 지원(2.5%)
친정보내주기	고향방문 지원(2.1%)
여성복지증진	- 임신, 출산, 건강 교육(1.7%) - 건강검진(2.5%) -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 파견(0.8%) - 심리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원예치료 등)(4.5%)
상담	일반상담(6.2%), 법률상담(1.7%)
취업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 취업기술교육(제과제빵, 맛사지 등)(6.2%) - 취업알선(방과 후 영어교사 알선, 이주여성대상 한국어 교사 등)(2.5%)
일반교육	- 컴퓨터교육(12.8%) - 교양취미교육(노래교실, 공예, 염색, 원예, 꽃꽂이 등)(14.0%) - 기타교육(문화관광해설사양성, 생활경제, 법률상식 등)(3.3%) - 자녀대상교육(언어교육 등)(12.8%)
위안행사	장기자랑, 단합대화, 야유회, 생일잔치, 체육대회(12.0%)
문화교류	풍물전시교류(3.3%), 요리교류(2.9%)
기타	폭력피해자 쉼터, 긴급생계지원, 주거환경개선, 결혼식, 종교생활, 교육참가자자녀보육서비스, 실태조사 등(12.0%)

이주여성의 적응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이주여성이 가족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한국인 가족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주여성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이들이 한국사회에 제가하는 질문과 요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언어와 생활적응 부분에 일방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 3〉 주요 서비스 사례: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사업	기간	세부내용
한국어교육 -기초자치단체-	15주	- 한글자모 익히기와 발음 -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 국적 묻고 답하기 - 가족의 명칭, 호칭, 직업 - 가격 묻고 답하기, 물건사기, 숫자읽기, 식료품 이름 - 물건사기, 숫자읽기 - 시간 묻고 답하기 - 날짜, 나이 말하기 - 하루일과 말하기 - 기호와 맛, 한국음식 - 사물이름, 위치 - 색, 크기묘사, 소망표현 - 전화하기, 명령 표현 - 대중교통 이용하기, 행선지 말하기
한국요리강습 -여성회관-	4주 (총8주중)	- 김치담그기 (얼갈이물김치, 오이소박이) - 낚지전골, 해파리냉채 - 불고기구이, 잡채 - 비빔밥, 애탕

〈표 4〉 주요 서비스 사례: 가족관계, 부부관계교육

사업	기간	세부내용
가족관계교육 -광역자지단체-	1박2일	* 이주여성과 남편대상 -(이주여성) 한국 문화와 뿌리와 가족문화/ (남편)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화목한 가정 - 한국 전통 예절 따라 배우기 - 집단상담 (이주여성) "가족내 (고부간 ?부부관계) 갈등해결 방안"/ (남편) "가족내 갈등과 남편의 역할" - 부부 역할극 - 사랑의 토피어리 공예 만들기 - 집단프로그램 "부부관계 증진 대화법"
부부, 자녀관계교육 -기초자치단체-	8주	* 이주여성 대상 - 알아두기/ 개인목표확인(신체활동. 집단 활동, 영향권 바퀴의 이해) - 온정표시 훈련(온정에 대한 설명, 온정표시 시범, 연습) - 공감훈련1(공감에 대한 설명, 공감하기 시범, 연습) - 공감훈련2(공감연습, 집단 활동) - 자기표출1(사실적 표출, 내 마음 속의 하얀집) - 자기표출2(감정적 표출, 집단 활동)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우리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역할 기대와 한국사회의 젠더구조를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식' 수용을 증진하는데 일방적인 초

〈표 5〉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

사업	기간	세부내용
외국인 주부와 지역 여성후견인 자매결연 -광역자치단체-	-	○ 여성후견인 선정 - 다문화 가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여성 - 지역사회에서 신망과 덕을 구비한 여성 - 선정된 가정과 가까운 덕을 구비한 여성 ○ 여성 후견인(친정엄마, 언니)역활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역 또는 후원역활 - 외국인 주부와 자매결연으로 월 1회 이상 교류 추진 - 우리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 행사에 초청 - 가정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조언 등 멘토링 -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 지원 연계 서비스 지원 - 기타 국제결혼 가정에 긴급한 상황 발생시 상담기관과 연계
멘토링을 통한 '친정만들기' -기초자치단체-	3개월	- 멘토링 교육의 실시 - 단체회원과의 자매결연 통한 지속적인 유대관계 맺기 - 언어소통과 자녀교육에 어려움 겪는 외국인 주부에게 든든한 친정만들기

점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정책 환경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 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는데, 즉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차이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이주여성을 한국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그를 둘러싼 한국인들이 이주여성의 출신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크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 마저도 요리와 수공예품을 소개하는 정도로 출신문화의 풍부한 모습을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출신문화에 대한 소개를 넘어 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인정,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여성들은 우리사회의 경직된 젠더구조와 여성에게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가족문화, 차이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자신들을 분리-차별하는 일반적인 태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회적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가족들에게서조차 무시당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느

끼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스스로 가족 이외에 한국사회에 대한 참여와 한국인과의 소통을 철회하고 한국인과 분리된 자신들만의 관계망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마땅한 상담이나 의논 상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통로가 될 수 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와 출신문화에 대한 남편들이 보다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고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자신의 모국어와 출신문화를 어느 정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전문 능력의 결여

예: 이중언어 상담

현재로서는 이주여성 상담인력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이중 언어사용 전문상담인력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된 경우에 한국어를 다소나마 구사하는 이주여성이나 해당 국가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가 전화 등으로 간단한 통역을 제공하기도 하나 몇몇 언어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재력 개발 노력의 결여

현재의 정책은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데 일방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우리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신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차이를 우리사회가 보유한 중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 취업교육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기술교육은 주로 제과 · 제빵 기술, 맛사지 기술, 비즈공예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취업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선정된 것이기는 하나, 이주여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과 서로 다른 문화를 오가며 쌓아온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많은 이주여성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술교육을

받더라도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 실체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 자체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 보다는 일반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기술교육을 그대로 시행하는 수준이다.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낮은 평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정도를 보면,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22.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 알선 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이용자 비율이 12.9%이다. 그 외의 고민상담, 가정 폭력 상담, 부부관계 교육, 자녀를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아직은 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서비스 수혜자들의 평가가 높지 못하다.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에서 약 55%의 응답자들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약물(알코올) 상담이나 학대 및 가정폭력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36.4~40.0%에 이르고 있다.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복지서비스들이 아직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175-176).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실태

1990년대 초 한 · 중 국교수립이후 조선족의 취업이주 및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급증하여 2005년에는 13.6%를 기록하였다. 특히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배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에 소수자를 위한 시민운동단체, 종교계, 의료 · 법률 등 전문서비스단체 등은 이주민을 지원하며,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였다. 최근 미등록자 문제, 다문화가족의 폭력, 이혼, 자녀문제, 경제적 빈곤,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표면으로 드러나자 2004년 6월 26일 범정부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이 마련되었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의 실현에 비전을 두고 차별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주요한 정책과제는 첫째,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둘

째 안정적인 체류지원, 셋째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넷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다섯째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여섯째, 추진체계의 구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후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까지 51개소를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 자녀상담 서비스 등을 종합지원을 계획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문화 적응, 가족생활 적응 및 가족관계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복지관, 지방문화원, 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행동을 추진해 온 NGO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서 정부의 한정된 재원만으로 80만 이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다원화의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생존, 한국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선두에서 활동하여 온 종교단체나 시민운동단체 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이주민의 긴급하고 핵심적인 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은 초기단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일회적이며, 한글이나 민족문화체험 등 특별한 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중복적이므로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민간단체들의 다문화지원서비스를 조사, 분석하여 기업차원에서 기업의 이미지제고와 함께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장 핵심적이며, 긴급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기본적인 실태를 검토한 후 기존의 대표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 현황

현재 한국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종교시설 45개, 이주노동자센터 54개, 복지관 쉼터 6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유진이 외, 2007). 이중 정부가 <표 1>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전국을 6개 권력(서울권, 인천 · 경기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 · 울산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분지역사업기관관리기관총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운영기관서울권서울외

〈표 6〉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단위: 점수, %, 명)

	평균	전혀 도움 안 됨 ①	②	그저 그렇다 ③	④	매우 큰 도움 ⑤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629)	3.1	33.3	4.7	15.5	16.3	30.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638)	3.0	31.5	6.2	19.7	17.3	25.3
약물(알코올)상담(610)	2.7	40.0	7.2	18.0	14.3	20.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613)	2.8	36.4	5.1	20.1	15.4	23.0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644)	3.0	31.5	5.6	18.2	21.0	23.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633)	3.0	34.2	4.0	14.3	21.3	26.2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689)	3.3	26.5	6.1	12.1	20.2	35.2

주: 도움 정도 평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에 4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에 5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표 7〉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12.9	87.1	7.2	92.8	18.8	81.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9.7	90.3	8.1	91.9	11.5	88.5
약물(알코올)상담	4.4	95.6	1.6	98.4	7.4	9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7.5	92.5	6.6	93.4	8.4	91.6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8.6	91.4	2.4	97.6	15.0	85.0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8.5	91.5	3.0	97.0	14.3	85.7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22.4	77.6	7.6	92.4	36.6	63.4

국인노동자센터인천 · 경기 · 강원권인천여성의 전화충청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호남권전북여성농민회연합영남권창원여성의 전화부산권 · 울산권부산여성회

다문화가족지원 내용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내용은 한국어교재 발간 및 교육,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및 생활상담, 여성결혼이민자 출산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6). 이 가운데 핵심은 교육 사업이며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가족교육, 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 및 가족상담, 교육 시 자녀 보호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조집단을 육성하

고 자조집단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한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 연계 사업도 진행할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학교나 경찰서, 보건소, 여성복지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간의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도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로 센터의 기능 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검토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파악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중 사업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민간단체를 설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개발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주여성지원 기관을 외국인노동자 지원 기관 보다 비중을 크게 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민간단체의 간사와 사회복지사와 전화통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 · 정리하였다. 조사대상의 기관은 <표 9>와 같다.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민간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사업과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만 추려서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내용을 종목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와 같다.

① 주로 결혼이민 여성의 적응 교육에 초점이 있다.

모든 기관마다 공통적이며 우선적인 프로그램은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한글교육과 함께 한국문화교육을 병행하며, 문화교육은 유적지 답사, 전통 음식 만들기, 문화예절 배우기, 도자기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② 배우자 출신 언어 및 문화 교육프로그램도 점차 시도된다.

초기에는 배우자의 한국적응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서서히 자신의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③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모국 언어 및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부모의 출신국의 문화와 부모를 이해하며,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다문화가족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자신감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④ 한국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식개선활동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토론회로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바자회 · 음식문화 축제 등으로 한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잦은 접촉을 유도하여 타문화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의식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⑤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지원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료서비스 지원 또는 가정방문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⑥ 가족 문제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산업 관련 피해자 상담 등에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으로서 산재, 부당해고, 임금체불, 체류, 비자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상담에 적극적인 기관에서는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의 피해를 지원하며, 입원했을 경우 최대한 적은 의료비 부담하도록 조언을 하며 병원 측과 협상을 해 주기도 한다.

⑦ 분만 및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에게 분만 및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산모에 대한 육아 및 산전 후 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⑧ 쉼터 운영한다.

모든 기관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의 많은 기관은 쉼

〈표 8〉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기관

구분	지역	사업기관
관리기관	총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운영기관	서울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경기/강원권	인천여성의 전화
	충청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호남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영남권	창원여성의 전화
	부산권/울산권	부산여성회

* 출처 :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2007)

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쉴 공간 및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민간의 소규모 지원센터의 경우 쉼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쉼터는 보다 넓은 공간과 재정,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글이나 민족문화체험 등 특별한 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중복적이므로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⑨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의 규모와 체계가 잡힌 기관들은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는 안내 책자나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한다. 또한 이주민의 인권과 평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주민의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며,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평가

① 문화탐방 사업의 문제점 제기

조사 대상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은 문화탐방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에게 문화탐방은 힘든 일상에서 자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가부장적인 한국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부족으로 가정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탐방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며,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순서	민간단체 기관명
1	결혼이민자지원연대
2	푸른시민연대
3	이주여성인권센터
4	이주·여성인권연대
5	아시아 이주여성센터
6	'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7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8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9	국제 외국인 센터
10	다문화가족 공동체 '하늘마음'
11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12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13	무지개 청소년 센터
14	구미 카톨릭 근로자 문화센터
15	아시아의 친구들

② 민간단체의 다문화지원 사업은 대동소이하며 차별성이 부족

대부분의 기관이 한글교육과 문화행사, 상담, 의료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과 방식도 비슷하여 형식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상담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내방상담이 주를 이루었으나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은 한곳에서만 실시하고 있어서 사무실내의 상담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상담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제적으로 의료보장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18%나 되고, 농촌거주자 불임여성 25%가 자연유산의 경험이 13%(전체 9.1%)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실태조사, 2005). 따라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

본 조사대상에서 국제외국인센터의 경우는 필리핀, 몽골, 중국 등 8개국의 상담 및 법률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의료진료에 있어서도 내과, 산업의학, 치과 등 전문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현장방문 검진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외국인센터는 상담에 있어서도 핀리핀, 몽골, 중국 등 8개국의 상담 및 법률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존의 한글교실, 상담, 의료진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보다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실효성 높은 전략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표 10〉 민간단체의 다문화복지서비스 현황

교육	- 한글교육(60%) - 문화적응, 문화축제(40%) - 권리교육(26%)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14%) - 외국어교실, 자녀를 위한 외국어 교실(14%) - 시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부모의 자녀교육(14%) - 정보화, 태권도 교실(7%)
상담	- 개인상담, 가족상담(100%) - 피해자 쉼터 제공(33%)
의료	- 의료지원(40%) - 정기적 무료진료(20%)
자녀, 부부, 가족	- 아동보육(14%) - 부부관계증진(14%) - 가족캠프(14%) - 청소년캠프(7%)
자조집단 육성	- 자활집단(7%) - 자원봉사집단, 영어교사봉사(7%)
문화, 정서지원	- 출산도우미, 임신, 육아, 산모교실(20%) - 이주노동자 이동 도서관(7%)
홍보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홍보물 제작, 소식지 발행, 연구조사(20%) - 국가별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33%) - 문화공간제공(14%) - 학교네트-월 협력프로그램(7%) - 무료 컴퓨터 교실 개방(7%)

③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동화에 초점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 한국사회의 동화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며, 배우자, 가족, 자녀들이 이주여성 출신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방적인 사고로 보인다. 즉 이민자 가족의 모임, 배우자 문화 바로알기, 배우자 이해를 위한 외국어교실, 부부증진 프로그램, 가족캠프, 국적별 모임, 이주여성의 만남의 장 제공 등을 찾

기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④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

보건복지부의 조사(2005)에 따르면 이주민의 자녀일 경우 불안정한 법적 신분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자녀 중 5.9%만 취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등학교 자녀들의 학습부진,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학습 부적응, 진학률 저조 등 다양한 문제와 낮은 자존감, 정체성의 부족 현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긴급한 이주여성에 우선적인 지원으로 보다 표면적으로 서서히 드러나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지개 청소년 센터의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정체성을 심어주며, 청소년의 학력평가 및 진로상담과 학교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니또 선생님을 지적하여 정서적 지지를 높이는 것은 학교적응을 위한 참신한 발상으로 보인다. 또한 친구들이 운영하는 공부방 운영은 학습효과를 높이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맞벌이를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 부족

다문화가족들은 법적으로 불안전한 기반과 더불어 경제적인 빈곤, 정보의 부재 등으로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미취학자녀 보육시설 이용률이 일반가정은 56.8%인데 비하여 국제결혼가정은 27.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언어발달 의사소통이 느린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보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본 대상 기관에서 맞벌이를 부부를 위한 아동보호를 하는 곳으로 안산이주민센터의 코시안의 집과 구미 카톨릭 근로자 문화센터의 놀이방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보다 많은 어린이 케어 및 보호시설이 지원되어야 하며, 농촌의 경우 흩어진 자녀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차량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⑥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부족

다문화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절반이상(52.9%)이 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7.3%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05). 특히 이주여성이 출국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많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으며, 자국의 부모를 위한 송금 등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취업을 원하나 가족의 반대뿐만 아니라 취업이 쉽지 않다. 민간단

체에서 단순한 수공예 등 취업교육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취업과 연결되기 어렵다.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영어강사나 외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를 상당히 구사할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의 자신의 경험과 장점을 살려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주여성 직장에서 자신의 특성을 발휘하며, 직장의 동반자로 나란히 활동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검토

그동안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밝힌 통계나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소규모의 사업을 진행함으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서비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의 <표 11>에서는 각 기업별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신문기사를 통하여 나타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중 사업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며, 대표성을 지닌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그들이 실시한 7가지 사업을 파악하였다. 즉, 다문화가족지원 내용, 대장자 및 지원규모, 지원방식,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반영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분류,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다문화지원사업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각 기업과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내용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을 지원하며,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한글 배우기, 문화 체험, 의료, 도서, 공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자 및 지원 규모

본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자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 자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 노동자의 서비스가 자녀들의 문제 보다 현재로선 더 시급하고 긴급한 욕구로 보여진다.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자의 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KT

가 지원하는 울릉도 지역 한글교실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는 12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단위까지 격차가 다양하다. 수혜자는 다문화가족전체를 대상(43%)으로 한 것 보다 특정대상자(57%)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기업의 다문화지원은 초기단계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 조사에서는 10억 원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244개 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규모는 1조 4,000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가시화되지 않은 지원부분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진료에 있어서도 내과, 산업의학, 치과 등 전문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현장방문 검진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기업의 다문화가족 지원 방식

다문화가족 지원 방식은 지정기탁,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다른 기관과 파트너 십으로 협력체계의 방식, 기업의 업무 특색에 따른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지정기탁의 비율(42%)이 더 높았으며, 정부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형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반영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중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많았는데, KB국민은행의 외국인 무료상해보험 가입 등과 아모레퍼시픽의 여성결혼이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그리고 포스코와 협력한 한국디지털대학의 경우 온라인교육을 활용한 한글문화교육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주요 서비스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주요 서비스는 한글교육을 포함한 한국생활 및 문화이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 의료로 나타났고, 상담, 일반교육, 위안행사, 공익 · 금융서비스지원, 봉사활동의 기회제공, 도서지원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은 한국어와 전통문화의 기본적인

사항을 여성들이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각 사업은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한국요리강습과 생활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 등을 함께 하는 종합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한국여성개발원(2006)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179개로 가장 많았으며, 본 조사에서도 한국어교육 서비스가 4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가 언어소통에서부터 발생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언어소통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포스코는 한국디지털대학과 협력하여 온라인을 통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실 안의 한글교육에서 벗어나 가정을 가진 주부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과 차별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디지털대학은 온라인 교재제작과 교육운영을, 포스코는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전라남도는 교육생 모집 및 교육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담당하여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1단계로 한국문화교육을 하며, 2단계로 이민자의 남편 및 자녀들에게 이민자 모국의 언어 및 문화교육을 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 등 전문화교육을 실시하므로 보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건강 · 의료

본 조사에서 의료지원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노동자를 위한 긴급의료지원과 아모레 퍼시픽의 이주여성의 출산과 가정폭력의 구제를 위한 의료지원이 조사되었다. 이주민들이 'koream dream'을 안고 국경을 넘게 된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표 11〉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례

NO	기업명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명
1	KB국민은행	1.외국근로자 공익지원(무료상해보험) 2. Together-우리는 이웃 ! 설맞이 외국인 근로자가족 우리민족문화 체험하기
2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3	현대기아자동차그룹	1.외국인 긴급의료비 및 자녀교육지원 2.이주노동자를 위한 도서 1만권 지원
4	KT	한글교실 개설
5	포스코	여성결혼이민자 온라인 교육 지원사업

〈표 12〉 기업의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NO	기업명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1	KB국민은행	**< 외국근로자 공익지원 / 2004. 6 >** • 국민은행에서 미화 1,000불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최고 1천만 원의 상해 보험을 무료로 가입 • 해외 송금 다음날로부터 한달 간 자동으로 가입, 근로 시는 물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당일 수취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 • 맞춤상품 개발, 행사 후원, 기부활동전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침 • 국민은행은 약소 계층 지원은 기업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으로서의 소임으로 보고 계속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맞춤상품 개발, 외국인 행사 후원, 기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등
		< Together-우리는 이웃 ! 설맞이 외국인 근로자가족 우리민족문화 체험하기/ 2007. 2 > •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양일간 서울,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설날맞이 행사를 개최 •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약 960명, KB국민은행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단 350 여명 등 총 1,400 여 명이 참석. 윷놀이와 제기차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와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 을지로 5가 소재 오장동지점을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특화 점포로 지정, 몽골 근로자를 위한 주말환전업무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의 편의를 도모.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어 보급 및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등 해외 사회공헌 사업 추진 •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
2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 2004. 7 >** • 정부(여성부)와 "여성발전기금 출연 약정식"을 거행.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억 원을 출연.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한 최초의 사례 •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가족관계, 법률, 자녀양육법 등에 대한 생활 상담과 교육을 실시 • 산모도우미, 산후조리사들을 낙후하고 고립된 농촌지역 파견 및 출산전후의 이주여성 지원 •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배상, 의료지원 등 가족폭력구제 전문상담프로그램 운영
3	현대기아 자동차그룹	**< 외국인 긴급의료비 및 자녀교육지원 / 2004. 10 >** • 외국인 노동자 긴급의료비 및 자녀보육비로 6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권익과 의료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민간교류협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등 16개 기관에 전달
		< 이주노동자를 위한 도서 1만권 지원 / 2006. 5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서 1만권을 화성, 청주 등 주요 외국인노동자 보호소와 보호실에 전달. 지정기탁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10개국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원되며, 한국 책을 포함한 11개 국가의 도서가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배포됨
4	KT	**< 한글교실 개설 / 2006. 9 >** • 울릉도의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여성이주민(총 12명)을 위한 한글교실을 개설. 한글교실은 KT 울릉지점 3층 회의실에서 매우 목요일 오전 2시간 동안 진행 • 단순히 말과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서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하는 등 실습 위주로 진행. • 명절이면 예절교육과 송편 등 음식 만들기, 윷놀이 등을 경험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도 함. • 타국 땅에서 동변상련의 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함. • 이주여성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강사로 활동하거나 도서관에서 일본어 강의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무료 강좌를 실시해 줌.
5	포스코	**< 여성결혼이민자 온라인 교육 지원사업 / 2007. 4 >** • 한국디지털대와 함께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 • 여성결혼 이민자의 정보화교육, 한국어 ·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배우자 출신국가 언어 ·문화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 • 한국디지털대에서는 온라인 강의 교재제작 및 교육운영을, 포스코에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전라남도에서는 교육생 모집관리 및 교육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지원 •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http://e-campaign.kdu.ebu)으로 교육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과 차별화됨. •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해 1단계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2단계로 이민자의 남편 및 자녀들에게 이민자 모국의 언어 및 문화교육을, 3단계에서는 이민자들의 직업능력개발 등 전문화 교육 실시 • 온라인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므로 가정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전라남도는 시범 교육 기관을 선정해 첫 단계인 컴퓨터사용법 등 정보화교육을 주 1회 실시해 왔음. 온라인 교육을 8월부터는 도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

〈표 13〉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자 및 지원규모

구분	KB국민은행		아모레퍼시픽	현대기아자동차		KT	포스코
	공익지원	설맞이 행사	한국적응지원	의료,교육	도서지원	한글교실	온라인 한글교육
대상자	1,000불 이상 해외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KB임직원, 대한적십자 봉사단 등 총 1,400명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및 자녀	외국인 노동자 보호소 (보호실)	울릉도 이주여성 12명	이주 여성
지원 규모	미확인	미확인	10억	6억	도서 1만권	미확인	미확인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의료지원은 무엇보다 긴급한 욕구로 보여짐.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D산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내에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임신, 출산 등으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도 상당수 있어 접근 용이한 의료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 여성건강의 서비스 대상층을 확대한다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이주여성의 특수한 건강문제와 서비스 접근상의 장애 등을 파악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

본 조사에서 상담은 아모레 퍼시픽에서 여성부에 지정기탁을 하여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생활 상담(법률, 자녀 양육법, 가정폭력 구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폭력(31%), 신체폭력(26.5%), 성적학대(23.1%)와 위협(18.4%)을 경험한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일반가정 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의 원곡동의 경우 매일 14쌍이 결혼하고 7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천응, 2006:132).

〈표 14〉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구분	지정기탁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기업의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기업명)	-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 (아모레퍼시픽/여성부) - 외국인 긴급의료비 및 자녀교육비지원 (현대기아자동차/공동모금회) - 이주노동자도서지원 (현대기아자동차/공동모금회)	설맞이 행사 (KB국민은행)	한글 교실 (KT)	온라인 한글문화교실 (포스코:한국디지털 대학)	외국인 근로자상해 보험무료지원(KB국민은행)

실제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이 많으나 법률적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무료법률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피신할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며,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쉼터는 더욱 제한적이다.

현재 이주여성들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의 경우 간단한 언어소통 이외 내담자의 내적인 갈등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정도의 언어구상이 불가능하여

〈표 15〉 기업의 이미지제고를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분류	KB국민은행	아모레퍼시픽	한국디지털대학
기업	- 1,000만 원 상해보험 무료가입 - 금융서비스 개선 - 외국인 대상 금융맞춤상품개발 - 주말 환전업무 운영	- 의료지원 - 산모 도우미, 산후조리사 파견 - 가족관계, 법률상담 - 자녀양육 상담 - 가정폭력구제 전문상담	- 한국어, 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 5개 국어를 온라인으로 교육

〈표 16〉 기업의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 서비스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 한글, 한국어 교육 – 한국요리 강습(전통요리 등) – 전통문화체험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 – 예절교육
건강 ?의료	– (긴급)의료지원 – 산모 도우미, 산후조리사 파견
상담	– 가족관계, 법률상담 – 자녀양육 상담 – 가정폭력구제 전문상담
일반교육	– 자녀교육비 지원 – 청소년 교육지원 – 정보화교육 – 남편과 자녀 대상 배우자 출신 국가 언어 및 문화교육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5개 국어교육
위안행사	– 설맞이 행사
공익 · 금융 서비스	– 1,000만 원 상해보험 무료가입 – 금융서비스 개선 – 외국인 대상 금융맞춤상품개발 – 주말 환전업무 운영
봉사활동 기회제공	– 방과후 교실 영어 강사 –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언어강좌
도서지원	– 외국인 노동자 보호소(실) 도서 지원

* 각 프로그램의 비율은 한글교육과 전통문화체험이 43%에 해당되며, 다른 각각의 프로그램은 모두14%에 해당됨

상담 통역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상담인력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일반교육

일반교육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문화교육의 비중이 대체로 높다. 교육의 성격은 주로 한국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이주여성의 출신 문화에 관해서는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소개나, 출신국의 요리를 교류하는 정도로 매우 빈약하다. 사실상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의 남성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젠더구조 등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므로 한국의 적응과 동화를 촉진하는 차원을 넘어 이주여성의 출신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다문화사회의 다문화가족의 미래상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이주여성의 가족들이 참여하에 출신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는 곳도 있으나 출신문화에 대한 자료나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고학력의 이주여성들을 활용하거나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위안행사

본 조사에서 KB국민은행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위한 설맞이 우리민족문화 체험하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로 볼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로서는 체육대회, 야유회, 명절행사, 출신국의 요리나 물품을 선보이는 지역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사는 다문화가족에게 위안과 긴장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국땅에서의 고립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출신여성들을 만나 정보를 교류하며, 고민을 나누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을 마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각 나라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서로 정보교류와 상담을 하며, 상호 교류함으로 정서적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공익, 금융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절반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해당하며, 설상가상으로 출신 가족의 생계비 부담과 출국 경비로 많은 빚을 떠 안고 출국한 경우가 많아 송금의 부담이 크다. KB국민은행의 공익 · 금융서비스를 통한 상해보험무료가입, 외

국인대상 금융맞춤상품개발 등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향상에 도움을 주며,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전략적 투자로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서비스로 판단되며,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가 언어소통에서부터 발생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언어소통으로 보인다.

봉사활동 기회제공

KT의 한글교실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주여성들이 방과후교실 혹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언어강좌를 하는 등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제공함은 매우 고무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그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일자리 알선 등 취업의 기회로 발전시켜 나감이 필요하다. 현재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기술교육은 주로 단순한 제과제빵이나 비즈공예, 맛사지 기술 등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출신문화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어, 중국어 강사로 취업되는 경우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역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취업증진을 위한 사업의 방향은 일반여성에게 제공되는 기술교육을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이들의 기존의 능력과 자원을 토대로 적합한 직종을 개발함이 필요하며, 취업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서지원

도서지원 사업으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법무부의 협조 하에 외국인 노동자 보호소에 한국어를 포함한 11개 국가의 도서 1만권을 전달함은 특정분야에 뚜렷한 목적을 지닌 서비스로 판단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어로 된 다양한 책들은 보호소 내에서 유용하게 읽혀질 것이다. 도서지원에서 나아가 이주민들의 생활을 돕는 지침서를 주제별로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 진다. 한국 사회의 법과 규칙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법적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출입국, 체류 등에 관한 간단한 법적 지식이나 일반 상식, 산업재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 각 분야별 외국어와 한글로 다양하게 매뉴얼하여 출입국관리소 등 자주 드나드는 곳에 비치해 놓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민간단체에서 지침서가 나오고 있으나 이주민 전체

에 보급되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통ㆍ번역 상의 문제도 있어 일반화되기 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다문화지원사업 사례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중 아모레퍼시픽은 민간이 정부(여성부)에 기탁한 최초의 사업으로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하여 한글, 의료, 상담 등 다양한 사업으로 농촌까지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포스코의 여성결혼이민자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은 테마별 사업으로서 온라인의 장점과 여러 협력업체를 통해 한글과 문화교육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전국적인 범위까지 계획한 전략사업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시사점

현행 기업의 다문화지원서비스의 한계

첫째, 현행 기업의 다문화지원서비스는 내용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서비스와 차별 없이 중복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많다. 또한 이주민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기보다 외형상 급하게 드러난 한글교육이나 요리, 문화체험 등 일회적인 특정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의 전략적인 이미지제고를 반영하여 보다 지속적이며, 단계적이고, 연계성을 지닌 사회투자모델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내 전담부서를 활용하여 기존의 사업과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를 창출하며, 근로자의 애사심 조성 및 시민과의 신뢰성이 증대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주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ㆍ해 나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원대상자가 주로 노동자와 이주여성, 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장차 이 땅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소외와 따돌림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나무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행 서비스의 내용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적응과 동화를 강요하는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민의 출신국에 대한 언어나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요리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출신 문화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 내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은 대다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이주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나 취업의 기회가 부족하다. 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단순노동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무료강사로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들지 못함으로 의료지원을 보다 확대함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료지원은 일시적이며,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대상층의 확보차원 수준이다. 따라서 긴급의료지원과 함께 이주여성의 특수한 건강문제와 서비스 접근상의 장애 파악, 정서적 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순회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 여성건강의 서비스 대상층을 확대한다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이주여성의 특수한 건강문제와 서비스 접근상의 장애 등을 파악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안내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특집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야마가타(山形) 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김 범 수
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bumsk@ptu.ac.kr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2, 3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떠한 지원시스템과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사회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다문화공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입장에서 생긴 용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용어 그대로 다문화공생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

하였다.

본 연구[1]는 일본 야마카다(山形)현의 다문화공생에 대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일본 야마카다(山形)현 지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야마가타현은 1985년 일본에서 공공기관이 개입을 하여 다문화공생을 처음으로 유입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다문화 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마가타 현의 츠루오카시를 사례연구 도시로 선정한 것은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공생을 위한 시스템이 비교적 잘 운영[2]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내에서도 다문화공생들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20여년 전부터 다문화공생(다인종가족) 문제에 직면한 일본 야마카다(山形)현 쇼나이 지방의 다문화공생 문제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여 왔는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공생복지 제도와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야마카다(山形)현에는 2006년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6일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된 다문화가족 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13명을 인솔하고 다문화공생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연수중에는 츠루오카시의 「데와 쇼나이 국제촌」과 사카다시의 「교류광장센터」를 견학 연수하였다.

이곳에서 다루게 될 사례연구는 츠루오카시에 소재하고 있는 1994년 건립된 「데와 쇼나이 국제촌」을 중심으로 강의와 면접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한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자료마다 각주를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츠루오카시의 「데와 쇼나이 국제교류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일부분 사카다시의 「교류광장센터」의 자료도 참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야마가타 현의 다문화공생의 지원제도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제도에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있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제도

2003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본 국내에서 74만 여의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1) 본 연구는 평택대학교 논문집 21호(2007년)에 게재된 "일본 야마가타(山形) 현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정 보완한 글이다.
2) 일본의 야마가타 현 츠루오카사의 데와쇼나이 국제촌은 2006년 10월 우리나라의 MBC TV와 2007년 1월 KBS TV에 소개된 바 있다. 일본에서도 다문화공생을 위한 벤치마킹하기 위해 츠루오카시의 데와쇼나이 국제촌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다문화공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은 4만 여명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여성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 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 문제, 이혼 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 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 약 180개국에서부터 온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체류하고 있다.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는 점차적으로 단기 체제에서 장기체제, 정주로 이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에 대해 일본 당국이 취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그 수혜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비정규 입국자 혹은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지출의 증가와 수혜자가 느끼는 불공평감이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 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이를 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 법을 외국인에게 준용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다. 행정 차원에서 외국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나가와 현의 가와사키시이다. 가와사키시의 외국인 대책에는 외국인도 시민이며, 외국인 시책은 인권우선 시책의 하나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일본사회와 지역의 변화 추구와 다언어 다문화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충실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서비스 기관, 조직에 의한 외국인 지원, 보건 의료 복기 전문가의 연수, 시민 대상 타문화 이해 강좌의 개최, 외국인 대상 타문화 이해 강좌의 개최, 자녀교육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 등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면서부터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의제로 채택된 시점은 2005년도 최근의 일로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공생추진플랜에는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문화

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의의와 기본시책 등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본의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내용

다문화 공생의 의의	◆ 외국인 주민의 수용주체로서의 지역 -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서 수용하는 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지방공공단체이며, 다문화공생 제도의 담당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 ◆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장 - 지방공공단체가 다문화공생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의 외국인 인권존중 취지에 합치하여야 한다. ◆ 지역의 활성화 - 세계에 개방된 지역사회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산업 경제 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 다문화공생의 도시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이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젊은 세대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 - 국적과 민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조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각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기본 정책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다양한 언어,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 제공, 외국인 주민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NPO와의 제휴,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 생활지원 - 거주관련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방재에 대한 정보제공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다문화공생 제도의 추진체제 정비 - 담당부서 설치 - 지역내 횡적 제휴 - 시군구, 읍면동과 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자료: 김이선 · 김민정 · 한이수,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의사소 통증진을 위한정책과제」, 2006, pp.247-248.

〈표 2〉 일본의 다문화공생 관련 정부 간 역할

	현	시군구	국제교류협회
기본 역할	시구읍면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인 과제로 의 대응을 실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	지방 자치체와 NPO 등과의 중개를 실시
구체적 역할	· 지침·계획의 책정 · 도나 현 전체 사회자원(인재, NPO, 교재 등)의 조사 · 광역 통역자 파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 대학 등과 제휴를 통해 인재의 개발 · 시구읍면 정보의 공유화의 구조 만들기 등	· 지침·계획의 책정 · 외국인 주민에게의 상담업무 · 지역 주민의 교류 기회의 제공 · 학교와 NPO등의 제휴촉진 · 지역의 관계 단체의 네트워크화 도모	· 지방 자치체와 NPO 등과의 제휴 모델 만들기 · 다언어 정보의 수집과 유통의 구조 작성 · 일본어 교실이나 모어 교실 등의 개최 ·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발신 · 통역자·번역 인재의 발굴

출처: 일본 총무성, 「多文化共生の推進に關する研究會報告書」, 2006:43.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공생과 관련한 정책을 현 및 시군구, 그리고 국제교류협회별로 역할을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공생 관련 정부간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일본의 중앙정부가 주요정책을 제안하고, 재정을 지원한다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공생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을 국제교류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의 문화나 사회구조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거나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민관이나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일본어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 내 정보를 수집해 이주민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 일본어 교육과 함께 각종 언어로 상담 가능한 외국인전용 창구까지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공민관이나 국제교류 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생활정보에 대한 다언어 가이드북이나 온라인 정보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교육제도나 거주관련제도, 복지제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등 외국인 주민과 밀접히 관련된 법 ·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통역 상담도 일반

〈표 3〉 일본정부의 주요 정책 및 담당부처

주요시책	관련부처
외국적 주민에게의 상담 체제의 정비	
○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의 설치 - 히로 섭국제 센터에서 거류 자격, 사회보험, 노무, 생활 관련 등의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어드바이저를 배치한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를 설치 ［상담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총무 히로섭 국제센터**
○ 다문화 공생 연락 회의(가칭)의 설치 외국적 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수평적인 조직으로서 현·시급 기관, 기업·대학의 외국인 상담 창구 등의 관계자의 연락 회의를 설치해 정보 공유와 연대 도모	**총무 히로 섭국제 센터**
○ 외국적 주민 지원을 위한 세미나의 개최 외국인 시책에 관련되는 선진적인 사례를 소개·연구하는 세미나를 실시 대상자: 마을의 창구 직원, 자원봉사 등	**총무 히로섭 국제 센터**
다언어에 의한 의료정보 제공의 실시	
○ 구급 의료 정보 네트워크의 운영 지역의 의료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구급 의료 정보 네트워크구축 - 영어 표기에 의한 정보 제공 -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정보 제공 - 히로시마현 지역 보건 대책협의회 작성의 「외국인을 위한 구급 의료 핸드북(영어·중국·한글·포르투갈어)」의 게재에 의해, 외국적 주민을 위해 의료 정보를 제공	**복지보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쉬운 환경 정비의 촉진이나 소득향상 등에 대한 검토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법령 준수 등의 홍보활동을 촉진 -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재류 기간의 연장 등의 제안	**노동부**
유학생의 지원	
○ 유학생 지원의 추진 지역내에서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이나 일본 이해가 깊어지기 위한 활동을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추진 · 장학금의 지급 · 지역내 문화 시설 등 우대 · 유학생 원 페어 교류	**히로 섭국제 센터**
○ 일본어·일본 문화 연수의 실시 지역내 대학에의 유학생이나 현내 기업이 받아 들이는 외국인 연수생 등에게 대하는 일본어·일본 문화 연수를 실시 ·일본어 고등 연수, 기업 등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일본어 연수 등	**히로섭 국제센터**
외국적 현민에 대한 사회 환경의 정비	
○ 외국인 학교에의 지원 외국인 학교의 운영비 일부를 조성	**현민생활**
○ 중국 귀국자에 대한 지원 중국인에 대한 일본어 학습 지원, 상담 사업, 교류 사업을 실시.	**보건복지**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지역주민에 대한 일본어 학습의 지원(재게)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현민의 일본어 학습을 자원봉사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일본어 자원봉사 강습회」를 개최	**히로섭 국제센터**

출처:http://www.pref.hiroshima.jp/soumu/kokuki/p2010/pdf/kokusai_plan2010_14.pdf

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나 비상사태 시에 대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전문상담 내지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미에현에서는 외국인 의료 서포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마네현에서는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다언어로 진료하는 병원이나 의료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과별 문진표를 13개 국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의료통역, 재해통역 등 각 분야별 통역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학교육, 문화교육, 통역서비스 분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사카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 서포터 1000명 육성 사업' 을 벌이고 있으며, 나가노현에서는 지방 행정과 외국인 현민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행정 정보를 전달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현에 전달하는 지역행정 커뮤니케이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3)]

1980년대 야마가타현 다문화공생의 현황

야마가타현[4)]은 일본 혼슈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야마가타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근면하며 이들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인 다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야마가타현에서 삼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일본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비율은 42.9%이며, 이것은 전국 평균(28.0%)을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야마가타현 거주민들의 수입은 일본에서는 47개의 현중에서 하위권인 39위에 그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야마가타현 사람들은 가족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그들의 가계 수입을 증대하려고 한다. 때문에 야마가타현의 부녀자들은 종종 그들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집안일과 아이를 맡겨두고 직장을 구하여 일하고 있다.

일본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야마가타현이 가장 높다. 또한 차를 몇 대씩 소유한 가정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대중교통이 전 지역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3)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다문화가족지원기관 및 센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4) Ⅱ장의 자료는 松本邦彦, "야마가타현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성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미래사회의 다문화가족』, 국제심포지엄자료, 2007. 3. 참조.

야마가타현의 외국인 거주자들

현황

<표 4>를 보면,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래 대부분의 일본 지역에서 매년 증가해 왔으며, 마침내 2005 말에는 2백만에 이르렀다. 이와는 반대로, 야마가타 내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야마가타의 경우, 그리고 일본 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때의 한국인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대다수였다. 그들은 "오래된 이주자들"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야마가타에서의 그들의 숫자는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몇몇이 일본의 다른 지역들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이주자들"의 증가는 야마가타의 외국인 거주자들의 숫자가 왜 급격하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과정

결혼이민자의 이주 시작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야마가타현 농촌지역에는 노총각들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노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마가타현 무라야마 지방 아사히 마을 공무원들은 필리핀 압카이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된다. 1985년, 무라야마 지방 아사히 마을의 동사무소는 인구 10,000명 가량인 지역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총각들의 결혼을 중개하기 위하여 결혼 중개인과 협력하에 필리핀의 압

〈표 4〉 일본과 야마가타 현의 전체 인구 중 등록된 외국국민들의 수적 변화와 비율 (1995-2005)*

	1955	1975	1985	2005
전체 인구	90,076,594	111,939,643	121,048,923	127,767,994
등록된 외국인 국민들	641,482	751,842	850,612	2,011,555
(일본 전체 인구의 외국인 비율)	(0.71%)	(0.67%)	(0.7%)	(1.57%)
야마가타의 인구	1,353,649	1,220,302	1,261,662	1,216,181
등록된 외국인 국민	1337	883	972	7,384
(전체 인구의 외국인 비율)	(0.1%)	(0.1%)	(0.08%)	(0.61%)

자료: http://dww.pref.yamagata.jp/tokei/data/202/01/014/202010144180002.xls.
일본 법무부의 "합법적 이주에 관한 통계 연간 보고서" 참조
** 매년 12월 31일에 "등록된 외국인국민들의 숫자" 참조

카이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들 간의 결혼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일본에서는 "아사히 마을 방식[5]"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뉴스가 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큰 뉴스는 모가미 지방의 오쿠라 마을과 토자와 마을에도 퍼져 나갔다. 게다가, 야마가타 현과 멀리 떨어진 히가시 이야야마 마을(東祖谷山村), 토쿠시마 현(德島県), 시코쿠(四國)의 마을의 동사무소도 필리핀의 산티아고 시와 협력하여 마을의 일본 남성과 필리핀 여성 간에 결혼을 중개하기 시작하였다. "아사히 마을 방식(朝日町方式)" 이 일본 전 지역에 퍼지자, 외국인 신부의 국적은 필리핀 외에 스리랑카, 태국, 브라질,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한다.

외국인 신부의 유입 현상 원인

당시 농업과 임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야마가타현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은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1960년대에 공장과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젊은 세대들에 의해 성취된 것이다. 그들은 종종 "후기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불린다.

젊은이들이 도시로의 진출로 인해 농촌지역은 주요 산업들이 쇠퇴하고, 고등교육시스템의 악화, 그리고 2차, 3차 산업들이 고용 불안으로 불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때에 지자체에 남아 있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본에서 전통적인 가문(家門)의 체계가 유지되어 오던 것은 1945년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1945년 이전 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큰아들인 장자의 의무는 고향에서 조상의 묘를 지키고 부모를 모시며 사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고향에서 가문을 지키려고 하였던 농촌의 총각들은 결혼 상대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 언급된 자료에서 1987년에 아사히 마을에서 미혼 여성의 수는 50보다 약간 적었지만, 미혼 남성들은 239명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야마가타에 뿌리 깊게 내려진 "시댁 부모님들과 함께 거주하는" 관습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경제가 인력부족으로 불황이 계속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 수의 감소는 지자체에서의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으며,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인식하게 된다.

5) "아사히 마을 방식"이란 야마가타현 아사히 마을에서 총각들의 결혼상대를 주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며느리들과 결혼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반응과 논쟁

처음에 "아사히 마을 방식"은 농업 지역에서의 심각한 결혼문제를 해결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여겨졌다. 이 현상은 "마을 간의 상호결혼"으로 불려졌고 1980년대의 발전된 일본 경제와 사회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국제화의 모델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사회성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외국인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들이 알려질수록 문제점들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외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을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았다. 다음은 비판적인 내용의 일부이다.

> "그들이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제기간이 있었는가? '졸속 결혼'이 아닌가, 외국인 신부들은 '가문의 계승자를 낳는 도구'이다, '신부들은 주로 개도국 여성'이다. 이러한 결혼 중개는 형식을 바꾼 '인간 무역' 이라는 차별적이고도 비판적인 용어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 왔으면 사회 문화적으로 빨리 적응하여 '빨리 일본인이 되거나', '일본말만 사용하라'는 라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들로 인해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 사무실들은 결혼 사업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농촌지역에서 결혼 부족현상을 야기한 것은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요인들이었다. 지역 정부들이 호의적이며 주관적으로 어려운 사업 계획들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부들의 결혼 관리 업무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추진되었다. 또한, 개도국 출신의 여성들과 일본 남성들 간의 결혼은 사적인 중개업자들의 중개나 이미 일본 남성들과 결혼한 여성들의 알선과 소개로 일본 전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자들의 광고는 전화번호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와 결혼의 증가 과정
야마가타 현의 국제결혼

(1) 개별 지역에서의 특징

<표 5>와 함께, 야마가타현의 네 지역에서 외국인 수의 증가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른 수치들이 현 사무실에 의해 공표되기 시작한 것은 1987

〈표 5〉 일본과 야마가타현 지역의 인구 총계와 등록된 외국 국민들 (1987, 2005)

	1987		2005	
	총 인구*	등록된 외국 국민들	총 인구 *	등록된 외국 국민들
총계	22,239000**	884025(0.72%)	127,768000**	2,011,555(1.57%)
	100으로 가정된 1987년을 기준으로한 수치		(105)	(228)
야마가타***	1,261,859	1,018(0.08%)	1,216,181	7,703(0.63%)
	100으로 가정된 1987년을 기준으로한 수치		(96)	(757)
쇼나이 지방	330,980	204(0.06%)	309,493	1,794(0.58%)
	100으로 가정된 1987년을 기준으로한 수치		(94)	(879)
모가미 지방	103,413	75(0.07%)	90,740	813(0.9%)
	100으로 가정된 1987년을 기준으로한 수치		(88)	(1084)
무라야마 지방	572,909	502 (0.09%)	577,160	3564(0.62%)
	100으로 가정된 1987년을 기준으로한 수치		(101)	(710)
오키타마 지방	254,557	237(0.1%)	238,788	1532(0.64%)
	100으로 가정된 1987년을 기준으로한 수치		(94)	(646)

* "2005년 총인구"는 2005년 1월의 것임
** 일본의 전체 인구는 대략적인 수치임

년부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1987년 12월과 2005년 12월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표 6>에서 각 지방의 국적에 따른 상황들을 보여 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일본 전역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는 두 배가 되었으나, 야마가타현에서의 증가율은 더 높았다. 특히 모가미 지방에서는, 2005년 외국인 거주자의 숫자가 최소한 100명에서 800에 이르기까지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의 숫자가 한국인을 초과했다. 20여년 전에, 한국인들은 네 지방 모두에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현재 국적의 다양화가 진행되어, 각각의 지방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표 6>. 이제 한국인들이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무라야마 지방이지만, 몇 년 내로 중국인들이 한국인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계 남미 노동자들이

〈표 6〉지방에 따른 야마가타 현 내 외국인들의 주요 국가인구의 변화

	1987	2005
총계	한국(581), 중국(180) 필리핀(73), 미국(65)	중국(3,201), 한국(2,159), 필리핀(871), 브라질(399), 베트남(328).
쇼나이 지방	한국(117) 필리핀(43)	중국 (965), 베트남 (241), 한국 (334)
모가미 지방	한국(32) 필리핀 (21)	중국 (476), 한국 (163), 필리핀 (95)
무라야마 지방	한국 (275) 필리핀 (105)	한국 (1,332), 중국 (1,015), 필리핀 (471)
오키타마 지방	한국 (153) 필리핀 (38)	중국 (745), 한국 (350), 필리핀 (205)

주로 브라질로부터 오키타마 지방으로 왔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인들은 쇼나이 지방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직업 훈련생들"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인 수의 증가 요인은 단지 결혼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귀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2차 세계 대전 기간 전에 혹은 그 중도에 중국의 북동부 지역으로 대규모로 보내진 나가노와 야마가타 출신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다. 게다가, "중국으로부터 온 귀환자들"은 일본이나 중국 국적의 소유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을 고려하여 "중국으로부터 온 귀환자들"의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모국(母國)에 조상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일본인" "중국계 일본인" 그리고 "필리핀계 일본인"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수는 농촌지역 물론 모든 공동체에서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을 한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수는 농업 지역은 물론 모든 공동체에서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을 한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었다. "농업 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이 "이웃과의 국제결혼"으로의 이행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야마가타현 내의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0.63%로 국가 수준인 1.57%와 비교하여 낮은 밀도를 보인다. 비교적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모가미 지방에서는 0.9%를 나타낸다. 한편, 다른 지방에는 외국인들의 인구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다른 지방에 매우 유명한 마을들도 있다. (예: 다수의 일본계 남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군마 현의 오이즈미 마을)

하지만, 20년 전에 외국인들이 거의 없었던 야마가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정착했으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지역 정부와 관련 가족들에게 있어 어려운 문제를 남길 것이다.

츠루오카시 데와 쇼나이 국제교류센터의 설립 사례

쇼나이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 현황

데와쇼나이(出羽庄內) 국제교류센터는 야마가타 현 츠루오카시(鶴岡市)에 소재한 다문화공생을 위한 국제교류센터이다. 이곳에서는 편의상 쇼나이 국제교류

센터로 표기하였다. 또한 먼저 쇼나이 국제교류센터가 건립되기 전부터 지역에서의 국제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본 사례연구를 분석하였다.

쇼나이 국제교류협회의 발족

츠루오카시에는 1985년 국제교류협회가 발족이 된다. 1987년에는 제3회 청년제를 실시하고 매년 1년에 한번씩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모임을 기획하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쇼나이 국제교류협회이다. 당초 88여명의 회원으로 시작이 되었다.

쇼나이 국제교류협회의 활동내용은 대개 아래와 같다.

①쇼나이 국제청년제 지원

②의류, 달력 해외발송(개발도상국 지원)

③태국의 복지시설에 주니어 민간대사 파견(아사히무라 교육위원회와의 공동개최)

④국제세미나개강

⑤외국어 관광안내 강습

⑥국제교류심포지엄 개최 (“농촌지역과 국제교류심포지엄, 외무성 후원에 의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국제화추진 심포지엄” 등)

⑦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교실 개설

⑧회보 “반도리교류” 발행 등이다.

이외에 야마가타현이 자매도시를 맺은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 츠루오카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뉴저지주 New Brownswick시로의 청소년파견에 대한 협력, 뉴칼레도이나 라포아시의 3번의 방문과 츠루오카의 방문, 미국 국제문제평의회의 국제교류 전문가의 내일 회의(일부는 청년제)등에도 참여하여 국제교류기금 지역교류진흥상도 수상(1990년)하였다. 초기부터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인기를 모은 것은 츠루오카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요리축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협회는 현재도 연락처를 데와쇼나이 국제촌의 아마존민족관[6]에 두고 활동을 계속하고있다. “반도리 교류”를 캐치프레이즈로 청년제의 기록책자도 이 협회가 작성하였다. 쇼나이지역에서 등에 짐을 질 때 쓰는 등받이를 “반도리”라고 하는데, 원래 “반도리”는 날다람쥐의 쇼나이 방언이며 날다람쥐와 등받이가 비슷

6) 아마존 민족관은 츠루오카시 출신으로 20여년간 브라질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귀국한 문화인류학 연구자인 山口吉彦(야마구치 요시히코, 관장)이 수집한 아마존의 민족자료를 중심으로 세계의 민족자료 약 1만점을 수장, 전시한 시설이다. 브라질 아마존과 관련된 자료로는 일본 최고의 컬렉션이다. 1983년에 자택에 만든 박물관이 그 기초가 되었다.

한 점에서 이름 지었다고 한다. 국가의 중요민속자료인 반도리와, 날다람쥐가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 이동하는 모습을 비추어 시민국제교류를 "반도리 교류"라고 한다.

청년제가 연속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면 교류협회도 이런 형식으로 발족되지 않았을 것이고 1년을 통한 교류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청년제도 확대되거나 계속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호 보완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협회에서 데와쇼나이 국제촌으로…

국제교류협회의 활동은 1993년의 "아마존 페스티벌"(데와쇼나이 국제촌의 이벤트)에서 볼 수 있듯이 데와쇼나이 국제촌 개설에 대한 협력 · 협동과 직결된다. 이러한 국제교류협회가 조직되기 이전에는 국제청년제의 모임이 있었다. 국제청년제는 제15회로 종료되었다. 청년제는, 매년 개최되었는데 각 시정촌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청년제를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15회 모임으로 종료하였고, 이러한 모임이 종료되면서 국제교류협회가 새롭게 조직이 된다. 1999년에는 "데와쇼나이 국제 썸머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외국인와 내국인들을 위한 축제가 계속된다. 썸머페스티벌은 청년실행위원회가 주최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썸머페스티벌에 대한 지원으로 약간의 지원과 함께 데와쇼나이 국제촌을 사무국의 우편창구로 사용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제1회 썸머페스티벌은 2000년도에 야마가타대학 농학부(농학부 캠퍼스는 츠루오카시에 위치함)등 지역 청년들이 새로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4일간에 걸쳐 데와쇼나이 국제촌에서 개최하였다. 국제청년축제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마당으로 실시한 것에 비해, 페스티벌은 유학생들에게 모국의 춤이나 요리를 서로 교환하는 "춤과 요리 배우기"가 주제였다. 국제청년축제 때는 홈스테이도 계속하고 농사를 함께 체험하거나 쇼나이 지방의 관광지를 구경하였다. 이때의 참가자는 16개국 42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였다. 또한 그 후 2002년의 자료에서는 "(과거의 교류에서) 약간 취지를 바꾸고 현내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데와쇼나이 국제 썸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젊은이들에 의한 썸머페스티벌은 2003년에는 SARS의 영향으로 중지되었다. 츠루오카시 외에도 공공기관이 국제교류나 다문화 공존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가지 이벤트를 개최하므로 페스티벌 형식의 행사를 계속하기 힘들

었다.

이처럼 가정에서 시작한 한 시민의 국제교류가 연속 이벤트로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다문화공생들을 위한 데와쇼나이 국제촌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다 츠루오카출신으로 브라질에서 돌아온 山口吉彦(야마구치 요시히코)라는 한 개인이 시작한 것이 확대된 것이다.

국제청년축제의 의의는 "야마가타현 지역개발발전사" 등에 아래와 같이 게재되어있다. 국제청년축제와의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의 특징을 배우고 그 체험을 통해 이문화와의 상호이해, 상호존중의 중요성, 시민교류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는 점,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발견과 스스로의 역할을 일깨우는 자기학습이 되었다는 점이다.

데와쇼나이 국제촌의 건립

1999년에 개최된 국제청년축제는 제15회로 막을 내리게 된다. 국제청년축제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버블경제가 진행됨에 따라 청년축제도 불황 속에서 매너리즘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벤트성인 행사보다는, 오히려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츠루오카시는 일본 동북지방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이벤트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인식하면서 다문화공생들을 위한 거점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청년축제는 츠루오카시에서 시작되었지만 쇼나이 공공기관에서 개최하였다. 따라서 거점시설도 츠루오카시의 국제교류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쇼나이지방[7] 전체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이름도 "츠루오카 국제교류센터"가 아닌 "데와쇼나이 국제촌(1994년 건립)"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다.

재단 설립 당시 국제교류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인구 10만 여명인 츠루오카시에 건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거기에 박물관기능이 병설됨으로써 폭넓은 대상자가 이용하게 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일이었다. 1990년대의 쇼나이지방은 외국인 며느리의 증가나 연구생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증가 등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점들이 있었다. 이벤트 행사처럼 단기간 체류하다 돌아가는 사람들과 비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으로서의 교류가 필요해진 것이다.

7) 야마가타현은 쇼나이지역, 모가미지역, 무라야마지역, 오키다마지역의 4개지역으로 분류하며, 츠루오카시는 쇼나이지역에 속한 시이다.

데와쇼나이 국제촌은 이러한 의식이 생기기 전후인 1994년에 “국제교류 촉진”, “국제이해 촉진”, “거주외국인 지원”, “민족문화를 통한 학습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재단법인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쇼나이 국제교류재단은 2007년이면 설립된 지 14년이된다. 또한 거점인 시설 “데와쇼나이 국제촌”이 개설된 지는 22년이다. 이것을 계기로 국제교류단체, 실행위원회, 개인 등의 참여를 통해 “데와쇼나이 국제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데와쇼나이 국제촌의 설립 과정

1988년 12월 자치성(당시) 리딩 프로젝트 추진사업 지정 (“시민국제교류 기반 만들기 사업”)

1990년 2월 추진계획 채택

1992년 6월 본체공사 착공

1993년 7월 재단법인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 설립

1993년 9월 본체공사 준공

1994년 4월 데와쇼나이 국제촌 오픈

시설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국제교류센터의 기능과 아마존 민족관이라는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류센터에서는 강연, 심포지엄이나 연수, 전시회, 파티 등이 가능한 국제촌 홀(최대 400여명 수용) 외에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코

〈표 7〉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의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재단법인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
소 재 지	야마가타현 츠루오카시 이세하라쵸 8-32
기 본 재 산	57,500,000엔(중 56,500,000엔은 츠루오카시, 나머지 1,000,000엔은 민간단체가 출연)
준공 연월일	1993년 7월 1일
사업 시작일	1994년 4월 1일
조 직	이사장 1명(츠루오카시장), 외 상무이사 1명, 외 이사 8명, 감사 2명 (이사는 이사장, 상무이사를 포함해 10명. 츠루오카시장, 국립츠루오카고 전문학교 교장, 야마가타대학 농학부장, 츠루오카 상공회의소 회장, 츠루오카시 농업협동조합 대표이사조합장, 츠루오카시 금융협회 회장, 재단법인 치도박물관장, 쇼나이 국제교류협회 회장, 츠루오카시 총무부장, 재단법인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 상무이사)
사 무 국	아마존 민족관장 1명, 사무국장(겸 상무이사) 1명, 사무국 차장 1명(츠루오카시에서 출향), 사무국 주사 1명, 스텝 3명, 국제교류 전문요원 1명으로 시작.

너, 도서코너, 어학 학습을 위한 연수실, 세계의 민족요리를 배울 수 있는 조리 실습실, 차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차(茶)학습실, 일본 전통문화를 배우는 화습실, 경식/카페코너로서의 교류 살롱 등이 있다. 조리 실습실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시설 내 설립이 필요하다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

아마존 민족관

데와쇼나이 국제촌에는 아마존 민족관(츠루오카시 국제민족자료관)이 설립되어있다. 아마존 민족관은 츠루오카시 출신으로 브라질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츠루오카시로 돌아온 문화인류학 연구자인 山口吉彦(야마구치 요시히코)가 수집한 아마존의 민족자료를 중심으로 세계의 민족자료 약 1만점을 수장, 전시한 시설이며, 아마존과 관련된 자료로는 일본 최고의 컬렉션이다.

이 자료실은 1983년에 자택에 만든 박물관이 시작이 되었다. 아마존 민족관은 야마구치씨의 컬렉션을 츠루오카시가 빌려 받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데와쇼나이 국제촌 재단은 그 접수업무나 기업전시의 전시물 교체 등을 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식 박물관전문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시물 교체나 워크숍의 개최 등 공공시설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데와쇼나이 국제촌에는 관장 외에 7명의 직원이 있다. 이 중에는 전문요원(중국어, 영어 가능자)이 있다. 재단의 운영은 츠루오카시가 90%를 보조하고 있다. 이 재단이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국제담당과(츠루오카시 총무부 기획정비과 국제실)는 이와 분담하는 형식으로 자매도시 교류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츠루오카시는 자치체로서도 거점을 개설한 1994년에 "세계로 열린 도시"라는 이름으로 내무성(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데와쇼나이 국제촌의 현재 활동

현재 데와쇼나이 국제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국제교류 촉진사업

① 교류이벤트 개최, 지원사업

각 국제교류관계단체에서는 데와쇼나이 국제촌에서 개최하는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관계단체에서는 국제교류에 이바지하는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데와쇼나이 국제촌은 국제교류 및 국제이해를 촉진하는 사업을 하며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다.

벤트를 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면서 실시한다. 2004년도의 경우 데와쇼나이 국제촌 개설 10주년을 기념하여 "데와쇼나이 국제촌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기간은 9월 18일~20일이었으며 데와쇼나이 국제촌을 무대로 각 단체가 각 분야에서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단체 상호간의 교류를 넓혀갈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이 사업으로의 참가를 야마가타현 국제교류 관계단체에 홍보하고 참가나 교류를 넓히는 것도 목적이었다.

패널 발표 외에 데와쇼나이 국제촌 음악제나 요리, 식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1994년도에 데와쇼나이 국제촌에서 국제교류단체가 개최한 사업에는 "데와쇼나이 국제촌 10주년기념"의 행사를 했으며 같은해 3월에는 "안데스문명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② 교류사업의 개최지원

데와쇼나이 국제촌에서는 각 국제교류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모집 이나 홍보 등 후원사업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문화제 개최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크리스마스 행사나 설날 행사 등도 포함되며 신규로 개최되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있다.

(2) 국제이해 촉진사업

① 외국어강좌 개강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어강좌는 ⓐ 일반 회사원을 위한 외국어 ⓑ 기업인을 위한 비즈니스 외국어(2004년도 신규사업) ⓒ 일반 회사원을 위한 외국어토론 등 세가지다.

2006년도에는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러시아어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각각 교재 등을 사용한 외국어습득을 하며 원어민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언어뿐만이 아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② 국제화의 이해를 위한 강좌 개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이해, 혹은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있는 과목으로 요리나 각종 체험강좌를 개설하고, 관심 영역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에는 ⓐEnglish Camp

: 영어권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생활영어를 사용하는 캠프를 실시한다, 체험학습형 사업, ⓑ세계의 요리클럽 : 요리를 통해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이 있는데 재료의 구입에서 실시까지 강사와 함께 한다. 1년에 6번 실시 ⓒ국제교류클럽 : 중고등학생들의 국제교류클럽을 2004년도에 발족, 미국 콜로라도주 걸스카웃과의 교류사업 등 ⓓ이문화(異文化) 커뮤니케이션세미나 : 이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워크숍형식의 세미나 개최 ⓔ영어세미나 : 중고등학생, 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영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일본문화의 체험강좌 개최 : 꽃꽂이나 다도 등이 있다.

③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이해강좌 등 개최지원

국제화에 관한 종합학습, 국제이해, 국제교류에 관한 각 학교에서의 수업, 내용, 정보제공, 지원을 한다.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① 일본어교실

매주 화/목/일요일에 개최되는 데와쇼나이 국제촌 일본어교실의 운영지원과 일본어지도 자원봉사자의 연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데와쇼나이 국제촌에서의 일본어교실에는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강자는 중국, 한국, 브라질, 미국, 캐나다, 태국 등 10개국 사람들이다. 일요일 낮시간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요일은 약 30명, 화요일은 약 40명, 목요일에는 초보자들을 중심으로 약 5명 단위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의 주요사업

• 일본어 네트워크사업 : 쇼나이의 일본어교실 운영자, 지도 자원봉사자의 네트워크를 구축. 정보교환, 지도기술 향상을 위해 연간 2~3회 회의, 연수회를 개최. 쇼나이지청 내 일본어교실 운영자,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데와쇼나이 국제촌은 이러한 연수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다.

• 지역 내 시설 견학회 : 쇼나이지청 지역에 있는 시설 견학회를 실시하고 있다. 거주외국인들이 쇼나이 공공시설 혹은 생활과 깊이 관련된 시설 등을 직접 보고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역행사, 축제 등 참가지원 : 데와쇼나이 국제촌은 지역행사, 축제 등에 대한 참가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텐진축제나 운동회를 홍보하고 많은 지역행사에 참

여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② 생활상담업무 실시사업

생활상담업무담당자에 국제교류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공공기관 등과 연계,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교류 전문요원을 배치 및 공문서, 용어의 번역 및 통역
- 행정창구 담당자회의 개최(2004년부터 시작, 쇼나이지청, 사카타시와 함께 쇼나이 시정촌의 외국인담당과의 업무담당회의를 개최, 정보교환을 도모한다.
- 사비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③ 정보수집 제공사업

- 거주외국국적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정비 및 제공(고등학교 입시제도,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등의 정보를 외국인들을 위해 정리하고,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회보 "마을 소식" 발행
- 인터넷, 영상, 신문 등을 통한 세계 각지의 정보제공

민족문화 학습연구사업

① 아마존 민족관 관장의 강연이나 아마존 민족관 내 자료를 사용하고 세계의 민족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업의 추진

- 아마존 민족관 관장의 강연
- 아마존 어린이페스티벌사업 실시
- 아마존 민족관 개관10주년 특별전(2004년도가 10주년. "안데스문명전" 등).
- 아마존 민족관의 자료정리, 보관

기타

찬조회원 등의 증강

①재단법인 찬조회원(일반가입신청, 세계요리클럽 가입, 어학강좌 수강) 개인회원은 연간 3,000엔, 법인회원은 연간 10,000엔

②찬조회원 가입 부가가치 확대(가족들도 어학강좌 수강료 10%할인, 아마존 민족관 입장료 무료) 등.

데와쇼나이 국제교류 재단에 관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기본 재단 예산은 57,500,000엔. 이 중 56,000,000엔은 츠루오카시, 나머지 1,000,000엔은 민간단체가 출연함.

데와쇼나이 국제촌 건설에 관한 비용은 아래와 같다.

비용총액 19억 7550만엔
건설비 14억 7510만엔
용지비 3억 3470만엔
기타 1억 6570만엔
※지역 총합 정비사업채 충당사업(90%)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재단운영비의 약 90%는 츠루오카시의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은 34,128,492엔. 츠루오카시의 보조 외에는 기본재산의 이자, 찬조회원의 회비수입(2004년도는 700천엔 정도), 외국어강좌의 수강료 등 사업수입이 3,350천엔 정도

③ 쇼나이지방의 거주외국인

쇼나이지역에서는 등록외국인 중 다른 지역에 비해 연수생이 많으나, 특히 의류관련 기업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인 기술연수생이 많은 편이다. 쇼나이지방은 양잠, 견직물의 전통적 산지이며 그 영향으로 섬유산업이 번성한 곳이다. 그래서 공장도 많으며 그런 기업이 조합에 가입하고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의류기업조합에서는 연수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일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일본어교실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회사내에서 일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기업조합이 연수생을 받아들일 경우, 예를 들어 사카타시의 경우는 행정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1개월간 일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 이것은 자발적으로 연수생이 국제교류살롱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연수생이 모여 살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도원이 교육을 한다.

사카타시의 경우는 베트남 연수생을 받아들인 기업과 국제교류살롱간에 인연이 생겨 2002년부터 국제교류살롱이 개최하는 살롱축제에 베트남요리점을 내고 연수생이 참가하고 있으나 이런 예는 드문 일로 알려지고 있다. 츠루오카시의 경우 노동영역에는 전체적으로 중국 연수생이 많은 편이다. 연수생들의 일본 방문의 목적은 교류가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는 많지 않다. 이런 연수생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이 왜 더 활발한 교류를 안 하냐는 의견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④ 츠루오카시 외의 활동과 연계기반

츠루오카시 외에서도 다문화공생을 위한 연구는 다른 시정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카다, 츠루오카시와 도시규모의 규모,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정문제 상담

다문화공생들을 위한 가족문제 생활상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츠루오카시의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과 사카타시의 국제교류살롱이 발기인이 되어 쇼나이 지청의 시정촌에서 일본어교실의 지도원이나 외국인 생활상담에 응하는 담당자들을 모은 정보교환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경쟁의식을 가진 츠루오카시와 사카다시가 협동하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한 정보교환모임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정보교환모임의 주제는 "교류, 학습, 상담"이며 제목은 "쇼나이지역 거주외국인 생활상담 등 실천자 정보교환모임", 주최자는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 사카타시(국제교류살롱), 재단법인 야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쇼나이 종합지청이다.

제1회 모임은 쇼나이 종합지청과 가까운 미카와마치에서 열렸으며 정보제공으로 데와쇼나이 국제촌이나 사카타시 국제교류살롱의 상황보고 등이 있었고 향후 정보교환의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또한 일본어교육 등에 관한 회의도 제창되고 상담창구의 실천활동을 이용한 네트워크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공생을 위한 교육문제, 재판 혹은 조정, 경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행정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즉 교육위원회나 재판소나 경찰과 연계하여 지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쇼나이 종합지청에서의 합동요청으로 현에 제의를 하고 현의 국제교류협회와도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⑥ 다문화공생 자녀 초등교육

거주외국인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취학하는데 앞서 학교 교사가 데와쇼나이 국제촌에 와서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취학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맡게 되며,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일본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안내책자를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사, 부모, 츠루오카 교육위원회, 그리고 데와쇼나이 국제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우리들의 초등학교"라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다양한 2중언어(일어/다문화공생 출신국언어)로 자료를 제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쇼나이지역의 경우 나중에 가족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즉 노동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은 나름대로 연수제도나 기업 내에서의 상담도 가능하며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비교적 빠르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본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모르거나 익숙하지 못하여 준비물 등에 있어서 당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업 등은 출신국에서 수영수업 자체를 모르거나 옷을 갈아입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적혀있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작성은 학교가 협력하고 번역은 데와쇼나이 국제촌의 전문요원이 협력하며 자금은 재단(데와쇼나이 국제촌)이 지원함으로써 "우리들의 초등학교"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필요한 곳에 배포가 되고 있다.

⑦ 의료지도 "쇼나이 남부 의료안내도"

데와쇼나이 국제교류재단과 야마가타현 쇼나이 보건소의 공동사업으로 "쇼나이 남부 의료안내도"를 작성하였다. 의료안내도(이하:의료지도)의 작성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생활상담이 급증했다는 점이 있었다. 시의 복지과에는 모든 상담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상담문제가 공유되기는 쉽지 않았다.

지도 작성은 츠루오카시가 최초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쇼나이 지청을 통해 각 시정촌의 협조로 작성이 되었다. 번역은 각 시정촌에서 데이터를 받아 번역하기로 했다. 중국어, 영어 등이 가능한 사람들이 작성위원회를 만들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츠루오카시 외에 하구로마치, 쿠시비키마치, 후지시마마치, 아사히무라, 미카와마치, 아츠미마치의 병원이나 치과의원도 다양한 언어로 지도에 기재하여 배포하고 있다.

⑧ 다문화공생과 국제연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현재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협력에 관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다양하다. 그러나 거주외국인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기술 연수생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지역내 국제교류단체와 연계활동이 거의 없는 편이며 지역내 국제활동 모임의 참여에도 소극적이다.

유학생은 쇼나이의 지방의 경우 수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다(사카타시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유학생은 사카타단기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단 일본대학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특히 모국의 상류층이나 실무경험자가 많다. 때문에 유학생들이 국제 교류의 핵심이 되기까지에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썸머페스티벌 실행위원에 츠루오카시내의 야마가타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된 대학, 대학생의 존재는 미래의 잠재적인 파워라고 할 수 있다. 연구기관으로서 기대가 큰 게이오기주쿠대학 첨단생명과학연구소나 토호쿠공익문화대학 등과의 교류도 검

토해볼 수 있다.

현재 사업의 기본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중심 지방자치단체(츠루오카시, 사카타시)

다문화 민족이 많이 거주하고있는 일본 야마가타 현의 다문화 공생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참가 지방자치단체(쇼나이 지청을 통해 쇼나이 각 시정촌)
- 야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 데와쇼나이 국제촌
- 사카타시 국제교류살롱
- 데와쇼나이 국제촌의 일본어교실 담당자, 상담창구 담당자
- 사카타시 국제교류살롱의 일본어교실 담당자, 상담창구 담당자
- 아사히무라의 일본어교실 담당자
- 기타 시정촌의 상담창구 담당자 등
- 데와쇼나이 국제촌을 이용하는 외국인
- 사카타시 국제교류살롱을 이용하는 외국인
- 아사히무라 일본어교실 수강자인 외국인
- 쇼나이 국제교류협회 등(민간단체)
- 학교, 교육위원회
- 의원, 치과의원

⑨ 데와쇼나이 국제촌, 그리고 시정촌의 연계에 대한 효과

데와쇼나이 국제촌이 이벤트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청 내의 타 시정촌의 국제관계 사람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츠루오카시와 사카다시는 각자 독립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예를 들어 사카타시의 담당자는 시의 행정업무에 소속이 되어 있어 츠루오카시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데와쇼나이 국제촌은 츠루오카시의 출자로 되어 있어 츠루오카시가 소속된 쇼나이지역의 국제업무에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데와쇼나이 국제촌을 중심으로 츠루오카시와 사카다시는 국제교류에 관한 다양한 정보교환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용은 각각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다.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쇼나이 지역 외의 지역주민들로부터 참여하고 싶어하는 문의가 많은 편이다. 또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만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

업들을 2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맺음 말

이상과 같이 일본 야마가타 현의 다문화공생 지원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일본 야마가타 현 츠루오카시의 다문화공생 지원 시스템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문화공생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1984년 일본의 혼슈의 북서부 지역인 야마가타 현의 츠루오카시에 만혼의 총각들이 늘어나자 츠루오카시에서는 필리핀으로 며느리를 섭외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 이 사업이 시초가 되어 필리핀 며느리 5명이 츠루오카사의 노총각들과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다. 이후에도 츠루오카시는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외국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관과 민이 적극 개입하면서 인구 10만 도시를 다문화공생이 가장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특성에 알맞는 다문화공생 지원시스템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다문화공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 사람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점이다.

야마가타 현 츠루오카시에 「데와 쇼나이 국제촌」이 건립되기 까지는 20여년간 브라질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귀국한 문화인류학 연구자인 山口吉彦(야마구치 요시히코) 부부의 헌신적이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야마구치 요시히코는 다문화공생을 위한 국제교류협회의 조직,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와 쇼나이 국제촌」이 건립되기 까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외국인 여성들과의 적극적인 국제결혼의 주선이 있었지만 이들이 사회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데와 쇼나이 국제촌」의 건립으로 인근도시로 다문화공생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확대되어 나가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별로 각 시민단체 종교기관 또는 뜻있는 개인이 다문화공생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다문화공생을 위한 거점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츠루오카시에서는 국제결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교육, 상담, 쉼터의 기능을 제공하는 다문화공생 거점 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츠루오카시에는 「데와 쇼나이 국제촌」, 사카다시에는 「교류광장센터」, 기타 다른 지역에는 명칭은 다르지만 다문화공생이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 운영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

약 4백여개가 각 시군구에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문화공생을 위한 복지센터의 건립 운영이 지역별로 다문화공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다문화공생을 위한 다양한 언어 교육이 지원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문화공생이 처음으로 국제결혼을 하고 이주하여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장애에 부딪치는 문제는 바로 의사소통이다. 야마가타의 경우 일본어의 교육은 대개 주 1-2회 로 일대일 교육이 가장 많았다. 또한 거주자의 약 20 - 30% 정도만이 「데와쇼나이 국제촌」의 언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 개인들의 자원봉사로 다문화공생을 위한 언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1회 500엔정도로 언어교육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문화공생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자택에서 또는 통원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공생을 위한 음식축제나 의상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문화공생이 그 나라에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음식축제나 의상 축제를 개최하면서 상대국과의 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공생들과 각 지역별로 음식축제나 의상축제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공생 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야마가타 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외지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가구당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서서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마가타 현은 외지로 떠나는 젊은이들, 결혼을 하지 못하는 노총각들에게 국제결혼을 적극 주선하고 국제결혼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야마가타 현 츠루오카시와 사카다 시는 다문화공생에 대한 벤치 마킹을 위해 견학하는 이들이 관광객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공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 평택, 충북, 전남, 충남 등 소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한다면 타시의 모델이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야마가타(山形)현 지역개발사 작성사무국 편(2005) “야마가타현 지역개발사 하권”.

鶴岡市, 出羽庄內(데와쇼나이)國際交流センター의資料, 2004-2007.

松本邦彦(2007), 야마가타현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성과, 평택대학교 다문화공생센터,「미래사회의 다문화공생」, 국제심포지엄자료.

庄內國際青年祭實行委員會, 庄內國際交流協會編(1995),『われら地球家族』(發行不明, おそらく1995年前後).

庄內國際青年祭實行委員會, 庄內國際交流協會編(2000)『庄內國際青年祭報告書　われら地球家族　庄內における草の根國際交流の軌跡』(發行不明´おそらく2000年前後).

山形県地域開發史作成事務局編(1998)『續山形県地域開發史　下券』.

山形県文化環境部文化振興課國際室(2005),「山形県の國際化の現狀」.

企畵制作・(酒田市)國際交流サロン企畵運營委員會, 協力・國際交流サロンを利用する外國籍配偶者の方々(2003, 改訂2004)『國際運轉免許證の取扱變更の說明と日本の運轉免許證をもらうためのガイドブック』(英語, タガログ語), 酒田市.

酒田市總務部總務課編(1997)『酒田生活手册(酒田生活ハンドブック)』(中日文對照)酒田市總務部總務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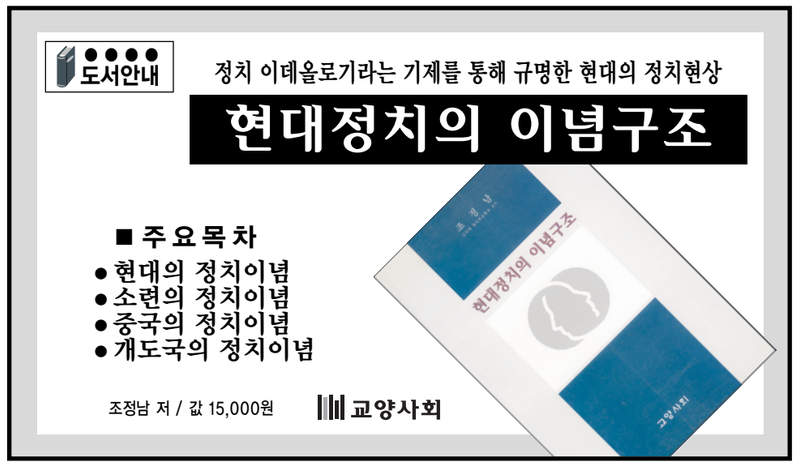

특집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이 용 승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yiysnim@empal.com

"우리는 더 이상 이주자에 '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논할 것이다." – 독일 이민청장 Maria Böhmer[1)]

들어가며

1871년 통일이후 강한 단일민족의식을 견지하고 있던 독일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 제공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기반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다. 적어도 1990년대 후반까지 독일의 외국인 및 이민정책은 국내의 외국인 수를 줄이는데 암묵적 목적이 두어졌다. 90년 초반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대규모 이민, 그에 따른 높은 실업률은 병리적 폭력을 동반한 인종갈등으로 이어졌다. 독일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관성적으로 외국인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지난 세기까지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할 여

지가 그다지 넓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독일은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다인종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적 통합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유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만이 아니다. 독일은 현재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이민의 개인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과거의 순혈주의에 안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독일은 2005년에 처음으로 이민법을 제정하였다. 이민법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독일 스스로 이민국가이자 다문화 국가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독일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 아래 스스로를 단일민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일문화 국가로 간주해 왔지만 이제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단일민족의 신화와 순수 혈통주의가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독일의 정책 변화는 근래 들어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정책 마련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2] 또한 독일은 1960년대 초반 한국 정부가 7천여 명에 이르는 광부와 간호사를 정권의 목적과 경제적 필요에 따라 파견했던 나라이기도 한 만큼 노동력 송출과 이민을 매개로한 한국과 독일의 관계는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3] 실제로 독일은 한국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한 국가이기도 하다.

본 글의 목적은 독일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책과 그 구체적 실천의 측면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다문화 가족은 소위 말하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렸을 경우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하에서는 독일의 외국인 관련 법규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독일 내 외국인 및 이민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외국인 및 이민과 관련한 법규 및 정책을

1) 지난 7월 12일 열린 제 2차 사회통합 정상회의에서 독일 이민청장의 발언내용이다. "National Integration Plan a Historic Milestone," 출처: www.germany.info(검색일: 2007년 7월 24일)

2) 한국은 2005년 전체 혼인신고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이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그 증가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통계수치는 박종보,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제문," 국회인권정책 연구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서울: 국회인권정책 연구회, 2007), p. 4. 한국의 외국인 실태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행정자치부, 2007. 8. 2) 참조.

3) 1960년 5 · 16 쿠데타 이후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막힌 박정희 정권은 당시 전후 산업복구를 위해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서독의 사정을 이용하여,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의 파견근로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지원받았다. 재외동포재단 한 · 유럽 연구회 편, "독일한인사회의 형성배경 및 성장과정," 『유럽한인사』(서울: 다해, 2003), pp. 400-408.

개괄할 것이다. 4장은 본 글의 핵심 주제로서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을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다인종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적 통합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유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다문화가족 현황

독일에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7,289,149 명의 외국인이 정주하고 있으며, 이는 총인구(82,437,995명) 대비 8.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4]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독일에 정주한 외국인이며, 약 150만 명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중앙 외국인 등록부(Ausländer – zentralregister ,AZR)에 등록된 외국인은 2006년 기준 6백 7십만 여명이며, 이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이는 2005년보다는 약 4,800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유는 사망, 국외 출국, 국적 취득에 따라 등록 외국인이 줄어든 탓이다.[5] 외국인 가운데 약 80%가 유럽출신이며, 전체 유럽출신 외국인 중 터키인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외국인으로는 최대이다. 독일의 외국인 정책이 터키인을 대상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역사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터키인들이 유럽의 다른 이민자에 비해 인종적으로 쉽게 구분이 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체 외국인 인구 가운데 약 32%를 차지하는 유럽연합 출신자들은 유럽연합 출범이후 노동시장 접근이나 정주권의 획득, 심지어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도 거의 차별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외국인 정책의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생김새도 크게 다르지 않아 터키계나 아프리카계에 비해 인종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표 1〉 2006년 독일의 외국인 총계

국 적	외국인 인구 (연말기준)
유럽총계	5,375,126
유럽연합	2,183,365
이탈리아	534,657
폴란드	361,696
그리스	303,761
유럽연합외	3,191,761
터키	1,738,831
세르비아/몬테네그로	316,823
아시아	819,623
아프리카	272,376
아메리카	213,069
호주및오세아니아	10,832
무국적자및미신고자	59,976
총 계	6,751,002

출 처: 독일 통계국

4) www.statistik-portal.de/Statistik-Portal/en/en_jb01_jahrtab2.asp(독일 통계국, 검색일: 2007년 7월 23일).
5) 2005년 인구 센서스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중국적자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중국적을 허용한 2000년 이후 매년 약 10만 명의 외국인 자녀가 태어나므로 약 50만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표 2〉 국적 부여현황

년 도	2000	2003	2004	2005	2006
시민권 부여자 수	186,700	140,731	127,153	117,241	124,832

출처 : 독일 통계국, 주미 독일대사관(www.germany.info) 참조 재구성

〈표 3〉 국가별 시민권 부여현황

년 도	2004	2005	2006	비율(2006년)
계	127,153	117,241	124,832	100%
이전국적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2,103	1,907	1,866	1.5%
크로아티아	1,689	1,287	1,737	1.4%
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3,539	8,824	9,552	7.7%
세르비아			2,989	2.4%
몬테네그로			70	0.1%
폴란드	7,499	6,896	6,937	5.6%
루마니아	1,309	1,789	1,382	1.1%
러시아연방	4,381	5,055	4,690	3.8%
터키	44,465	32,661	33,478	26.8%
우크라이나	3,844	3,363	4,545	3.6%
모로코	3,820	3,684	3,548	2.8%
튀니지	1,089	976	923	0.7%
아프가니스탄	4,077	3,133	3,064	2.5%
스리랑카	1,968	1,944	1,766	1.4%
베트남	1,371	1,278	1,382	1.1%
이라크	3,564	4,136	3,693	3.0%
이란	6,362	4,482	3,670	2.9%
이스라엘	3,164	2,871	4,313	3.5%
카자흐스탄	1,443	2,975	3,210	2.6%
레바논	2,265	1,969	2,033	1.6%
파키스탄	1,392	1,321	1,119	0.9%
필리핀	809	652	745	0.6%
중국	1,133	952	1,037	0.8%
이상총계	101,286	92,155	97,749	78.3%
기타	25,867	25,086	27,083	21.7%

출처 : 독일 통계국 참조 재구성

정주 외국인은 소정의 조건을 갖추면 독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00년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한 국적법 개정이후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며 2000년 가장 많은 국적 취득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수치는 2006년에 와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2>) 2006년에 시민권을 취득한 124,832명 가운데 터키출신은 33,478명으로서 단연 돋보인다. 세르비아와 이스라엘의 증가세 또한 두드러진다. 이를 이전 국적별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외국인과 독일국적 취득자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기원을 이주에 두고 있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민정책의 변천 과정

'

독일은 2차 대전 종전 후,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장려는 소위 '경제의 기적' (Wirtschaftswunder)을 효율적으로 지속시키고 충당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국내의 노동력만으로는 노동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독일은 1955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그리스, 터키 등 주변국들과의 노동력 파견 협약을 통해 소위 '손님 노동자' (Gastarbeiter)를 받아들였다. 독일 정부는 경기순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외국 인력의 순환을 원칙(Rotationsprinzip)으로 하였고, 독일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유입된 이주자들 또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1950년부터 1995년까지 독일에는 2천 8백만의 손님 노동자가 유입되었고, 같은 기간 약 2천만의 노동자가 독일을 떠났다.[6] 그러나 시간과 비례하여 장기 체류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 이들은 단기계약과 순환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숙련 기술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었으며, 이는 경제계와 노동자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외국인들의 이주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변동

〈그림 1〉 1950년대 '게스트 워커들

출처: Deutsch Welle

6) Philip L. Martin, "Germany: Reluctant Land of Immigration," *German Issues 21*(Americ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German Studies, 1998), p. 3.

에 별 영향없이 거주하게 되자 이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위는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였고,[7] 이들의 조기 통합을 통한 사회의 안전보장이 독일 사회 전체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주자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독일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8혁명' 을 계기로 이제 어른이 된 이주 2세대들은 사회적 관습을 비판하고, 그들의 사회적 처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인식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창출했고, 심지어 자신의 본국에서조차 진부해진 철학과 사상에 심취하기도 했다.[8]

1970년대 초반 외국인의 과잉에 대한 우려와 경제상황의 악화는 차등적인 아동보조금 지급, 이주민 가족의 고용제한, 가족 재결합의 제한 등을 통해 이주민 유입을 줄이고, 기존의 외국인을 귀환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실패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German Basic Law)에 따른 잇따른 판결과 여론의 반발이었다.[9]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와 권리의 제한은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었던 정책이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73년부터 시작된 이주 금지 조치는 기존에 본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 재입국이 불허될 것을 염려하여 정주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대신 이들은 당시 인도적 차원에서 비교적 허용범위가 넓었던 가족 재결합을 추진해 1973년 외국인 노동자 1인당 1.7명이었던 외국인 수는 1980년 2.3명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숫자로 보면 같은 기간 외국인 수는 4백만 명에서 450만 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또한 독일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오히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자녀 입국을 부추겼다.[10] 이는 게스트 워커의 순환 원칙의 실패에 이어 정책 목표와 결과 사이에 극심한 불일치를 보여준 독일 외국인 정책의 두 번째 실패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80년대 들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귀환정책과 이들을 독일사회로 통합하려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진동함으로써 이 또한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

7) 조화성, "독일의 민족정책," 『민족연구』통권 제6호(서울: 한국민족연구원, 2001), p. 65.
8) Barbara Weber, "Immigration and Politics in German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vol. 2, no. 3(University of Michigan International Institute, Spring 1995). 출처: www.umich.edu/~iinet/journal/(검색일: 2007년 7월 30일). 이 글은 독일역사상 최초로 터키계 guest worker의 2세대로서 하원의원에 당선된 녹색당의 Cemözdemir의 강연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9) 김용찬, "한인여성노동자 국제이주와 여성조직의 발전: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연례학술대회』(한국 국제정치학회, 2006), pp. 39-40.
10) Martin(1998), p. 13.

이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주자들의 지속적 유입과 비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이 독일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편입되고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1997년 외국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련 부서에 외국인 통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통합정책이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었다.[11]

1999년 국적법의 개정은 외국인 통합에 대한 한층 진전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1913년 국적법 제정 이래 몇 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지만 1999년의 법개정은 근본적 원칙을 수정한 큰 변화였다.[12] 1999년 개정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권 및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은 그간 속인주의, 즉 독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경우에 한해 시민권을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요구조건은 영구 정주권의 획득을 위한 요구조건과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거론할 필요가 있다.

국적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 법은 외국인 가정 출생자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조건은 다소 엄격했다. 즉 부모 중 1인 이상이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기간 제한이 없는 정주권을 보유하고 최소 3년 동안 독일에 거주했을 경우에 한해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등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 18-23세 사이에 두 국적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8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할 경우 독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개정 전 국적 신청 자격조건이 15년 거주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전과가 없어야 함은 물론, 독일의 기본적인 법을 지키겠다는 확약이 필요했다. 추가적으로 국적 신청자는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음 또한 증명해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하였더라도 독일 출신자의 경우 입국과 동시에 국적이

11) Thomas Liebig,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erman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47(OECD, 2007), p. 25.

12) 조화성(2001), p. 65. 국적법의 주요 내용은 auswärtiges Amt(외교부), "Law on Nationality."(www.auswaertiges-amt.de, 검색일: 2007년 7월 23일)를 참조했다. 국적법의 전문은 같은 사이트에 실려있다.

부여되는 것과 대비된다.

방금 언급한 바대로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개정법은 몇 가지 예외사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는 이전 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이전 국적의 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개인적 불이익이 과중할 경우 또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유럽연합 국가 출신자들에게는 이전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또한 마련해두고 있다. 이중국적의 허용여부는 매년 평균 약 1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자녀에게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기간 독일에서 정주해온 외국인 2세들보다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생활하는 독일인 2세들이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더 쉬웠다. 비록 18세가 되면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은 외국인 자녀들의 시민권 획득을 훨씬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개정된 바 있는 이민법은 독일이 이민국가임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행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민법이 처음으로 제안된 것은 2001년 정부에 의해서였다. 2002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민법은 수월하게 가는 듯했으나, 통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그 해 헌법 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선언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수정과 상원에서의 부결, 주정부와의 합의 난항, 여-야 회담[13]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이민법은 2005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민법의 입법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독일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지 자문 등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관련 부서를 두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의무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민법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코스를 개설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코스의 개설은 처음으로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과정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14]

내용적 측면에서 먼저 동 법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이들에 대한 통합정책을 연방차원에서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통합정책을 집행할 23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안이

13)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독일 내무부), "Information concerning the Immigration Act,"(출처: www.bmi.bund.de, 검색일: 2007년 8월 2일)
14) Thomas Liebig(2007), p. 27.

규정하고 있는 통합정책은 이민자들의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강제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5년 이하의 정주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필수적으로 언어코스에 참여해야 한다.[15]

〈그림 2〉 2차 사회통합 정상회의
(the Second Integration Summit, 2007. 7. 12.)

출처: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2007년 독일 하원은 EU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이민법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16] 주요 내용은 먼저 강제결혼을 방지하다는 명분에 따라 결혼에 따른 가족결합의 하한 연령이 18세로 규정하였고, 가족 재결합을 위해 입국하는 배우자에게 독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외국인들은 반드시 통합과정을 이수해야한다는 의무조항도 삽입되었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회보장분에 대해 최대 30%까지 삭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향후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독일의 삶의 방식이나 시스템,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타 투자이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정주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반적으로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에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족결합에 대한 제한이나 기초지식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개정 이민법은 터키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터키계는 이번 이민법 개정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한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상회담을 주선하면서 한편으로는 터키계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주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제2차 사회통합 정상회의(the Integration Summit)를 열어 '국가통합계획' (The National Integration Plan)[17]을 확정지었다. 사회통합 정상회의에는 독일 총

15) Dieter Dettke, "Germany's New Immigration Policy," Hearing on Germany of the Congressional Human Rights Caucus(Thursday, Oct. 11, 2001), p. 6. 출처: www.fesdc.org(검색일: 2007년 7월 25일)
16) 수정 이민법의 주요내용은 DW staff, "German Parliament Passes Immigration Reform," *Deutsche Welle*, 14.06.2007(www.dw-world.de, 검색일: 2007년 7월 27일) 참조.

리를 비롯해 정부 및 지방 각료, 다양한 이주자 연합,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1년 동안 6개의 워킹그룹이 작성한 약 400여개의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독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도출된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은 독일 전체가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는 대신 이민자들은 그에 부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해야함을 요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주고 받기'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사회적으로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대신, 이민자들은 수동적인 수혜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의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정책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 의식을 내재하고 있는 독일의 적극적 통합정책은 당장 터키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합의' 가 가질 수밖에 없는 고유의 한계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독일의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및 한계

독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민자 본인에 대한 정책으로서 시민권 및 국적관계, 노동시장 접근 및 통합, 출입국 관리, 차별시정, 정착지원, 사회보장 등의 정책과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 2세대에 대한 정책으로서 언어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직업교육, 차별철폐 등의 정책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민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구분없이 이 가운데 국적, 출입국 관리, 정착지원, 노동시장 통합,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적과 관련하여 독일의 국적법에 따르면 독일은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독일 국적자와 혼인만으로는 시민권 획득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며, 결혼 후 2년 경과와 혼인 이후 합법적으로 3년 정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독일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의 정주 외국인의 경우는 8년 동안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소정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국적신청의 자격이 주어진다.

2000년 개정 국적법의 효력발생으로 외국인 자녀에게도 독일에서 태어난 것을 조건으로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한 것은 독일의 이민정책사에 있어 큰 진전이었

17) 이에 대한 설명은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www.bundesregierung.de, 검색일: 2007년 7월 24일)를 참조하였다.

다. 한시적인 이중국적의 허용으로 그 전에는 비록 독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던 외국인 자녀들이 독일 국적을 부여받고 독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경우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 과거 몇 차례의 이중국적 허용논란이 있었으나 이중국적 허용이 통합정책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요 정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향후에도 이중국적의 허용문제는 외국인 투표권과 연계되어 언제든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인 실업률이 독일인의 실업률의 약 2배에 가까운 2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외 거주 가족은 해당 외국인이 1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고, 주거와 소정의 소득 수준을 만족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재결합이 허용된다.[18] 이민법은 가족 재결합에 있어 자녀는 일반적으로 12세 이하의 경우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기술이민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18세로 높아진다. 이는 1973년 경기후퇴에 따라 노동력의 유입을 막은 이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16세 이하로 제한해왔던 것을 조정한 것이다.

외국인 및 이민자를 위한 정착지원 또한 이민정책의 주요한 영역이다. 이민청은 이민자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 초기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춘 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각 주는 기초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 노인 · 여성 · 청소년 연방부는 별도로 청소년 이주 상담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19] 또한 연방정부와 다수의 주, 시에는 '외국인 행정관'을 두고 있어 각 행정단위의 외국인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

외국인의 실업률이 독일인의 실업률의 약 2배에 가까운 2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출신 가정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쿼터가 90년대 중반 이래 44%에서 25%로 떨어졌으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 비율은 3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인 가정의 자녀가 각각 59%, 11%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

18) Martin(1998), p. 3.
1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07), p. 173.
20) Martin(1998), p. 16.

다.[21] 그러나 독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외국인 출신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 출신 청소년들에게 경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족 재결합에 따라 이주한 여성 노동력의 경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터키계 여성의 취업률은 40% 이하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해 제공되는 것은 이민법이 강제하고 있는 600시간의 언어교육 코스가 거의 유일하다. 언어교육이 노동시장에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직업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할당된 시간도 부족하다. 직장언어를 특화시켜 교육하는 코스도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독일에서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이민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재결합 이민자들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22]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 출신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독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외국인 2세, 3세의 경우에는 독일어 구사에 있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언어교육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둘 이유가 없다. 또한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세대들과 달리 본국의 문화보다는 독일의 문화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통합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회에 배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설사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보통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Hauptschule)를 졸업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23]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기적으로 이들이 사회의 하층민을 구성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 뿐이 아니다. 일부 이민자 자녀의 비율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과 적대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24] 따라서 외국인 2세, 3세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과 더불어 '종족적 하층민'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은 이민 2세대들에게 좀 더 많은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적 언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독일 헌법은

21) Die Bundesregierung, "Vocational training as a key to integration,"(출처: www.bundesregierung.de, 검색일: 2007. 8. 1)
22) Thomas Liebig(2007), p. 32.
23) 독일의 고등학교는 Gymnasium, Realschule, Hauptschule로 구분된다. Gymnasium이 대학교 진학을 위한 곳이라면 Realschle는 이 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이며, Hauptschule는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깝다. 이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계층이 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24) 2006년 4월에 한 교사의 편지를 통해 공개된 베를린의 Rütli 고등학교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해설은 Marc Young, "Germany's School of Hard Knocks," *Spiegel Online*, April 05, 2006 참조. Young는 이 글에서 고등학교 폭력의 문제는 이민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학교설립의 자유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는 30개 이상의 무슬림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교육과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슬림 학교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터키계 자녀들이지만 종교적 색채를 가진 학교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인종 출신들도 포괄하고 있다.[25] 비록 90% 이상의 무슬림 가정이 공립학교나 심지어 미션스쿨에 자녀를 보내지만 이민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무슬림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이민 출신 교사를 통해 이민본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애초 송출국의 언어를 가르친 것은 이들의 부모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하는 측면과 독일어에 대한 습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다문화 가정 내 세대간 이질성 극복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합의된 '국가통합계획' 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독일어와 독일문화 교육을 600시간에서 900시간으로 늘리고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산업계와 교육후원 단체는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수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연방정부는 강제결혼 등을 구제하기 위해 이민 여성을 위한 긴급 보호시설(emergency shelters)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이민자 출신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 의 협력을 강조하는 독일판 '사회적 합의' 가 성공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부 터키계 단체는 가족 재결합을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터키 여성들의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는 이민법 개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에 불참을 선언하였다.[26] 터키는 과거 가장 많은 '손님노동자' (gastarbeiter)를 배출한 국가이며 작년에도 3만 명 이상이 독일국적을 부여받았다. 독일정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이민인구 중 가장 많은 220만(약 44만의 독일 국적자 포함)에 이르는 정주 터키계 이민자를 배제하고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사회통합계획은 통합을 거부하는 이민자 그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 비록 이민자 그룹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다문화 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은 엄존한다.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은 통합정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개연성이 매

25) Nico Landman, "Islamic instruction in Dutch schools," (출처: www.euro-islam.info, 검색일: 2007년 7월 31일)
26) 독일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국내에서 결합할 경우, 이러한 제약조건은 없다는 점에서 2007년 6월의 이민법 개정은 터키계의 불만을 샀다.

우 높다. 정책 시행을 담보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이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자에게 투자되는 연방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나마 대부분 언어 교육에 소요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요소이다.[27] 즉 예산의 분산은 이민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율과 다양한 수요측면에 맞춘 적절한 교육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오며

현재 독일의 메르켈 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오늘은 무슬림 대표자 회의, 내일은 사회통합 정상회의 등 회합과 모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28] 독일정부가 이민정책을 입안하면서 이민국가로서의 인식전환을 이루고 'nation-building'을 통한 통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민국가로서의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보다는 분명 진전된 모습니다. 치유와 교정,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정부의 '통합' 을 향한 노력이 역행의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다소 비관적인 전망은 비단 터키계가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심층적인 원인은 다문화주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독일 리더쉽에 있다. 독일이 이민자들의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유럽의 인근 국가들이 인종갈등이나 내부자에 의한 테러를 겪으면서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이상은 실패했다' [29]는 전제에서 출발한 공세적인 통합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통합정책 혹은 다문화 정책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일지라도 언제든지 역진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7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정책을 시행한 호주에서의 최근 인종갈등과 상호적대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적인 전망과 사회 전체적인 성찰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단지 일시적인 정치적 타협이나 단기적인 사회적 필요에 영합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다문화 정책이 도입된 경우에는 순행과 역행의 가능성은 위험한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 독

27) Thomas Liebig(2007), p. 25.
28) Spiegel Staff, "Can Merkel's Integration Summit Deliver More than Just Promises?," *Spiegel Online*, July 11, 2007.
29) 이민장관 Böhmer는 2007년 7월 11일 다문화주의에 대한 평가절하와 함께 이민자들이 독일 통합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했다. Trinity Hartman, "Integrating Foreigners an Ongoing Challenge for Germany," *Deutsche Welle*, 12.07.2007(www.dw-world.de, 검색일: 2007년 7월 27일)

일과 같이 다문화 정책보다는 통합정책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역행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인종폭력 사건에서 이러한 위험한 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소수인종에 대한 폭력과 갈등은 완전히 역사 속에 묻힌 사건이 아니다. 특정한 계기에 따라서 이는 언제든지 불씨가 되살아 날 수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2006년 동독지역의 포츠담에서 있었던 에티오피아 출신 독일인에 대한 심각한 폭행사건은 소수인종에 대한 무조건적 적개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동서독 통합이후 예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통합비용과 구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은 외국인에 대한 병리적 혐오증이 재발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차이의 공존을 용인하고, 공존과 이질적인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대사회가 발견하고 합의한 보편적 인권,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공공성 등의 기본적인 가치는 침해하지 않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다문화주의는 독자적인 문화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문화주의의 궁극적 지향은 '다원적 통합' 이다. 다문화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에스닉의 정체성은 약화될 것이며, 역으로 본국의 정체성 또한 통합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30]

독일이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정책은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적 통합' 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독일의 국적법과 이민법이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통합의 다원성보다는 주류문화로의 편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이민청장이 이민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이만큼 할테니, 너희들도 기여하라'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진정한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결정권한과 이를 위한 적절한 권력 배분이 필수적이다. 달리 말하면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대표' (representative)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온정주의적 접근은 단기적인 위안이 될지언정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형태의 참여라고 할 수 없으며, 결정된 정책의 수행력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자 욕망하는 것이지, 단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 혹은 통합정책의 객체가 되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31]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독일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이고, 미래의 노동력

30) Will Kymlicka,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1), pp. 16-169.
31) Barbara Weber(1995).

도 부족해 질 것이 틀림없다. 이민정책에 대해 보다 소수자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연 독일의 적극적인 통합정책은 이전의 정책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정책목표와 현실적 결과 간의 과도한 불일치를 노정할 것인지는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참고문헌〉

김용찬, "한인여성노동자 국제이주와 여성조직의 발전: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연례학술대회』(한국 국제정치학회, 2006)

박종보,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제문," 국회인권정책 연구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서울: 국회인권정책 연구회, 2007)

조화성, "독일의 민족정책," 『민족연구』통권 제6호(서울: 한국민족연구원, 2001)

행자부, "지자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행자부, 2007. 8. 2)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07)

재외동포재단 한 · 유럽 연구회 편, "독일한인사회의 형성배경 및 성장과정," 『유럽한인사』(서울: 다해, 2003)

Barbara Weber, "Immigration and Politics in German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vol. 2, no. 3(University of Michigan International Institute, Spring 1995)

Dieter Dettke, "Germany's New Immigration Policy," Hearing on Germany of the Congressional Human Rights Caucus(Thursday, Oct. 11, 2001)

Nico Landman, "Islamic instruction in Dutch schools,"

Philip L. Martin, "Germany: Reluctant Land of Immigration," *German Issues 21*(Americ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German Studies, 1998)

Thomas Liebig,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erman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47(OECD, 2007)

Will Kymlicka,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1)

www.bundesregierung.de(연방정부)

www.auswaertiges-amt.de(외교부)

www.bmi.bund.de(내무부)

www.germany.info(주미 독일대사관)

www.statistik-portal.de(연방 통계청)

www.dw-world.de(Dutch Welle)

Spiegel Online

인 터 뷰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 충남지역 네팔 이민여성을 찾아서

김 재 원·김 희 선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pisces30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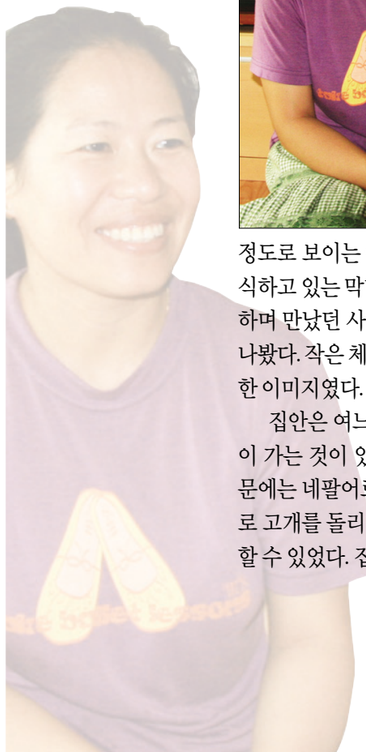

네팔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깃따 꾸마리나이(여·37). 이제는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를 찾아 충남 아산으로 향했다. 아산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자 아담한 아파트단지가 나타났다. 깃따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니 갑자기 네팔말로 짐작되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들렸다. 집을 제대로 찾은 듯싶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깃따가 아닌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깃따의 여동생은 우리가 온 것을 알자 언니를 찾아 안달이었다.

그 사이 우리는 집을 둘러봤다. 25평 정도로 보이는 아파트에는 깔끔하게 살림이 정돈돼 있었다. 벽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는 막내의 사진도 보이고, 또 다른 벽에는 깃따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사진들이 한가득 걸려있었다. 네팔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 작은 체구를 지니고 까만 머리에 내가 알고 있던 티베트 사람과 비슷한 이미지였다.

집안은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분위기 였지만 자세히 보니 유독 눈길이 가는 것이 있었다. 남편과 깃따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옆에 있는 화장실 문에는 네팔어로 보이는 신기한 문자로 된 달력이 걸려있었다. 그 달력 옆으로 고개를 돌리니 이번에는 문과 창문을 뒤덮은 한국어 단어 스티커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 한국을 알고자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고향을 잊

지 않으려는 깃따의 노력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느새 깃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있었다. "미안해요. 어머니께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서 좀 늦었네요." 생각보다 더 작은 체구를 가진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사실 늦은 건 아니었다. 우리가 약속시간보다 10분 일찍 온 것이었지.

깃따는 "신랑이 웃더라고요.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뭘 안다고 할 말이 있다고 부르냐고 핀잔을 들었지 뭐에요."라고 말하며 쑥스러워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던 깃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응한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나보다. 우리는 단지 다문화가족의 생활 모습을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된다고 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깃따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자녀들 소풍에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 친구들은 오지 못했어요."

날을 좀 잘못 잡았나 싶었지만, 이 분만이라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 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며 만나게 되었어요. 각각 온 나라는 다르지만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여 수다로 서로 얘기하며 위로도 얻고 그래요, 네팔 사람은 저와 이 근처에 시집온 사촌, 이렇게 둘이 아산에 살고 있어요. 천안에는 네팔 사람이 백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서울에는 네팔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꽤 잘 되고 있어요. 혹시 네팔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고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아마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았다는 말인 듯싶었다.) 그런데 그다지 큰 매력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사는 모국 사람들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가족 친구들이 더 좋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산업 연수생으로 오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요"

"네, 이제 고용허가제로 바뀌었죠. 왜 한국을 연수 대상으로 선택하셨나요?"

"아직 네팔은 많이 발전이 안 되어서 공장도 적고 일자리도 적었어요. 한국은 시골에도 공장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 집은 시골이라 더욱 그런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산업연수생 알선 업체에 지원하였고요. 당시 네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와 함께 114명 정도가 함께 한국에 왔어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웨하스 공장에서 일했어요."

"과자 말인가요? 웨하스?"

"예, 맞아요. 오리온 웨하스. 15명 정도의 네팔 사람이 함께 일했고요. 여기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그 공장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 네팔 사람들이 일해요. 제가 올 때와는 다른 사람들이고요. 연수 기간 2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제가 통역 등 그 사람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언어, 의사소통 등 힘든 게 많았어요. 서로 불편하고 속상하고.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잘 할 수 있지만"

"97년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97년 2월 2일. 그때도 눈이 이만큼씩 쌓여서 좋아했는데. 눈을 뭉쳐서 먹기도 하고요. 아주머니들이 그거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만요.(웃음)"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며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쌓인 눈을 보니 조국인 네팔의 눈이 생각이 났었나보다.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막막했으면 눈에 그런 기쁨을 느꼈을까.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하시네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거기 공장에서 알바하는 학생들한테서요. 여학생들이 저에게 언니가 네팔어로 뭐냐고 물어서 '니디'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저를 '니디' 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어요. 또, 남자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군대 대신 와서 일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게 이름이…"

"방위산업체요?"

"예. 그걸 거예요. 2년 6개월인가 거기서 일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한테도 배웠어요. 그리고 TV도 많이 보면서 공부했어요. 방에 TV가 없어서 누가 버린것을 가져 와서 봤는데, 식당에도 TV가 있지만 겨울에 추우면 거기 앉아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방에 있는 TV를 많이 봤어요. 특히 연속극을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TV가 언어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가 울었던 것은 이국에서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고생하는 모습에 자신의 힘들고 외로운 생활이 겹쳐져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다문화 가정 분들을 언어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시나요?"

"직접 만나서 도와주는 일은 적고요.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상으로 가르쳐주는 일은 많아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 있잖아요? 울산 같이 먼 지방에 사는 네팔 사람들은 병원 같은 데 가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핸드폰을 의사선생님에게 건네서 바로 저하고 얘기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돕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남편이나 집안친척을 통해 배우죠. 요즘엔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많이 생겨서, 그리고 사회복지 봉사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엔 그런 것 없었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벽에 커다란 딸의 사진이 걸쳐 있었다. 필자도 저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형 같이 예쁜 아기 사진이었다.

"따님이신가요? 올해로 몇 살인가요?"

"딸이 둘 있어요. 첫째가 다섯 살인데 이것저것 물어보는 나이잖아요. 얘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답을 못할 때마다 답답하고 미안해요. 특히 제가 한국 사람하고 발음이 많이 달라 어색하잖아요. 아이가 그림책에 나오는 사자, 호랑이 같은 글자들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주면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라며 빼앗아 가기도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어 충분히 잘 하시는 거 같은데"

"말하는 건 되는데, 읽고 쓰는 건 잘 안 돼요. 월수금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시간도 적고요."

"월수금에 일을 하신다고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월수금에 센터에 가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상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분들이 결혼이민자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결혼이민자 스스로 상담하고 상담 받는 편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상담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결혼이민,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을 상담해요,"

"결혼이민자센터가 여기서 가깝나요?"

"버스타고 25분 정도 걸려요."

이 주변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다. 경기도의 일부지역처럼 외국인 노동자만 살고 한국인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궁금했다. 약간 돌려서 질문해 보았다.

"이 주위는 어떤 곳이죠? 아파트 규모라든가 여기 사시는 분들의 주요 직업 같은 거요."

"나도 여기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요. 1년 밖에 안 된데다가 제가 바쁘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결혼이민자가 많이 사시나요?"

"조선족, 필리핀, 태국인, 일본인이 있다고 들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전 이웃의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옆집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여 얼굴도 익히고. 여기 근처는 농촌이라 채소가 많이 자라잖아요? 상추 같은 것도 갖다 주며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알면 좋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사한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여기로 이사 오게 되었나요?"

"신랑의 집이 이 부근이라 여기로 이사 왔어요. 시부모 연세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모이는 공간이 적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노인정 같은 것 정도뿐이라서"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02년 정도에요. 월드컵 때 친정 가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월드컵도 못 보고 나는 이게 뭐야' 라고 농담하고 그랬어요."

"그때 시댁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반대라도 하지 않았나요?"

"형수님 소개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반대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당시에 동생도 여기에 왔었어요."

"연수생으로요?"

"예. 지금은 돌아갔지만요. 동생을 통해 친정과 얘기했지만 엄마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시댁에서는 반대가 없었고요."

"친정이 왜 반대했나요?"

"친정의 반대 이유요? 단지 너무 멀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오기도 어렵고, 제가 가기도 어렵고 해서요, 비행기만 몇 십만 원이 드니까요. 그리고 누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요. 게다가 제가 친정에서 맏딸이거든요."

"네팔도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한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예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바늘에 실을 매는데, 너무 길게 매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매면 시집을 멀리 간다는데 네가 그래서 이렇게 먼데까지 시집왔나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한국에도 그런 말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라고 했어요. 살다보니까 비슷한 것이 많이 보여요."

"한국에 결혼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으셨나요?"

"한국에 오래 살았고 마음의 준비도 있었는데, 그래도 불편한 것은 있어요."

"남편 분은 지금 뭐하세요? 농사를 지으시나요?"

"아니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규모의 회사지만요."

직장 얘기가 나오니 그는 자녀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결혼 이민자가 오면 가정주부 일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한국에 적

응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자식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의 첫 번째 선생님은 엄마'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한국에 더 적합한 속담인 것 같아요. 전에 TV에서 보니까 R 발음이 안 되어서 자식 혀 수술을 시킨다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 집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순간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먼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또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겠어요.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느끼신 적은 있나요?"

"아직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갔지만,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길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이죠.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그걸로 다가 아닌데, 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KBS에서 하는 'Love in Asia'를 보니 스리랑카 다문화가족이 나오는데, 유치원에서 그 집 아이랑 다른 아이들이 같이 크레파스로 스리랑카 국기를 그리기도 하고 스리랑카 전통복장을 입어보며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느끼는 것도 교육이 되잖아요. 난 항상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의사소통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마음이 망가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한국인들은 다문화가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같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몇 년 전보다 사람들의 의식, 눈초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만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옛날에는 산업연수생에 대해, 결혼이민자에 대해 깔보는 게 많았어요. 저도 연수생 때 느꼈던 것이, 공장 아주머니들이 제게 '많이 먹어. 너희 나라도 밥 먹니? 쌀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기분 나빴어요. 지금이야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쌀이 주식이에요' , '우리도 밥 많이 먹어요' 라고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기숙사에서 혼자 밥을 먹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한국사람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몰랐던 거 같아요. 지금은 센터에서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같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 눈이 변한 건지, 내가 한국생활이 편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군요."

"네. 그리고 여가부에서 다문화 가족 면접, 탐방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런데, 면접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데요. 러시아인 여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애가 영어로 자꾸 말을 걸었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어는 잘 하지만 영어는 못 했데요.

그래서 한국어로 '나 영어 못해요' 라고 했는데, 그 애가 '미국사람 아니에요?' 라고 또 영어로 했데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애가 옆에 있던 엄마한테 '엄마 이 사람 영어 못한데. 미국사람 아니래' 라고 했데요. 그동안 애 엄마는 옆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있죠. 엄마가 뭐라고 한 마디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의 어머니가 금발 외국인이 반드시 미국인인 것은 아니고 영어를 할 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아이 어머니가 다문화주의를 아이한테 교육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기에는 유창해 보이는 그의 한국어로도 다소 한계가 있어 보였다.

"몇 년 있으면 자녀분이 학교에 다니시게 될 텐데요. 다문화가정 자녀분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정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교사 선정 같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둔 당사자 입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으면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자 그는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잘 아실까요? 정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대책을 잘 세워줄까요? 저도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다문화가정의 엄마가 직접 가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챙겨주면 다른 아이들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예민한 시기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말이죠. 지금은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때 마침 그의 친정어머니께서 들어오셨다. 아까 어머니께서 물리 치료하러 가셔서 늦었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라고 지레짐작했었는데, 짐작이 틀린 모양이다. 네팔의 전통복장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어머니는 예순이 조금 넘는 연세로 보였고 머리에는 전통양식의 머릿수건을 쓰고 있었다. 머릿수건 뒤로 한 갈래로 묶은 긴 댕기머리가 보였다. 집에 있는 우리를 보자 그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합장하였다. 네팔식 인사법으로 보여 황급히 일어나 같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예를 표했다. 친정어머니는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한국어를 못 하시는가 보군요."

"예. 한국어는 잘 못하세요."

"네팔은 힌두어를 쓰던가요?"

"네. 맞아요. 힌두어를 쓰죠."

힌두어라면 인도에서 쓰는 힌두어와 같은 것이리라. 필자는 인도여행을 다녀온 친구에게 힌두어 인사말을 물어보는 문자를 몰래 보냈다. 이들의 말 한 마디라도 하면 힘들게 인터뷰에 응해준 이 아주머니와 그 가족들이 기뻐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는 동안 아주머니는 얘기를 계속했다.

"의사소통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마음이 망가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의자에 앉아서 상담한다고 이런 얘기가 다 해결될까 의문이에요. 문화 차이도 많이 나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신랑한테 심하게 맞았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우는 것이었어요. 왜 우냐고 물으니, 글쎄요, 문화 차이인가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었는데, 그 애는 그전에 목욕물을 받아놨던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려고 했데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파리채를 들고 들어와서 막 얼굴을 때렸데요."

"파리채요? 진짜?"

"예. 그러면서 너희 나라는 손님이 오는데 목욕하러 들어가냐고 때렸데요. 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시어머니가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꾹 참았어요. 내가 도움도 제대로 못 주고 그 애가 우는 게 안타까워 결혼이민자 센터 선생님에게 얘기하니까 몽골사람인 그 동생을 가정 폭력 상담센터로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는 이 얘기를 하면서 공분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내 생각으로는 손님이 오셨는데 목욕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파리채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를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파리채로 얼굴을 때릴 수 있을까? 그것도 아내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처우가 큰 문제에요. 버지니아 사건 같은 것이 우리 혼혈인에게도 생길까 걱정이에요. 'Love in Asia'에서 싱가포르 할머니라는 분을 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할머니라는데, 이 할머니 얘기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몇 십 년 동안 국적도, 합법적인 체류권도 못 얻고 고생만 계속하고…. 한국 정부에서 뭔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는 몇 년 있다 한국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다문화가정에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출한 사람도 있고 아이 낳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아무 문제없으면 자기네도 잘 살고 싶은데 왜 나갔겠어요. 아까 말했던 몽골 동생 있죠? 그 사람도 아직 한국국적을 못 얻었어요."

"참, 우리나라 국적은 얻으셨나요?"

"전 작년 8월에야 국적을 받았어요."

"작년에요? 좀 늦게 하신 거 같은데, 한국 국적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팔국적을 포기하는 게 문제였어요. 한국은 국적을 하나만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네팔국적을 포기하려면 네팔까지 가야하니까 늦은 거예요. 사실 네팔 국적을 포기할 때요. (여기서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집을 떠날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태어난 나라 국적을 포기할 때는 정말…"

그의 말과 눈에서 착잡함이 느껴졌다. 필자는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화제를 바꿀 필요성을 느꼈다.

"취미 활동은 어떤 것을 하세요?"

약간 핀트가 벗어난 듯한 질문이었지만 기대한 효과는 있었다.

"아직 밖에 나가서 하는 취미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말은 되는데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게 잘 안 되어서.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시간도 별로 없고. 네팔에 있을 때도 공부 욕심은 있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지금은 많은 건 못 배워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베란다 쪽을 보니 친정어머니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말이 안 통하는 외로움을 뜨개질로나마 푸시는 것이 아닐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찡해졌다. 아주머니가 그런 나의 시선을 눈치챈 것 같았다.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도 오후 여섯시까지 맡기는 게 다에요. 완전히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부를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동생과 어머니를 데려와서 애들을 맡겼어요. 두 사람 체류기간이 얼마 전에 다 되어, 센터 소장님께 사정을 해서 어떻게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시켰죠. F-1 비자로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는 거고요."

"어? 이상하네요? 아주머니가 이제 한국 국적자이니까 한국 국적자의 가족은 5년짜리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청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기껏해야 저녁 6시까지니까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인터뷰를 시작한지 두 시간 반 가까이 지나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더 있는 것은 실례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이제 슬슬 정리하는 질문을 하기로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국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랑만이라면 손짓발짓으로 어떻게든 되는데 사회에서라면 도저히 안 되죠. 게다가 말을 어느 정도 해도 회사 같은데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요. 어색한 발음의 문제도 있고 단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한번은 필리핀 여성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자리를 알아 봤었데요. 그런데 발음이 좀 이상해서인지 '동포세요?' 라고 물어봤데요. 그때 그 친구는 '동포' 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헷갈렸데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 동포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던 거 있죠. (웃음) 조선족한테 '동포' 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걸 생각해내고, '동포는 아마 중국 사람을 말하는 건가봐' 라고 했죠. '에? 나보고 중국사람 같다고 한 말이라고?' 라면서 이상해하더라고요. 나중에야 그 말뜻을 알았지만요. 그 필리핀 친구는 일단 자기는 동포 아니라고 했으니까 잘못한 거 없지만요."

한국어 얘기를 다 하자 아주머니는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집올 때 홀몸으로 오니까 육아를 할 경제력이 필요해요. 센터에서 이를 위한 도움을 주었고 이제는 아산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이나 피부 미용 같은 기술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저도 피부미용을 배우기 시

작했어요.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술은 언젠가 써먹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이 일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한번은 이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이거해서 직장 얻으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만 받는다고 하네요. 좀 다른 종류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례지만, 연수생 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당시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3년 쯤 지나니 1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일이 좀 힘들었었죠. 우린 한국국적을 얻어도 차별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퇴직금을 안 주는 곳도 있어요. 센터에서 한 친구가 일을 그만두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했데요. 그 친구는 한국 국적이 있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노동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그 분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해결돼.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이게 퍼져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돼.'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버지니아 같은 사건도 사람들의 이런 감정이 쌓여서 생긴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다문화 가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한민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신라시대에도 인도에서 온 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관가야의 김수로왕이 인도에서 건너온 허왕후(許王后)와 결혼했다는 설화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다문화 이민 가정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2세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미국의 하인스 워드도 혼혈이라 맘 상한 것이 많다고 하던데, 미국에서 성공한 이후 한국에서 대단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1억 원짜리 차도 공짜로 주고, 천만 원짜리 양복도 해주고. 만약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다면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싶어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7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들에 대해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이민자들도 한국사회가 차갑다고만 말하지 말고 좀 더 한국문화와 사회에 대해 잘 배우려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동생들하고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마라톤 선수도 한 걸음에 우승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해요. 한국어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요. 난 요즘엔 '받는 것도 행복이고 주는 것도 행복이다' 라고 느끼고 있어요. 주위에 다른 다문화가족에게 조언을 주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니 우리를 잡고 깜빡 잊고 있었다고 하며 부엌에서 뭔가 음료수를 가져온다. 토마토 주스였다.

"제가 잘 몰랐는데, 네팔의 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우리 남편의 직장 이사가 제가 네팔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꿀을 꼭 좀 구해다 달라고 해서 한 병 나눠줬어요.

여기에도 듬뿍 넣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들이키니 씁쓸하면서도 달달한 꿀맛이 혀에 전해진다. 네팔의 자연과 만든 이의 정성이 담겨서 그런지, 명약을 먹은 듯한 느낌이다.

가기 전에 친정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리고자 찾았다. 예의를 차리려고 한 일인데 방에 누워계신 것을 억지로 나오시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친정어머니와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온 동생이 네팔식 인사법인 합장을 한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네팔식 인사법은 이렇게 합장을 하고 두 번 조아리는 것이라고 한다. 필자도 얼른 두 손을 모아 두 번 조아렸다. 그리고 아까 인도여행 갔던 친구에게 문자로 물어서 준비했던 비장의 말 한 마디를 했다.

"페르밀렝게(또 봐요)"

억양은 분명 이상했겠지만, 배웅을 하는 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오는 것을 보니 맞게 말하긴 말한 모양이다. 오랜 대화를 해준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를 환대해 주었던 동생 분과 친정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파트 문을 나섰다.

인 터 뷰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 부산지역 이민여성을 찾아서

김 재 원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kjw0028@hanmail.net

서울에 이은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부산. 서울이나 경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의 수가 적지만 부산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CIS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화정 종합사회복지관. 3층의 건물로 노인정, 어린이집, 컴퓨터 교육실, 음악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는 노인 및 아동 복지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는 1주일에 한 번씩 있는 한글 및 한국어 교육이다.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수업비를 내주어서 이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금요일에 있는 초급반 교실에 지도하시는 선생님 및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에 참관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 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은 복지관 3층에 위치한 '학습실 2' 라고 쓰인 작은 교실에서 10시에 시작하였다. 교실은 선풍기와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 찜통더위를 어느 정도 달래주고 있었다. 선생님은 60대 정도의 연세로 보이는 분으로 국어교사

한국어 교육 중에 잠깐 목을 축이는 한국어 선생님. 참을성을 가지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좋았다.

출신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7명의 여성으로 5명은 베트남인, 1명은 러시아 계통으로 보이는 우즈베키스탄인, 1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었다. 이들은 아기를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시간동안 여기서 한글 및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200p 정도로 보이는 칼라로 된 한국어 교과서를 꺼냈다. 오늘의 수업은 어미 변화에 대한 수업으로 시작하였다. '가지고, 가지며, 가지면' 이라는 어미 변화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에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들이 보였고, 이들은 연신 질문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은 '식탁' 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시늉을 하면서 '식탁은 의자에 앉아서 먹는 밥상' 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발음이 이상하다 싶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음을 지적해주며 교정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여 알아듣기 쉽도록 하고 있었다. 초급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의 성심껏 가르치려는 자세와 학생들의 열성적인 학습태도가 돋보였다. 자세히 보니 베트남 출신들은 'ㅊ' 이나 'ㅌ' 같은 거센소리의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같았고, 우즈베키스탄 출신들은 '깨소금' 같은 된소리가 있는 단어는 잘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틀린 발음이 어색했지만, 참관하는 필자는 물론 선생님도 단 한 번도 웃거나 하지 않았다. 필자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외국어를 배우면 어색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11시 쯤 되자 필리핀 출신의 여성이 들어왔다. 지각이었지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은 조금도 나무라지 않았다. 아기 키우는 입장이라 이해하는 것일까. 지각생이 들어오자 교실이 다소 어수선해진다. 베트남어와, 우즈베키스탄어로 대화가 각각 이루어진다. 그래도 수업은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이 교실에서 한국어도 배우지만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사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듯 보였다.

11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허락되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2교시 수업으로서 요리 교실에 참가해야하기 때문에 20분이 조금 넘는 시간만 인터뷰 시간으로 할애되었다. 요리 교실도 한국 음식이라는 문화교육으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모습. 책상의 세로 면에 앉은 여성이 베트남 출신 '원탄튀' 씨, 가장 왼쪽의 붉은 상의의 여성이 지각생인 필리핀 출신 '마리린' 씨, 검은색 상의가 고려인인 '김띠엔' 씨, 그 옆이 순서대로 베트남인 '정찌아라' 씨, '윙티힝' 씨, '카오페이' 씨, '후인티베' 씨.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가장 오른쪽에 러시아 계통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인 '풀랴' 씨가 있다.

필자가 함부로 시간을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필자는 8명의 여성에게 한꺼번에 질문을 던지고 이들의 자유로운 말을 듣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초급반이라 한국어에 다소 서투른 경향들이 있었지만, 옆에서 선생님이 의사소통을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 베트남/우즈베키스탄/고려인 출신

필자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한국 문화와 자신이 원래 있던 나라의 문화가 어떤 점이 다른지를 묻는 것이었다. 대화를 여는 의미로 한 말이었는데, 그런 의미로 효과가 괜찮았다. 가장 한국어에 능숙해 보이는 베트남계의 카오페이 씨와 러시아계 우즈베키스탄인인 풀랴 씨가 말문을 열어 주었다.

카오페이 - 음식이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애기 키우는게 너무 힘들어요.
풀랴 - 한국음식이 힘들고 한국 맛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특히 사람들이 힘들어요. 만나서 대하기가 어려워요. 한국말 배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시고 있으세요? 이 교실 외에는요.
풀랴 - 한국어는 남편이 많이 가르쳐주고요. 시아버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 아, 가족이나 어른들이 가르쳐 준다는 말이죠?

베트남 출신들은 '츳'이나 'ㅌ' 같은 거센소리의 발음과 우즈베키스탄 출신들은 '깨소금' 같은 된소리가 있는 단어는 잘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았다.

풀랴 - 네, 그래요.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제일 힘드신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카오페이 - 한국이웃과 말이 안 통해 답답했어요. 놀리기도 하고요.
놀리기까지 했어요?
카오페이 - 네. 그래서 속상했어요. 공장에서 특히 더.
아, 산업 연수생으로 오셨군요?
카오페이 - 네. 그래요. 이제 4년 되었어요.
이제 연수 기간은 끝나셨겠군요.
카오페이 - 예, 끝났어요.
저,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카오페이 - 남편은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해주는 회사요.
아, 그렇군요. (풀랴 씨를 보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다고 했죠? 러시아어를 쓰시나요?
풀랴 - 러시아어도 쓰고요. 우즈베키스탄 말도 써요. 아까 친구랑(고려인 분) 얘기한 것도 우즈베키스탄 말이고요.

우즈베키스탄 말이었군요. 전 러시아어인 줄 알았는데. 남편 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풀랴 - 저도 소개를 받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주 잘해줘요.
주위 여성들- 잉꼬 부부예요.
풀랴 -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 아, 잉꼬 부부란 건 잉꼬란 새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서로 잘 해주고 위한다는 뜻이에요.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들이랑은 어떻게 연락을 하고 계시나요?
주위 여성들- 전화로요.
카오페이 - 메일로도 보내고요. 주로 전화로 해요.
이 때 쯤부터 원탄튀 씨가 대화에 합류하였다.
원탄튀 - 전화가요. 비싸요. 한 달에 30만 원~40만 원 나온 적도 있어요.
주위 여성들 - 맞아요 맞아.
카오페이 -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해요. 만 5천원 주고 카드 사면 3시간 전화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요.
주위 여성들 -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제전화용 선불카드를 말하는 것 같다. 전화로 대화를 많이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국제전화용 선불카드는 상당히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는 모양이었다.
한국에서요. 특히 부산에서요. 여러분 나라에서 오신 친구 분들 많이 있나요?
카오페이 - 원탄튀- 많이 없어요.
풀랴 -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부산은 러시아인이나 우즈베키스탄인이 많으니까요. 그렇겠군요.
카오페이 - 우리는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많다는데.
예. 그런데 인터넷으로 베트남인 커뮤니티 찾아보면 친구 분들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겁니다.
카오페이, 정찌아라, 후인티베 - 커뮤니티? 그게 뭐에요?
선생님 - 커뮤니티라는 건 말이죠. 인터넷에 있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컴퓨터를 좀 배우시면(화정 복지관에는 컴퓨터실이 있다) 인터넷으로 베트남 커뮤니티라고 쳐봐요. 그러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카오페이 - 아, 그렇군요. 배워야겠네요.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위 여성들- 없어요.
풀랴 -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카오페이 - 다른 사람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받은 적 없어요.
질문을 하자마자 단호하게 일치된 대답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아, 없으셨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에서도 다문화

오른쪽부터 앞줄 기준으로 한국어 선생님, 김띠엔씨, 풀랴씨, 정찌아라씨, 카오페이씨, 윙티힝씨, 후인티베씨, 마리린씨, 뒤의 두 사람 중 왼쪽이 '원탄튀'씨, 오른쪽은 도와준 여선생님이다.

가족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카오페이 - 저기요. 다문화가족이 뭐예요?

요리교실로 학생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와서 대기 중이던 복지관의 다른 여선생님이 필자 대신 다문화가족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었다. 그 선생님을 보니 필자가 은근히 폐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선생님-다문화가족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이랑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에 두 나라의 문화가 같이 있게 된 거고요. 그런 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과 같이.

이제 정부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학습교재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좀 서투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부에서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풀랴 - 맞아요. 엄마가 말을 잘 못하니까 8살까지 한국말 못하는 애도 있어요.

한국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떤 것을 제일 받고 싶어요?

카오페이- 교육비 같은 게 너무 비싸요. 사교육비 같은 것이요. 교육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도 학교에 들어가실 텐데요.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풀랴 - 자녀가 뭐예요?

선생님- 자녀란 것은, 아들하고 딸 있잖아요? 아들하고 딸을 합쳐서 그렇게 불러요.

카오페이- 우리아기 아직 어려서요.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풀랴 -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선생님 - 카오페이씨 아이가 몇 살이었죠?

카오페이 - 이제 6개월이요.

선생님 - 풀랴씨는요?
풀랴- 2살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긴 게 다르니까. 보통 한국 애들과 똑같이 대우해도 좋겠어요. 아니 똑같이 대우했으면 좋겠어요. 제 애기는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기한테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애는 영어를 모르는데 외국인 취급을 자꾸 해요. 나중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새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 버렸다. 다음 교실로 학생들을 데리러 왔던 여선생님이 드디어 더 인터뷰할 것 있으시냐고 재촉을 하셨다. 너무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싶어, 여기서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걱정과는 다르게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준 학생들이 고마웠고 친절히 도와준 한국어 선생님과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허락해 준 여선생님에게 사의를 표하고 기념사진을 한 장 찍는 것으로 아쉽지만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 필리핀 출신

두 번째 인터뷰 대상은 필리핀 출신 '밀리사' 씨로 고맙게도 단독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로 필리핀에서 태어났지만 가나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다고 소개를 받아 알고 있었다. 자녀는 여기에 다니는 '현아' 라는 이름의 7살 딸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의 딸이 있다고 한다. 한국어에 서투르다고 하셔서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하였고, 필자 나름대로 밀리사씨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적으며 정리하였다. 중간 중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옆에 계시던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 우리말로 질문하였다.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밀리사 - 소개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 원래 필리핀 살았는데, 가나에 살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아프리카에서 결혼했어요. 10년 동안 가나에서 살았고요. 한국에 온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필리핀 출신 밀리사 씨와 그녀의 딸 현아 양.

남편 분을 가나에서 만나셨다고요?
밀리사 - 네. 그때 남편이 선원(seaman)으로 가나에 있었어요. 남편은 17년 동안 있었고, 도중에 저를 소개받고 필리핀으로 불렀어요. 저는 거기서 10년 살았고요. 아프리카에서 결혼하고 한국에는 2005년에 왔어요.
그녀가 남편을 만난 경위는 해외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신부감을 소개

하는 회사를 통해 신부를 근무지로 초청하여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필리핀하고 한국은 문화가 많이 다르나요?
밀리사 - 문화차이가 커요. 문화를 배우는 게 많이 어렵고요. 한국말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여기가 좋아요.
필리핀의 가족 분들하고는 자주 연락을 하시나요?
밀리사 - 어머니가 필리핀에 있는데, 1달에 1번 전화로 연락해요.
주위에 필리핀에서 온 친구 분들이 많이 있나요?
밀리사 - 진해에 필리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못 만나요. 서울엔 필리핀 사람이 많지만 부산엔 별로 없어요.
여기 유치원은 마음에 드세요?
밀리사 -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좋고, 딸을 집에 있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공부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딸도 말이에요. 아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한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는 애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가 더 유치원 가기를 좋아해요. 애가 늦잠을 잘 때 '현아야 유치원 가야지' 하면 벌떡 일어나요.
여기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 말은, 필리핀 국기 그리기라든가, 필리핀 전통복을 입어보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요.
필자가 이 질문을 하자 밀리사씨는 반가운 말을 들었다는 얼굴을 하며 무릎을 쳤다.
밀리사 -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필자는 우리말로 옆에 계시던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여쭈어 보았다.
원장선생님- 아직 유치원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은 없어요. 1학기라서요. 2학기에 세계 국가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10월이나 11월쯤에 필리핀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시 밀리사씨를 보며) 한국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밀리사 - 예. 있어요. 구포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아, 한국어 교육이요? 여기서도 하는데.
밀리사 - 정말이요? 몰랐어요.
거기도 무료죠? 1주일에 몇 번 씩 해요?
밀리사 - 무료예요. 1주일에 2번씩이고요.
한국어 교육 말고 다른 서비스는 없어요?
밀리사 -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받아본 적은 없어요.
다문화가족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더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밀리사 - 비자요.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필리핀인들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

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밀리사씨는 한국 국적이 아니세요?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밀리사 - 예, 한국 국적이에요.
그럼 그건 밀리사 씨의 문제가 아니죠. (웃음)
밀리사 - 예, 제 문제는 아니죠. (웃음)
비자 말고요. 밀리사 씨가 필요한 도움은 없나요?
밀리사 - 없어요. 전 이걸로 됐어요. 남편도 있고. 남편이 잘 챙기니까요.
따님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걱정이 되시지는 않나요?
밀리사 - 별로 걱정 안 돼요. 애도 잘하고 남편도 잘 해주고 있고. 걱정되는 거 없어요.
남편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밀리사 - 남편은 지금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예요. 남포동에서 일하고요. 예전에 선원을 한 것도 기계 쪽으로 한 거예요.
이웃 분들과는 친하게 지내시나요?
밀리사 - 아파트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면 인사하고 그래요.
아파트에는 필리핀 사람이나 다문화가족이 없나요?
밀리사 - 없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에 외국인은 저 뿐인 거 같아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도움을 준 적은 있나요?
밀리사 - 아뇨.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전 아파트에 사는데다가 일을 하지 않아서 집에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저는 가톨릭인데 여기 와서 아직 성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런. 교황께서 싫어하시겠네요. (웃음)
밀리사 - 성당에 가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그런 느낌이 들까 봐요.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국어 교실 서비스 말고요.
밀리사 - 한국어 배우는 것은 그 서비스뿐이에요.
남편 분은 잘 해 주시나요?
밀리사 - 잘 해줘요. 매우. (웃음)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둘이 뭔가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여행을 가려고 하면 꼭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그래라' 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해요. 아니면 제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게 섭섭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시고.
그러게요.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영어나 타갈로그어를 배워도 될 텐데.
밀리사 - (웃음) 필리핀은 언어가 많아요. 제일 많이 쓰인 게 타갈로그어고 그 다음이 영어에요.
타갈로그어가 제일 많이 쓰여요? 전 지금까지 영어인지 알았는데.(웃음) 따님이 한국어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따님이 나중에 커서 어떤 한국인이 되기 원하세

요. 그러니까 제 말은, 따님의 정체성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싶나요, 필리핀인으로서 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밀리사 - 제 딸은 아직 어려요. 그건 딸이 큰 다음에. 딸이 결정할 선택에 달려있어요. 저는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따님이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면, 나중에 혼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밀리사 - 예. 하지만 그건 딸이 결정할 문제에요.
두 번째 질문하는 거라서 미안합니다. 정말 정부에게 뭔가 바라는 것은 없나요? 이런 것을 받고 싶다라는 거.
밀리사 -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정부에서 준다면 물론 받아야겠지만. (웃음)
마지막 질문을 할께요.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 뭔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태도라든가 말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밀리사 - 전 다문화가족이 는다고 해서 한국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한국문화가 있고 그들의 생활양식이 있어요. 난 그들이 저를 비롯한

"난 그들이 저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에게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요구하지도 않겠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족에게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요구하지도 않겠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답변은 다소 의외였다. 필자는 이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사회가 너무 차갑다, 시선을 좀 달리 해서 봐주면 좋겠다, 이런 류의 답변을 예상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주로 집안에서 가사를 하는 생활 때문에 한국 사회를 덜 접하여 상처를 접게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상처를 받지 않을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소 의외의 마지막 답변을 듣고 놀라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들어왔다. 밀리사 씨의 딸인 '현아' 였다. 아이가 예쁘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쩌면 이렇게 예쁜가 싶어 깜짝 놀랐다. 옆에 있던 원장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남자애가 많다고 하셨다. 충분히 그럴 만 했다.
"와, 따님이 예쁘네요. 공주님 같아요."

자식 예쁘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기는 우리나 필리핀이나 가나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쁜 표정으로 웃는 밀리사 씨의 모습. 이 인터뷰는 이 모녀의 웃는 얼굴을 촬영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 중국 출신

세 번째 인터뷰는 화정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형인 중국 출신 조동희 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조동희 씨는 능숙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어린이집에 맡긴 그의 아이는 5살이 된 '호섭' 이라는 이름의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조동희 씨. 중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조동희 - 예. 중국 요녕성에서요.

요녕성이요? 중국 동북쪽에 있는 성 말이죠?

조동희 - 네 그래요.

조선족이세요?

조동희 - 아니요. 전 한(漢)족이에요.

한국에는 언제쯤 오셨나요?

조동희 - 이제 한 5년 쯤 되었고요. 결혼으로 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왔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한국에 파견하여 일하게 되었어요.

중국 기업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를 한국으로 파견한 것이었다. 즉, 그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온 것이었다.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조동희 - 한국에서 같은 직정에 다녔어요. 같은 직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만났어요.

남편의 얘기를 할 때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남편 얘기를 꺼내면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였다.

조동희 - 그때는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어요.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결혼은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었고요.

다니시던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조동희 - 덕포동에 있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세전화학이라는 회사였고요. 신발회사였어요. 처음에 제가 올 때 여자 5명, 남자 1명을 보냈어요.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남편을 만나도 이 남자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도 말을 못하고. 그런데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나도 24살이라 나이가 있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온 호섭이 엄마, 조동희 씨.

실례지만 남편 분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조동희 - 남편은 저보다 12살이 많아요. 지금 나는 33살이고요. 아빠는 45살이고요.
아기를 좀 늦게 가지신 편이군요.
조동희 - 저는 낳고 싶은데 남편이 안 낳아도 된다고 했어요. 남편 나이도 많고 해서 그랬던 거 같아요.
한국말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조동희 - 한글이요? 한국말이요?
한국말이요.
조동희 - 한글은 잘 모르고요. 한국말은 학원에 다녀 본 적이 없어요. TV를 보면서 배우고 남편이 이야기해줘서 배웠어요. 한글은 아직 못 배웠어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년에 학원에 다닐까 해요. 애가 자꾸 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 애가 '엄마, 엄마, 바보야? 이것도 몰라?' 이래서요.

"바로 앞의 집하고는 잘 지내요. 같이 밥도 먹고 선물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바로 그 집에서 여기 어린이집을 소개해 줬어요."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가정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조동희 - 없어요. 받은 적은
가정이 어떤지 조사하러 온 적도 없나요?
조동희 - 조사는 작년에 왔었어요. 어떻게 왔고 어떻게 결혼했고 애는 몇이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갔어요. 하지만 뭔가 도움 준 것은 없어요.
중국의 가족 분과 어떻게 연락을 하시나요?
조동희 - 전화로 하고 있어요. 많이는 못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다음달, 9월 초에 '호섭' 이랑 친정에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은 있을 거예요.
남편 분은 안 가시고요?
조동희 - 남편은 안 가고요. 애기가 14개월일 때 갔었는데 한 달 밖에 없었고. 좀 가고 싶어요. 호섭이도 점점 크고 있고. 호섭이가 좀 더 크면 학원도 보내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요. 이번에 친정에 같이 가서 시간 좀 많이 보낼려고요.
친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조동희 - 엄마 혼자 있고 동생은 다 여기 있어요. 엄마는 제가 오라고 해도 여기 오

실 생각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서요. 그래도 내 생각엔 한 번 데리고 와서 딸이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만 할 거 같고요. 제가 이번에 가면 두 달 정도 있을 거고요.

한국에 오래 사셨으니 이젠 친정보다 시집이 더 편하시겠네요?

조동희 - 이젠 그래요.(웃음)

주위에 중국인 친구 분 많이 있나요?

조동희 - 중국인 친구는 서울에 있고, 잘 만나지 못해요.

부산에도 중국사람 많지 않나요? 화교학교도 있고.

조동희 - 중국사람 많지만요. 잘 만나지 못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사시는 곳은 아파트세요?

조동희 - 예. 아파트에요.

주위 이웃 분들과 자주 만나시나요?

조동희 - 아니요. 잘 만나지 못해요.

아파트에서 반상회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조동희 - 반상회요?

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회의하고 그러는 거요.

조동희 - 우리 아파트에는 그런 거 없어요. 반장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만 바로 앞의 집하고는 잘 지내요. 같이 밥도 먹고 선물도 하고. 찾아 가기도 하고. 바로 그 집에서 여기 어린이집을 소개해 줬어요. 어린이집 소식에 대해서 앞집에서 잘 말해주기도 하고요.

호섭이는 중국말을 더 잘 하나요, 아니면 한국말을 더 잘 하나요?

조동희 - 호섭이는 중국말 잘 못해요. 중국어로 얘기하면 '싫어, 자꾸 그러지마' 라고 해요. 집에오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얘기도 잘 안 해요.

그건 남자애라서 그렇겠지요. 남자애들은 집에서 밖의 일들을 잘 얘기 안 하니까요.

조동희 - 3살에 어린이집에 애를 보냈어요. 좀 일찍이죠. 말을 집에서 못 가르치니까요. 어린이집에 가면 말을 잘 배울 수도 있으니까.

한국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나 호섭이를 위해서 뭔가 해 주겠다면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조동희 -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한국어 더 잘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이라면 여기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조동희 - 네? 진짜요?

예. 공짜로요. 1주일에 한 번요.

조동희 - 지금은 친정가야 하니까 안 되고. 갔다 와서 등록해야겠네요.

예. 그러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일하시는 건 있으시나요?

조동희 - 아니오. 지금은 집에만 있어요. 얼마 전에 서면 근처에 있는 중국어 학원

에서 일해 달라고 했었는데 친정 가는 일 때문에 거절했어요. 나중에 갔다 와서 하겠다니 갔다와서 꼭 연락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호섭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 키우기도 힘들고.

호섭이가 좀 더 크고 나서 일 하시면 되겠네요.

조동희 - 네. 저도 직장이 있으면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그냥 아줌마 같고. 돈도, 신랑만 버는 건 좀 적어요.

호섭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조동희 - 신발 회사 다녀요. 여전히 신발 일을 해요. 샘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 지원 말고는 뭔가 한국 정부에 바라시는 것 없으세요?

조동희 - 컴퓨터 공부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컴퓨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위의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께 질문) 선생님,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복지관에 컴퓨터실 교육 신청하면 혜택이 없나요?

선생님 - 한국어 교실은 나라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컴실은 그런 혜택이 아직 없어요.

그렇군요.(다시 조동희 씨를 보며) 그렇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 교실은 무료니까요. 꼭 다녀보세요.

조동희 -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그럼요. 금요일에 초급을 위한 반이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에요, 모두.

조동희 - 예. 천정 갔다 와서, 여기 신청하면 되죠?

네. 갔다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요.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니 조금 민감한 문제들로 나아가 보기로 했다.

혹시 한국인에게서 불쾌한 경험 없으셨어요? 말투가 무례했다든가.

조동희 - 저는 거의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그다지 없어요. 아니, 조금 있어요.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말이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하면, 내가 생긴 건 외국인 안 같으니까, 내 앞에서 '외국인들이 왜 자기 나라에서 살지 여기서 사노' 이렇게 자기끼리 얘기하는 거 듣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그런 점들도 많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호섭이가 2년 후에 학교에 갈 텐데,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드세요?

조동희 - 걱정되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눈치볼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중국인이라고 놀리면 어떻해, 우리 호섭이가 엄마 때문에 '엄마 싫어' 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호섭이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엄마 좋아요' 라고 해서 기뻤어요. 중국 사람은 외모가 비슷한데 외모가 다른 애들은 얼굴이 달라서 그런 게 더 하

겠죠.
지금 국적이 중국 국적이세요, 한국 국적이세요?
조동희 - 한국 국적이에요. 원래 이름이 조동래, '저우동라이' 인데 여자이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조동희로 바꾸었어요. 주민등록증 보여드릴까요? 만들었는데. (지갑을 꺼내서 살펴본 후) 어, 없네. 미안해요. 이번에 중국가는 데 여권이랑 중국 비자 만들어달라고 여행사에 맡겼던 걸 잊고 있었어요.(웃음)
괜찮아요.(웃음) 참, 아파트에 다른 외국인은 없나요?
조동희 - 40대의 남자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누군지 본 적이 없어요.
심심하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조동희 - 심심하면 메신저 있잖아요. 카메라 가지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걸로 중국 사람과 얘기해요.
MSN 메신저 화상채팅을 얘기하는 거 같았다. 인터넷을 잘 모를 확률이 높은 친정어머니와의 대화에는 쓰지 못하겠지만, 그에게 있어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기에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았다. MSN 메신저 화상채팅은 무료 서비스니까 더욱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취미활동은 어떤 것을 하세요? 매일 화상채팅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심심해 죽겠다면?
조동희 - 취미활동은 별로 없어요. 심심해 죽을 거 같으면 참아야죠. 아, 지금은 헬스장 다니는 거 하고 있어요.
좋은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조동희 - 예. 지금은 헬스장 다니는 것만 해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헬스장 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한국인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이렇게 변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거나, 이런 바람이 있으신가요?
조동희 -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별로 불만은 없어요. 신랑을 잘 만났고.(웃음) 신랑 잘못 만나서 싸우고 때리면 하루도 못 살건데. 신랑을 잘 만나서 참 좋아요. 돈이 많이 없어도 좋아요. 물론 돈 많으면 좋겠지만요.(웃음)
(웃음) 우리 생각하고 똑 같네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르 포

세계 국제결혼여성대회

김 희 선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pisces307@naver.com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주최
제1회 세계 국제결혼여성대회

– 다문화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자 마련된 행사

전야제가 진행된 지난 7월 17일 롯데호텔에는 국제결혼 여성 200여명이 모여 이번 행사를 축하했다.

롯데호텔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 동안 전세계 국제결혼 여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족과 더불어 하나가 된 세계 국제결혼 여성'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외 각지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을 알리는데 앞장 선 국제결혼여성들이 혼혈인과 국제결혼 한 여성들을 차별하는 모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를 만들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지부를 둔 이 단체는 전 세계 30만 명이 넘는 국제결혼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아 암스트롱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월 16일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은 그 나라 사정에 정통해 한국을 알리고 현지와

리아 암스트롱 회장

교류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여성들의 남편들은 한국을 도와줄 국제화 시대의 큰 자산인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우리 나라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한국의 여성들은 세계 각지의 요직에 있는 외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두고 있다. 자기부상열차를 만드는 (주)로템의 고문인 피터 요르겐 게대 박사는 독일에 유학온 이효정씨의 남편이다. 이 씨가 2000년 독일 교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클럽코리아나라는 단체를 만들 때와 2001년부터 2년간 뮌헨 한인회장을 맡았을 때 남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클럽코리아나는 2000년 뮌헨에서 '한국의 밤'을 열어 한국 문화를 독일에 알리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 역사학과 교수이며 국무부 고문인 찰스 암스트롱 씨도 한국의 아들이다. 이번 대회의 회장인 리아 암스트롱(본명 김예자)씨가 그의 어머니이다. 1964년 미국인과 결혼하며 미국 땅에 정착한 리아 암스트롱씨는 1994년 가정 방문을 하며 노인을 돌보는 복지서비스회사 암스트롱인홈케어를 창설한 주인공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기업화한 아이디어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다. 정경옥 한호상공인협회 회장은 호주 하원의장을 지낸 7선 의원 출신의 피터 루이스씨를 남편으로 두어 그의 지원으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이들의 금의환향은 세계를 주무르는 한국 여성들의 힘을 보여줬다. 국제결혼에 대해 아직도 안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사람들의 인식도 무색케 만들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이들의 그간 고생과 업적들을 알아갈수록 부드러운 한복이 더없이 강인해 보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국제결혼여성들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도 더하면 더했지 이들이 받는 차별은 덜하지 않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국제결혼 여성들이 모여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를 설립했다. 리아 암스트롱 씨가 회장으로 미국, 필리핀, 호주, 대만,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 지부를 마련해 이번에 첫 대회를 한국에서 치른 것이다. 심포지엄 기간에 행사 참석자들은 여성 국회의원을 방문해 혼혈인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내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로 했다. 선진국에 나가 살면서 비슷한 설움을 겪은 한국 태생의 국제

찰스 암스트롱 씨

결혼 여성들이 외국인 며느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로 모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전 세계의 여성들이 서로 화합하고 도울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야제에서 진지하게 애국가를 부르는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

심포지엄 첫날인 7월 17일에는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환영만찬이 시작됐다. 실비아 패튼 제1차 세계 국제결혼 여성 총 연합회 준비위원장이 인사를 하며 이날의 시작을 알렸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대회장인 리아 암스트롱은 환영사를 맡아 "이번 대회는 국제결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강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회편견을 시정하고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스트롱 회장은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자. 남편의 나라는 선택한 나라지만 한국은 친정과 같은 나라이다. 많은 국제결혼여성을 응원한다. 국제결혼여성들은 민간외교관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제결혼여성연합의 지위향상과 함께 조국에 대한 애정이 변치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과 세계국제결혼여성은 오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번 대회가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지 알 수 있었다.

김여진 YTN 앵커와 조승주 세계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재무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William Stanton 주한미국 부대사, 김수룡 도이치뱅크그룹 회장,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계안 동작구을 국회의원, 김순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등 유명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의 이번 대회 자부심 또한 점점 더 강해졌다.

김여진 YTN 앵커와 조승주 세계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재무부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모국에 있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여성의 12%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미애 시인이 축시를 낭송했고 혼혈인으로서 당당한 가수가 된 국제가족 한국총연합회 제임스리 씨가 축가를 불르며 자신의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해 자리에 모인 여러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민족문화선양회 합창단의 성대한 축가로 이번 대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번 전야제를 주관한 유재건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장이 축사 및 건배제의를 했다. 유재건 의원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국제결혼여성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다. 재

세계 각 지부별 여성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그곳의 국제결혼 여성들의 현황을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이들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욱이 유 의원은 자신이 국제결혼여성들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어려운 시절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미국 국제결혼여성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엄마 같고 누이 같던 이분들이 있었기에 당시 나를 비롯한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해 국제결혼 여성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고 여성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간 이어진 이번 국제결혼여성대회는 다음 날 각 지부 별 소식을 접하고 리아 암스트롱의 아들 Charles K. Armstong의 강연<강연 전문 수록>이 이어졌다. 국회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토론을 벌이고 한국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모색하기에 바빴던 국제결혼 여성들은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며 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국회를 방문한 국제결혼 여성들.

국제결혼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더욱 큰 문제는 이 차별마저 차별받는 다는 것이다. 백인이고 잘사는 사람과 혼인한 한국여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 특히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들에게는 이 차별이 더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습관은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잘나가는 여성들은 우리 국민이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친정 떠나면 우리 사람 아니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용만 하려는 심보를 고치지 않는 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가녀린 손들은 금방 질려버리고 말 것이다. 서로를 이용만 하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의 골만 깊어져 간다. 우리의 문화가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다. 한국을 조국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진정한 세계화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그동안 곱지 않게 보아왔던 해외로 시집간 여성들, 혼혈아들, 국내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 모두가 힘을 합해 스스로의 권익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있는 한국인들도 그것을 벗어던질 날이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모국 : 세계화 시대에서의 한국인의 정체성

Our Mother Counrty : Korean identities in a Globalized World

Charles K. Armstrong
Korea Foundation Professor of Korean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미국 콜럼비아대 역사학과 석좌교수)

Charles K. Armstrong

한국과 한국인 정의

한반도는 수세기동안 거대한 격동과 창조의 과정을 겪어왔다. 역사의 대부분동안 한국은 계속하여 여러 문화와 민족이 만나고 융합하는 장소였다. 수만년전 처음으로 한반도에 정착한 북아시아 이주민부터, 1세기에 영토를 아시아 대륙 깊숙이까지 확장했던 고구려 전사들, 9세기에 동아시아 해를 지배했던 신라인들, 고려(918 ~ 1392) 시대와 조선(1392 ~ 1910)시대의 수도사, 학자, 여행자들 까지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만남이 계속돼 왔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세계적인 성공과 명성은 오랜 기간의 고립, 식민지배, 전쟁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을 겪은 후 이전의 이러한 역동성을 회복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역사의 이러한 긴 흐름속에서 보면 17세기부터 19세기 즉 외부세계의 흐름과 단절돼 있었던 조선시대 후기는 역사의 장기적인 흐름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정의하기 위해 처음 "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불안한 국내사정과 외세 침략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민족이란 용어는 서양의 "인종(race)" 또는 "국가(nation)"의 번역어로서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19세기 후반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식민지화와 경쟁의 시대였다. 진화론자의 생존을 위한 분투처럼 강한 나라는 지배하고 약한 나라는 식민지화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인을 자급자족적이고 배타적인 민족 그룹으로, 한국을 한민족국가로 정의하는 것은 당시 한국의 고립과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불편했던 만남의 이해할 만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한민족이라는 정의가 과거에는 외세의 지배를 극복하고 나라를 근대화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던 반면 점점 교류가 증가하고 세계화되는 오늘날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세계화의 선구자들이다. 왜냐하면 첫째, 이러한 국제결혼한 한국인들은 한국 이민 역사, 특히 미국과 다른 서양 국가들로의 이민역사에서 무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한국내에서의 국제결혼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한국에서 있었던 결혼 중 14% 가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점점 다문화 심지어 다민족 사회가 될 것이다.

세계화와 한국인의 집단 국외 이주

자발적이었든 강제적이었든 간에 대규모의 이동은 근대 상황의 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의 modernity와의 충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만의 거대한 공동체의 등장은 거의 정확히 대략 1860년부터 1945년까지의 근대 세계화 시대와 동일연장에 있다. 정치적 혼란과 economic transformation, 제국주의의 침략, 식민지화와 전쟁의 시기로, 당시 19세기 후반의 대격동을 겪기 전의 조선은 한반도 안으로든 밖으로든 그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19세기 후반전까지 한반도밖에는 한국인만의 어떠한 주목할 만한 공동체도 없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한국인구의 약 11% 가 한반도 밖에 거주하고 있었고 몇십만명의 한국인 공동체가 일본, 중국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다.

미국의 네 번째 한국인 공동체는 앞의 세 나라의 공동체에 비해 훨씬 작았는데 1960년대 후반 이후 밀레니엄이 지날 때까지 급속히 증가해 재미교포는 해외 교포 중 가장 큰 그룹이 되었다. 또한 이보다 적은 숫자지만 한국인 이민자와 그 후손이 캐나다, 서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네 나라의 해외 한국인 공동체들은 (전 소비에트 연방을 포함해서) 한국인 집단 이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4개의 해외 한국인 공동체는 네 개의 다른 형태의 나라-연방, 이른바 단일 민족의 일본, 공식적으로 다국적나라인 중국, 표면상 다문화국가인 미국,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인 전 소비에트 연방에서 민족의 적응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의 독특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근대 한국인의 이민은 거의 한세기 반이 넘게 계속되어 왔다. 해외 동포 중 가장 오래된 공동체인 중국, 러시아에 있는 한국인 공동체는 이제 5 세대에 접어들고 있다. 가장 젊은 해외 한국인 공동체인 재미교포사회는 가장 큰 해외 교포 사회가 됐는데 그 중 3분의 2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편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기억하는 대부분의 삶을(conscious lives) 미국에서 산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해외 동포 공동체에는 거주나라와 조상의 나라에 대한 애정이 서로 보완하면서 또는 모순되면서 공존하고 있다. 경제적 절박성, 교육기회, 정치적인 필요성 또는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로 이민을 했든 간에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차별과 의심, 그리고 거주 사회로의 동화 압력과 통합에 있어서의 장애등을 직면하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의 강압적인 국외 추방, 중국 문화 혁명 중의 박해, 미국의 인종 차별, 일본의 소수 민족 비주류화 (ethnic marginalization) 등이 한국인의 국외 거주로 인해 받게 되는 상처들 중 일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외 한국인들은 조상들의 언어와 음식 그리고 관습을 세대에 걸쳐, 대륙과 대양에 걸쳐 가까스로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의 한국인과 국제결혼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모습의 한국 공동체에서조차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교포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해외 교포 공동체의 다양성이라는 좋은 예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미국으로 이민와 자식들을 하버드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슈퍼마켓, 술집, 세탁소를 운영하며 끊임없이 일했던 한국인 부모들의 경험은 확실히 이민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덜 알려진 다른 형태의 한국인 이민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미국인 부모에 의해 입양되온 한국인 아이들인데 지금 그 숫자가 대략 100,000 명에 달한다. 또 다른 덜 알려진 그룹은 소위 "미군 신부들 (G.I. Brides)", 즉 한국전쟁후 미군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이다. 평균적으로 한국인 여성을 포함해 4명의 가족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됨으로써 그들은 미국에서 전후 한국인 초기 이민자 사회의 핵심을 형성했다. 세 번째 그룹은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인데, NFL 하인즈 워드 선수처럼 유명해진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대부분 해외 교포로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결혼 풍속이 분명하게 보여주듯, 한국인-미국인 혼혈의 숫자는 오직 장래에서나 증가할 것이다. 한국이민자의 첫 번째 세대중 90% 이상의 남자가 한국여성과 결혼한 반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은 70% 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세대에서는 한국인-미국인간의 결혼 비율이 거의 남자는 40%, 여자는 60%까지 올랐다.

한국 이민자 첫 번째 세대
남편 : 한국인 93.1 %
아내 : 한국인 69.4 %
미국에서 길러진 Korean American
남편 : 한국인 63.2 %
아내 : 40 %

(출처 : C.N. Le "International Dating and Marriage," Asian-Nation : The Landscape of Asian America, http://www.asian-nation.org/interracial.shtml

점점 더 많은 미국의 한국인 후손들은 양쪽 부모 모두가 한국인인 경우보다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일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다른 곳의 한국 해외 교포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으며, 미국내의 다른 아시아 공동체안에서 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까지 아시안 아메리칸 들 중 20%가 다민족이 될 것이고 그 수치는 2050년까지 3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개념도 변화하는 인구통계학상의 현실과 함께 필연적인 결과로서 바뀔 것이다.

한국 : 21세기를 위한 다문화 사회

한편 한국사회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근대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내에서 이뤄진 결혼 중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이 주목할 만큼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전망을 바꾸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가능케 한 몇가지 요인으로써 출산율 감소, 여성의 도시이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남한은 이제 1.08이라는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체율(replacement rate)의 반값보다 적은 수치이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바뀌고 있다.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시골지역에 남아있는 미혼 남성의 숫자가 미혼 여성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지면서 그 결과 2004년까지 시골 미혼 남성의 27.4%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6년에 있었던 결혼 중 14%가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이었고 시골지역에서는 특히 거의 3분의 1이 국제결혼을 했다. 반 이상의 부부가 국제결혼으로 이뤄진 지역도 있다. 그들밑에서 태어난 국적 혼성의 어떤 경우는 인종 혼성의 새로운 세대들이 한국 시골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20세 이하 한국인 중 다섯명중 한 사람은 이러한 혼혈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해 교육시킬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는 현재 백만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대부분은 중국과 남아시아 출신이지만 그 중에는 중부 유럽과 서 아프리카만큼 멀리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노동자들도 많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오랫동안 단일민족사회라고 여겨졌던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인종 다문화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그 자신을 19세기의 단일민족 또는 단일인종 사회로 정의할 수 없다. 21세기의 개방성, 유연성 그리고 관용에 대한 연습만이 한국과 한국인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성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들, 특히 국제 결혼한 한국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선구자였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 특히 급속한 변화는 고통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그들 스스로를 가장

쾌활한 민족 중의 하나임을 보여줬다. 한국인들은 20세기의 지독한 역경을 딛고 비상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잘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21세기를 위한 열린 다문화 사회를 건설할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조상을 둔, 한반도를 "우리의 모국"이라고 부르는 세계의 모든 후손들뿐만 아니라 세계와도 아주 긴밀히 그리고 생산적으로 연결해줄 것이다.

〈참고자료〉

1. "14% Marriages International in 2005", Korea Times March 30, 2006.
2. C.N.Le, "Interracial Dating and Marriage", Asian-Nation : The Landscape of Asian America. http://www.asian-nation.org/interacial.shtml
3. Jeffrey Robertson, "Korean Zenophobia Faces New Challenges," Asian Times Online June 13, 2006. http://www.atimes.com/atimes/Korea/HF13Dg01.html

약력

Charles K. Armstrong 교수는 뉴욕 콜럼비아 대학의 역사학 석좌교수이며 한국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다. 대구에서 태어나, 하와이와 워싱턴주에서 자랐다. 예일대에서 중국 연구(Chinese Studies)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런던스쿨 경제학부에서 국제관계로 석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한국과 동아시아역사, 한미관계에 대해 저명한 전문가인 암스트롱 교수의 저서로는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Korean Society :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Korea at the Center : Dynamics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등이 있다. 그는 현재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외교 문제에 관한 역사에 대한 저술을 마쳤다. 암스트롱 교수는 미국내에서 그리고 국제 언론에서 한국, 동아시아와 아시아-미국 문제에 관한 논평가이기도 하다.

특별논단

崔溥漂海登陆及行经台州地名考析 – 王金龙

번역 / 최철호 (교양사회 대표)

조선 성종 때 홍문관 부교리(副校理)였던 최부(崔溥, 1454-1504)는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도에 부임하여, 왕명을 수행하는 도중 1488년 윤 정월, 부친상의 비보를 듣고, 분상(奔喪)차 수행원 42명과 함께 도해(渡海)중 흑산도 근해에서 폭풍을 만나 서해로 표류하기 시작, 서해에서 근 14일 주야간 난파된 선박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현 중국 절강성(浙江省) 임해현(臨海縣)의 도저진(桃渚鎭) 부근, 한 해안가에 표착했다. 당시 명나라 때는 절강성 해안지역에 왜구(倭寇)가 빈번히 출몰하여 겁탈(劫奪)을 일삼았기 때문에 최부 일행이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국경을 침범한 왜구혐의로 체포되었다. 천신만고로 왜구의 혐의를 벗어 난 최부 일행은 절강에서부터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를 따라 중국 대륙의 남, 북을 종단, 5개월 여 만에 43명 전원 무사하게 환국했다. 최부는 당시 조선의 성종에게 그들의 표류전말을 일기체 형식으로 찬진(撰進)하였으니, 이가 바로 표해록(漂海錄)이다. 당시 중국 강남지역은 명 조정의 해방(海防), 해금(解禁)정책으로 외국인의 입경(入境)을 제한했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층은 강남지역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던 차, 표해록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당시 일본의 지식층도 예외는 아니어서 1700년대에 '당토행정기(唐土行程記)' 라는 개명으로 표해록을 출간했고, 1960년대에는 한 미국 대학교수가 박사논문으로 이를 번역, 출간했다. 이후 1970년대에는 한학자 최기홍 선생이 이를 국문으로 번역, 배포하여 일반 대중도 손쉽게 표해록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중국에서, 최근에는 국내의 대학과 출판사에서 앞 다투며 표해록을 출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계학자들의 연구도 점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현재 중국과 한국의 학계에서는 세계의 3대 중국 기행문으로,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일본의 엔닌(圓仁)스님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최부의 표해록을 들고 있으며, 중국의 학계는 표해록을 문헌가치상 수위(首位)로 꼽고 있다.

이 논문의 필자인 왕금룡(王金龍)선생은 절강성 임해출신의 작가 겸 표해록 연구가로 표해록 기록의 하이라이트인 태주 지역을 발섭(跋涉), 최부의 기록과, 중국 고대의 문헌, 그의 답사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며, 최부 기록의 정밀성과 문헌사적 가치, 그가 남긴 정신사적 유산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의 열정적 공헌으로 2006년에는 최부가 며칠 동안 당시 중국의 군민(軍民)에 의해서 신문(訊問)을 받았던 도저고성(桃渚古城)에 최부 표해록 기념비가 건립된 바도 있다. 이번에 왕금룡 선생은 당시 최부일행의 중국 표착지점에 대한 보다 정밀한 현지 확인 작업을 통해 최부일행의 표착당시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이 논문을 통해 밝혀주고 있다. (편집자 주)

崔溥漂海登陆及行经台州地名考析

王金龙 (中國浙江省民间文艺家)
(anlun99@sina.com)

1488 年，即明朝弘治元年、朝鲜成宗十九年，朝鲜弘文馆副校理、济州三邑推刷敬差官崔溥，因父亲谢世，率陪吏、护送军及奴子等 42 人，渡海回全罗道罗州（现韩国全罗南道罗州）故里奔丧。他们于闰正月初三日在济州别刀浦起航，先是“东风微顺”，当夜辄“为北风所逆”，“莫之所适”，遂在海洋上漂流[①]。直到是月十六日，他们幸而到泊中国浙江台州府临海县的牛头外洋。十七日舍舟登陆，十九日到达桃渚所城；二十三日从桃渚城启程返国，二十八日离开宁海县（当时属台州府）的西店驿，前往宁波府。此后，经绍兴府抵杭州府，沿着京杭大运河达于北京；然后，出山海关，过辽东，于六月四日渡过鸭绿江回到朝鲜。回国后，崔溥奉王命以汉文写成《漂海录》一书进呈；该书于朝鲜宣祖六年、明万历元年（1573）刊行传世。他们此行在中国 135 天，行程 4000 多公里，其中在台州 12 天，行程 280 多公里[②]。《漂海录》详细地记述了当年台州各方面的情况，具有很高的价值。现在，根据笔者多次实地踏查，仅就他们当年漂海登陆及行经台州的主要地方，具体考析如下：

一、关于牛头外洋

《漂海录》载：“十六日，到泊于牛头外洋。”当时，该处“有中船 6 只列泊”，因语言不通，互相用文字写示。崔溥令陪吏程保问：“不识此海何国地界？”其人答曰：“此海乃牛头外洋，今隶大唐国（引者注：时至明朝中期，唐亡已逾 580 多年，中历宋、元两个朝代，国人犹不无自豪地称‘大唐国’，足见在中国的历史上大唐帝国影响之深远）台州府临海县界也。”就是说，崔溥等在海上“从风所驱”、漂流了 14 天之后，到泊于中国浙江台州府临海县的“牛头外洋”。

临海县的牛头外洋，到底在哪里？

当时，临海县临海的地域犬牙般伸屈，多岬湾，海岸线曲折绵长，北起与宁

海县交界的武曲岭东（健跳港南，今属三门县），南至与黄岩县交界的太和山（椒江南，今属椒江区）。在这条海岸线东向的海域中，因崔溥他们不曾到达桃渚城以南的地方，因此，桃渚港南至椒江东向的海域，显然不是“牛头外洋”。再，桃渚港北至浦坝港（旧称坡霸港）东向的海域，古来就称为“东洋”，与现在杜桥一带的“西洋”相对而名，显然也非“牛头外洋”。这样，当时临海县的海域中值得我们去探究的，就只有浦坝港北至健跳港、亦即牛头山至武曲岭东向这片海域了。事实上，这片海域正是历史上的牛头外洋。依据如次：

1、据《漂海录》记载，崔溥当年的泊船处就是牛头外洋；当然，一个停泊点不能说是海洋，但它却在这个海洋之中。

考其泊船处，确在浦坝港北岸牛头山东麓（下文将予考述）。显然，洋以山名：牛头外洋，就是牛头山外面的海洋。不仅海以山名，附近通海之“门”也以山名之：浦坝港的出海口，中有白岱山（今名扩塘山），山之南称白岱门（今名白带门），以白岱山为名；山之北是牛头门，以牛头山为名。

再考浙江沙田局于民国 19 年（1930）复制的《三门湾形势图》，民国 20 年（1931）《台州府志·台州府 20 里方图》，民国 32 年（1943）《浙江省三门县全图》，还有《三门县水道图》等地图资料，笔者欣喜地发现了历史的痕迹：浦坝港北至健跳港、亦即牛头山至武曲岭东向的海域，果然都清楚地标示着：牛头洋。明代，沿海防务有内港、外洋之分，牛头洋亦称牛头外洋。降至清代，这里还设置“左营外洋牛头门汛”[③]。显然，民国时所称的牛头洋，就是明代崔溥到泊的牛头外洋。

在上述历史地图资料中，有的还标明：牛头洋北面是猫头洋（以猫头山为名），猫头洋北面是蛇蟠洋（以蛇蟠山为名）。必须指出，过去这些“洋”，均非远海之汪洋，而只是连陆之近海。因为古代近海资源丰富，且少有远航之巨轮，渔民们大抵只在附近海域作业，为区划空间，就以海边山名为海洋之名。比如昔之蛇蟠洋，只在今之三门湾五峙门以内，现已改称蛇蟠水道；昔之猫头洋，只在近岛青门山、田湾山以内，现已改称猫头水道；昔之牛头洋，同样地只在五子岛、三门岛以内，现已不复见其名称。再看新版《浙江图》，间于大目洋（象山县东）与大陈洋（椒江区大陈镇东）、亦即三门湾至台州湾东向的洋面，则统称为猫头洋。这是历史的变迁，海洋东渐易名。

2、据《漂海录》记载，崔溥等离开台州后，经过绍兴府、杭州府的复查审核，决定将他们转送北京。杭州府报前路各府、县、驿的公文上写道：“……备桃渚千户所申，该千、百户柳春等带领旗军前去临海县二十都，与同当地火甲获住人船，押送到所审问”[④]。这段记载告诉我们：崔溥在牛头外洋登陆的地方，当年行政区划属于临海县二十都；反之，二十都濒临的则是牛头外洋。

那么，二十都是怎样一个区域呢？

1989 年版《临海县志》中《元明城坊与都图》及《清代乡庄》记载：“元初改（宋代的）乡、里为都、图，全县计 68 都 134 图，沿至清初未变。”“清雍正四年（1726），（将都、图）改称乡、庄，（全县）复 15 乡，初 149 庄，后加海涂扩展 5 庄，共 154 庄。”其中，宋代的承恩乡，元明时改析为十七、十八、十九、二十、二十一、二十三、二十四等 7 都 19 个图，各都（包括二十都）直隶于临海县。清代，废都、图，复承恩乡，辖 20 庄 228 村，原二十都改析为赤墈、大域、渔西、沿江等 4 庄 41 村，仍隶于承恩乡；崔溥泊船登陆的牛头山麓属于沿江庄。简而言之，明代崔溥入境时的“二十都”，就是清代赤墈、大域、渔西、沿江等 4 个庄的区域，即现在三门县沿赤乡再加上浬浦镇渔西片这么一个区域。该区域的海岸线，南起牛头山，北至武曲岭东，介于两港——浦坝港与健跳港——之间。对照上述地图资料，不难发现：该区域正是牛头洋西岸的陆地；反之，该地域东向的海洋，便是牛头洋、亦即牛头外洋。

3、早在宋朝，牛头洋就被载入中国台州现存最早的“府志”——《赤城志》。该志由陈耆卿（1180~1236）纂成于嘉定十六年（1223）。在其《卷第一 • 宁海县境》中写道：“东南 250 里牛头洋入临海县”。可见“牛头洋”在宋时宁海县的东南、临海县的东北。查该志《宁海县境图》，发现在“浮门”（今三门县健跳港南岸，下文将述及）的东南确实标示着：牛头洋。

《赤城志 • 卷第一 • 临海县境》记载：“东 180 里牛头山入海”。显然，这个“海”便是牛头洋，并且以山名海。再查该志卷首的《州境图》，发现该处海岸上清楚地标示着：牛头。《赤城志卷第十九 • 临海山》记载：临海山，“本牛头山，以有石似之，故名。”可见牛头山乃以石名山。

简而言之：临海县临海之山有石如牛头，故名牛头山；牛头山外面的海洋是牛头洋（亦称牛头外洋），这在宋代就已载入《赤城志》。

牛头外洋，海湾深入，只要风起强东北，历来常有漂船泊岸或沉没。1992 年版《三门县志 • 大事记》载：“明嘉靖初（1522~1531），日本船只漂海至健跳，传送至官，遣其还国。”现沿赤乡小渔西村外的卷屿旁，古代曾沉没过一艘大船，该处至今沿称为“倒船坤”。在该乡沿江村外的牛密塘，10 多年前有个村民曾捡到海难遗物：一对龙凤金镯。近年来，在健跳港、浦坝港避台风的过往船只不胜枚举。2000 年一次台风，宁波海运集团公司有一艘 4000 吨级的大船沉在牛密塘北边、笔架山外的海中，乘员被当地群众用小船驳渡到牛头门遇救……1488 年，崔溥也是从宁波“下山”漂流到牛头外洋。看来，在崔溥平生的际遇中，海上遇险，漂流到此，纯属偶然；但在特定的时间、气象等条件下，漂船从东北而来，到泊或沉没于牛头外洋，则具有一定的必然性。这是否与洋流有关呢？

二、崔溥漂海登陆处

崔溥当年的泊船处、亦即登陆点，《漂海录》记有各种标志。笔者根据这些标志，觅迹牛头洋连陆的海湾，北起草头、木勺、火门孔，再到小渔西、牛密塘、三娘湾，南至寨后门、金木沙、牛头宫，以至乘船出海模仿着登陆踏查，认为其泊船处当在现三门县沿赤乡牛头山东麓的金木沙海湾，因为只有这里才符合崔溥记下的各种标志。具体阐述如下：

1、当年属于临海县二十都。上文已及，不复赘述。

2、在海上“西望连峰叠嶂，撑天包海，……则见山上多有烽燧台列峙”[5]。

牛头洋西岸，群山颠连纵贯，重峦耸天，是一天然屏障。自北而南，有海拔高 124 米的牛山，高 259 米的炮台山，高 196 米的马鞍山，高 294 米的七姐妹岗，高 158 米的上腾岗，高 209 米的太平山，高 258 米的笔架山，高 197 米的牛角门山，还有高 119 米的牛头山。因其地处抗倭的海防前线，山巅“多有烽燧台列峙”。在近牛头宫的海上，现在还可望见天灯盏、田后垟岗、牛头山等处的烽火台遗迹。

3、十六日，“驾东风而至……午后，风浪尤紧，雨下濛昧，舟从风所驱”[6]。

查《漂海录》：十二日，崔溥等漂至宁波府下山，十三日“西北风大起”，十四日留泊在一岛“唯可避北风处”，十五日“东风复起”，十六日“驾东风”到泊于台州府临海县的牛头外洋。就是说，他们的乘船在宁波因西北风、北风而南漂，再因风向的转变——“东风复起”、其实也只有“驾东风”，这才使漂船折而向西，进入牛头外洋而泊于金木沙海湾；不然，他们将继续南漂。如果其时正值涨潮，他们可能会漂入牛头门，但浙江的潮候，农历十六日午后退潮势正猛（潮涨八分或潮退八分时，其势正猛），漂船难以逆浪进“门”，是东风和退潮中的“回流”结伴，才使漂船避开“门头”急流而被推入北侧的金木沙海湾。

4、“瞥然间，忽漂至两岛间，傍岸而过，则望见有中船 6 只列泊”[7]。

考金木沙海湾，东有大鸡山、小鸡山屏蔽，历来就是泊船处，故在崔溥漂船到来之前，就有“中船 6 只列泊”。当地村民介绍，若遇风暴，附近船只要么避入牛头门，要么就泊于“门”外牛头宫、金木沙一带海湾。这两岛，就是大鸡山和小鸡山。

5、北有山，“此山有泉”，“登山通望人烟，则果是连陆处”[8]。

北面的山，连着牛头山。因为山土好，林木茂盛，如今仍有山泉。登上山顶，可以望见佳岙、赤墈等村庄。

6、“初系舟处，辖狮子寨之地。”（下文将予考述）

7、十七日，“舍舟登陆……冒雨穿林逃遁奔匿。过两岭，岭皆枕海，有石如

甬道”[9]。

明代，牛头山三面环海，唯北面连山。从金木沙登陆，必走北路，这就要翻过金木沙岭和海岙岗头岭。这两岭纵向排立，其东“皆枕海”。在金木沙岭北坡，真地“有石如甬道”，数十米长。

8、过两岭，“行六七里，得一里社”[10]。

过两岭，便来到田后垟。从这里沿古道到滨海第一个村庄——沿江村（下文将予考述），《漂海录》记载是“六七里”，民国《临海县志·陆路道里》记载是五里九分，可谓基本符合。

综上所述，崔溥当年的泊船处，亦即登陆点，就在今三门县沿赤乡金木沙海湾。

三、关于狮子寨

《漂海录》载：“初系舟处，辖狮子寨之地”[11]。考牛头洋西岸及附近区域，有 3 处曾立过寨：①牛头山的西北麓，山岩横裂如巨口，俗称狮子口，那里历来沿称“水寨”，还有“寨后门”等遗址（以下简称水寨）。②渔西的炮台山，俗称狮子山，据明·万历五年（1577）《浬浦渔西程氏宗谱·居里山川记》载：武曲岭“正东山上有五笋耸立，曰五指峰，戴氏庐其下也，林氏则居其侧焉。昔尝立寨於此防御，登山之脊曰白露岗，上立烟墩，官军岁宿其上，似候望倭寇。”（以下简称五指峰寨）。③浬浦镇区东南狮子山东隅之赤墈，据民国《临海县志·陆路道里》载：“赤墈汛西南至大域营 4 里 5 分。”汛、营均为军事建置，且赤墈曾有“寨部”之称；这里，是“海道要冲”牛头门与塘头寨（今名关头，下文将予考述）之间的战略要地。

上述 3 处，究竟哪里是《漂海录》中说的狮子寨呢？笔者认为，狮子山赤墈寨当为狮子寨，依据如次：

1、狮子寨，显然以山名寨——当在狮子山附近。牛头山的西北麓、渔西的炮台山只是“俗称”为狮子口、狮子山，却非真的狮子山；而浬浦镇区东南之山，明代以来一直称为、而且在地图上标明是狮子山。

民国《临海县志·兵防》介绍明代桃渚千户所有 12 个烽堠，其中一个在狮子山。其原注是：狮子山“在宁海县 90 里，近牛头山”。光绪《宁海县志》记：“武曲岭下洋山在东南 70 里临海县。”民国《临海县志·陆路道里》载：武曲岭至浬浦汛 16.4 里。浬浦至狮子山 3 里多，70 里、16.4 里、3 里多，加起来正合“在宁海县 90 里”，且近牛头山（约 18 里）。而牛头山西北麓、渔西的炮台山既非“在宁海县 90 里”，也非“近牛头山”（牛头山西北麓本属牛头山支脉；渔西

的炮台山与牛头山隔海相望，陆路约 40 里），显然不是明代以来的狮子山。

2、与崔溥当年的泊船处相互印证。一四八八年闰正月十六日“午后”，崔溥的漂船到泊于牛头外洋；十七日舍舟登陆，过二岭，行六七里，得一里社，饭后“时已问晚”[⑰]——可见“舍舟登陆”也该在午后。这就是说，崔溥一行 43 人在牛头外洋的泊船处整整一个昼夜以上。

在这么长的时间里，尽管风雨交作，边防的官兵不但没有发现外国的漂船，而且让一船 43 人登陆后“过二岭，行六七里”，然后进入“人多之里”，足见狮子寨不在崔溥当年的泊船处——金木沙海湾——的旁边，亦即排除了“水寨”是狮子寨的可能，因为“水寨”与金木沙海湾一在牛头山西、一在牛头山东，近在咫尺。再说，狮子寨的守寨官“欲献馘图功”，将领兵捕斩崔溥他们，设若“水寨”是狮子寨，那么，守寨的官兵能不发现异国的漂船吗？能让崔溥他们从眼皮子底下逃到“人多之里”吗？

同样的道理，崔溥当年的泊船处不可能在五指峰寨旁边的虎门孔，进而愈加证实牛头山东麓之金木沙海湾是其泊船处。

狮子寨的官兵不能当天发现崔溥的漂船及他们第二天的登陆，但却能够比崔溥稍后随即赶到“人多之里”——沿江村，足见狮子寨“近牛头山”。于是，又排除了“五指峰寨“是狮子寨的可能。因如前述，五指峰寨与牛头山隔海相望，陆路约 40 里，不是“近牛头山”。这样，在牛头洋西岸及附近区域曾立过寨的 4 个地方中，就只剩下狮子山赤墈寨了。考沿江村正处于赤墈与牛头山之间稍偏近牛头山的路上，东南去牛头门 5.9 里，西去赤墈 9.5 里[⑱]，故崔溥到达沿江村不久，狮子寨的官兵随后即赶到那里。

综上所述，《漂海录》中说及的狮子寨，当是狮子山赤墈寨，因此后改为“赤墈汛”，故湮“狮子寨”之名。

四、登陆后进入的第一个里社

里社就是村庄。笔者所以认为崔溥登陆后进入的第一个村庄是沿赤乡沿江村，乃基于如下的思考：

1、来去里程基本符合。据《漂海录》记载，崔溥登陆后，过两岭，“行六七里，得一里社”；“向晚”离开这个里社，“行过 50 余里，夜已央矣”——即过了仙岩村达于流水岩一带[⑲]。介于一头去海滨是六七里，另一头去流水岩是 50 余里，这中间的村庄便是沿江村。

2、沿江村，是牛头山至笔架山这一带滨海的第一村，是从这一带海岸登陆西行的必经之村。当时，在崔溥的泊船处，6 只“中船”上的人“其言不实，劫

夺又甚，情伪浅深未可知”[D]。崔溥以为，“不于此时善处，则我等之命悬其掌握，终必为海曲之鬼”。于是，趁着“中船”上的人“以雨故皆入船舱中，无观望者”[D]的时机，下船亡命奔逃，巴望早一点进入“人多之里”可以申理求救，因此不可能绕过沿江村而径去别村。

3、从姓氏考村庄历史。据《三门县志·姓氏》记载：沿赤乡邢氏，宋乾道间（1165~1173）由嵊县迁入从岙，复迁邢家堂、钳口，后迁沿江；沿赤管氏，南宋建炎间（1127~1130）自福建莆田航海迁居；浬浦埠头王氏，唐乾符间（874~879）从福建莆田迁入，后分迁路上、沈家王、沿江……看来，在崔溥到达沿江村很早以前，该村就是多姓氏聚居的大村庄，因此，当崔溥等“至其里，则里中人，老少男女争怪臣等，观者如墙”[D]。

4、《漂海录》记有一个标志：里前有佛堂，“臣至佛堂，解湿衣以风”[D]。

历史悠久的古村落，佛堂、神庙之类是不轻易搬迁的。现在，沿江村前还保存着几经修葺的佛堂，叫福进堂，俗呼社堂，7 间坐北朝南的殿宇，偌大的院子，前有戏台，中开大门，四周围墙。

显然，崔溥登陆后进入的第一个村庄，就是沿江村。

五、夜遇王乙源的高阜处

《漂海录》载：十七日“向晚”，崔溥等离开第一个里社，“子半”（夜半子时，已是十八日），“路经一高阜，松竹成薮。遇有自称隐儒，姓王名乙源者，怜臣冒夜冲雨，艰楚被驱，止里人，少住”。乙源“呼酒劝臣”，崔溥说自己守丧“不饮酒、食肉、茹荤及甘旨之味”，乙源“遂馈臣以茶，馈从者以酒”。临行时，“乙源握臣手，眷顾相别”。

这实在是难以忘怀的幸遇！根据笔者踏查，这个“高阜”处当在现三门县浬浦镇的路上村。据《漂海录》载，当时，崔溥等前去的明确地点是西里堂，而路上村正是从沿江村去西里堂的必经之村。考当年的路上村确在“高阜”处，而附近其它村落却没有处“高阜”的；再，路上村是王姓的聚居地，与邻近埠头村同宗。过去，浬浦一带还是海洋时，埠头村只是个泊船的“埠头”，但尔后却出过大家，有“埠头府”的沿称，这就为该地有过“隐儒”或仕宦人家提供了某种依据。

这个王乙源，实非寻常百姓之可比。他不但在“群聚如云，叫号隳突”[D]的情况下“止里人”，而且让身份未明、正递送官府审查的外国 43 人来家“少住”，待以茶酒，并与其叙谈，可见他在乡里有多高的威望和声誉。然而，尽管他有胆识，但在“国法甚严，律条甚重，漏泄夷情，新例充军”[D]的抗倭时期，告以“王

乙源”的姓名，则未必是真实的。遍查《埠头王氏宗谱》，其中没有王乙源其人；而正当那个时期，有这么两个人是值得考虑的。其一，第 25 世名“其崇，号介亭，迪功郎。公屡试不第，成化二年（1466）纳府吏候选”；其二，第 25 世名“其轩，号德薯，邑庠生，功名初蹇，至 86 岁入泮，训导四方，生徒云集”。

笔者认为，崔溥遇王乙源的高阜处，当是路上村；而王乙源其人，则难定论。

六、西里堂与仙岩里

《漂海录》载：十七日，崔溥他们登陆后进入一个里社。“向晚”，在其里前佛堂，有二人来言：“你可起身，送你好处。”崔溥问：“其地名何”？曰：“西里堂也”。这是《漂海录》中记述登陆后第一个真实的地名，并且今仍其名，隶于今三门县浬浦镇。

西里村，俗呼西里堂。宋朝嘉定《赤城志·州境》图就标有该村，那时叫“西礼”；“礼”与“里”同音，因其在浬浦之西，相距不到 2 里，故改为西里——浬浦西边的村庄。

仙岩里，因村之西北“仙岩山”而名，《赤城志·州境》图亦标有该村，现隶于浬浦镇。《漂海录》载：十八日“向曙”前路过该村，“里中有大桥”，受到“棱杖乱击”，并被夺去马鞍（当地民众误以为“倭寇”犯境）；二十三日返程复经该村，拿回了马鞍[9]。

村右仙岩山有洞，高 11 米，宽 25 米，深 50 米，传说系仙人凿开，故名仙岩洞。晋代始建法云院，宋朝改称百花清洞。宋德祐二年（1276），右丞相文天祥在镇江元营脱险后，至通州乘船南下，途经猫头洋忽见后有追兵，便移舟牛头门进入仙岩港，在仙岩洞住了一夜。于是，后人在此建有“文信国公大忠祠”。

七、蒲峰与塘头寨

《漂海录》载：十八日“向曙”，“行至蒲峰里，雨少止。有官人率军吏而来”，“臣问官人姓名、职事，有王适者曰：‘此乃海门卫千户许清也，守塘头寨，闻倭犯界专为捕获而来。’”

蒲峰，在仙岩至塘头寨的路上，现仍其名，属三门县花桥镇。村民黄姓，始祖于宋孝宗（1163~1189）时从宁波余姚迁台州柔川，其子分迁到蒲峰。

许清，是崔溥登陆后遇到的第一个中国官员。他守塘头寨，因何在蒲峰遇到崔溥？当时，一方面，有着高度海防意识的沿海民众，疑崔溥等是犯境的倭寇，便自发地将他们“夹左右”，“次次递送”到官审查；另方面，狮子寨守军将“往

捕”崔溥他们时，见其“先自舍舟投入人多之里”[22]，便快马报告塘头寨和桃渚所，说是“倭寇”犯边劫人。接到军报，许清立即“率军吏”从塘头寨出发，行至蒲峰便遇上崔溥等 43 人。

那么，塘头寨在哪里?《漂海录》记道：从蒲峰“行 5 里许，有官廨乃塘头寨也”[23]。当时，管送崔溥等前去的目的地是桃渚所。从蒲峰出发，往桃渚方向“5 里许”的地方，便是现花桥镇关头村，村后至今还有古寨遗迹。今之关头，那时因何叫塘头呢？原来，该村古代处于海际，围涂筑堤，北起该村，是堤塘的一头，故称塘头；寨以村名，自然地称为塘头寨。《漂海录》载，崔溥等行至塘头，“过一长堤，可 10 余里”，然后再去桃渚所，这就是明证。之后，塘头又因何改叫关头呢？已如上述，该村前临海际，后依海拔高 362 米的关头山，村落正当古道转弯的山口，地处要冲，是一天然关隘，所以在此设寨。直到清朝光绪（1875~1908）年间，这里还是军事汛地[24]。长期以来，边防关隘的军事地位及其作用明显地超过往昔堤塘的声名，口语流俗，塘头逐渐呼为关头，寨亦随之改称关头寨。

顺便指出：从蒲峰至塘头（现名关头），今之里程确为 5 里，由此可见崔溥《漂海录》真实性之一斑。当时，崔溥等被疑为犯境的“倭寇”，递送至桃渚所接受审查，但仍然关注、并时刻记录历路的要事；在没有测量工具的情况下，行经的里程都记载得如此准确，简直达到惊人的地步。

此外，塘头寨隶属桃渚千户所，桃渚所隶属海门卫，许清既是“海门卫千户”，为何“守塘头寨”？这是因为倭患非常时期，上级军事机构的官员亲到前线坐镇，以加强那里的指挥，既说明塘头寨地位的重要，也说明弘治初年吏治中好的一面，值得借鉴。

八、吴都、安性寺与杜渎场

《漂海录》载：十八日，崔溥等从塘头“过一长堤，可 10 余里”，又“过两岭，几至 30 余里，有人居，甚繁盛，前有佛宇”。“天将暮”，“过一大岭。夜二更，至一川边”。继续前行，“可三四里，有大屋舍缭以城郭，如关防然。问之则乃杜渎场，见桃渚所，或云批验所也。城中又有安性寺，止臣等于寺，许留宿焉”。

这段记载，简捷地说，就是崔溥等从塘头出发，达于登陆后第一个住宿点——安性寺。现在权将这条路线倒过来，首先考述安性寺。

《临海县志・卷三十五・寺院》据宋・嘉定《赤城志》载：“安性寺，在县东 170 里，旧名新安，后晋天福四年（939）建。宋治平三年（1066）改额。”该志又据《台州府志》载：清顺治（1644~1661）间海警遗废，康熙（1661~1722）

时僧真缘重建。当时，崔溥等前去的目的地是桃渚所。据踏查，从塘头到桃渚所的古道边，历史上确有安性寺，寺在现三门县小雄镇山场村东北和尚山南麓，只是古寺早已废圮，依稀可辨遗址规模不少；而崔溥所记的“有大屋舍缭以城郭，如关防然”，则难觅遗迹。

据《山场柯氏宗谱》载：“山场，台（州）名乡也，处海岱之滨，平峦旷野，秀岭参云。”安性寺作为该村古代十景之一，被载入该宗谱中，并有《安性钟声》诗：“竹林深处是禅房，功课僧勤夜未央。百八晚钟敲断梦，悠扬音韵彻山长。”

其次，考述从塘头到山场间的“一大岭”，以及上岭前“甚繁盛，前有佛宇”的地方。

原来，东西绵亘于塘头与山场间的主山叫长大山，海拔高 470 米。有三条路，过岭后都可以到达山场：西道沿坑岭，过花桥村（旧称城门）上岭，下岭后经上董村到山场；中道小岭，过花桥、上潘村再上岭，下岭后经大岙村西到山场；东道吴都岭，过吴都村上岭，下岭后经大岙村东到山场。笔者考察台州沿海地区，发觉先民们大抵从山上到山麓、再逐渐向平原开拓迁徙，有的则因遭风暴、或为避乱，漂海迁居。因此，西向的古道一般是最早开辟的；政府建置地或有集市的聚居地，道路也是先通的；至于改曲为直、而今最便捷的道路，那是在拓荒之后、经济发展的基础上最迟建设起来的。基于这般认识，笔者以为崔溥当年走过的“一大岭”，便是吴都岭；“有人居，甚繁盛，前有佛寺的地方是吴都村。依据如下：

1、据《三门县志 • 军事设施》载：吴都寨“建于宋嘉定十五年（1222），额兵 140 人”。该志《武装建置》载：明洪武三年（1370）后，吴都置巡检司（引者注：据明《会典》载，建巡检司当在洪武二十六年，即 1393 年后），“设巡检 1 员，配有哨船 1 只，弓兵 35 名，检查往来商旅，巡逻缉盗”。山场，是建于宋熙宁五年（1072）的杜渎盐的批验所（下文将予考述），又有集市，它与吴都必早有古道通达；这条古道便是吴都岭，因岭北吴都村而名之。

2、据《漂海录》记载，“过一大岭”前，该处“有人居，甚繁盛，前有佛宇”。考西道沿坑岭、中道小岭，其北坡下、即在上岭前都没有这些历史的痕迹，而吴都岭的北坡下、即吴都村，则符合这些记载。换而言之，“有人居，甚繁盛，前有佛宇”的地方，就是现花桥镇的吴都村。

3、从塘头寨到吴都村，“过一长堤，可 10 余里”，又“过两岭，几至 30 余里”，《漂海录》的记载不但路线正确，而且里程也符合；其间“两岭”，就是芝岙岭和岭南岭。

4、过了吴都岭，“至一川边”，这“川边”就是大岙村的溪边，该溪流汇入山场溪从洞港出海。继续前行“可三四里”，便到山场安性寺。《漂海录》的记载完全符合实际地情。

再次，考述杜渎盐场。当时，崔溥等行至山场，因不识其地，“问之则乃杜渎场，见桃渚所，或云批验所也”。其实，山场跟桃渚所中隔两山，根本无法看见桃渚所，这“见”应作“近”——不远处可见——解，因这里距桃渚真地不远。

那么，山场“有大屋舍缭以城郭，如关防然”的“城中”，究竟是杜渎场，还是杜渎场的批验所？可以肯定地说，这是批验所，因为杜渎场署建在现临海市桃渚镇北涧村，距山场还有一山之隔。地理方位是这样的：北涧在山场的东南，中隔一山；桃渚城在北涧之南，也是中隔一山，只是岭不高。

《台州府志·卷八·赋税表》据《两浙盐法志》记载：“杜渎场，场在县东北 120 里，熙宁五年（1072）建。所辖场地，东至海界，西至分水岭界，南至海门卫界，北至黄泥山界，计延袤 85 里。图说曰，杜渎场在临海县之承恩乡，昔时因海水涨入，遂成沟浍，因以渎名。宋熙宁五年，置东洋监罗地方，今名北涧。明设盐课司，国朝康熙三年（1664）归并黄岩场，雍正六年（1728）改设，署在涂下桥。”1987 年夏，北涧村王氏发现其祖王勋（1255 年~1319 年）的墓碑，落款是“承事郎杜渎场盐司令范荣祖填讳”。这也是一个佐证。

《台州府志》据《两浙盐法志》又载：杜渎场“所产盐斤，除销临海、天台、仙居三县外，金属之东阳、永康、武义，处属之缙云，全赖焉。有余盐，则运至乍浦配销”。据《漂海录》载：山场有杜渎盐场的“批验所”——杜渎场所产盐斤经过“批验”运销各地，可见杜渎场（北涧）至山场（批验所）有一条历久的通道；崔溥当年走过的正是杜渎场盐运的古道，即经过西岑、塔坑、十八拥岭，然后到北涧，再到桃渚城。

必须指出，崔溥提及的“批验所”，未见当地府志、县志有此记载，这是《漂海录》可供取资的史料价值。

九、桃渚城与桃渚千户所

《漂海录》载：十九日，“过一岭，可 20 余里，至一城乃海门卫之桃渚所。”一城，便是桃渚城；桃渚建有隶于海门卫的千户所，所署就在桃渚城内，故又称桃渚所。

崔溥漂海登陆的地方，当时政区属于临海县二十都，军事上属于桃渚千户所管辖，因此，当他们初被疑为犯境的“倭寇”，首先被递送到桃渚千户所审查。

桃渚，地处三门湾与台州湾之间，古代是“海上入台（州）之要冲”——渡海登陆、直趋台州府城的战略要地。明朝，为了抵御倭寇，自洪武十七年（1384）开始，北起山东，南至浙江沿海，凡战略要地都筑起城池[8]。桃渚城，建于明朝正统八年（1443），由户部右侍郎焦宏亲自督造，是当时浙江东南沿海 41 座卫、

所城之一。

《台州府志·卷五十·建置略》载："桃渚城，在（临海）县三十三都、海门卫东北 50 里，城高 2 丈 1 尺，周回 2 里 70 步，明正统八年（1443）建。东南至前所 40 里，北至健跳 100 里，西至府城 120 里。三面枕山，一面临海，最称雄壮"。环城 11 座敌台（亦称烽燧），城外护城河。崔溥是该城建好后才 45 年便来到这里，比戚继光在此抗倭（明嘉靖三十八年，即 1559 年）早 71 年，因此，他见到的基本是"原汁原味"的桃渚城。《漂海录》载："至其城，则城有重门，门有铁扃，城上列建警戍之楼。城中市店联络，人物繁富"[9]。其中，"城上列建警戍之楼"，这与嘉靖四十年(1561)刑部郎中何宠在桃渚城《新建敌台碑记》中写的"城上有台，台上有楼"相符合，说明崔溥离开 73 年后，桃渚城概貌依然；至于"城有重门"、"城中市店联络"，则与桃渚城现状相同，说明 500 多年过去了，古城如故，只是"人物"比前更加"繁富"。《漂海录》的记载，为深入地研究桃渚古城增添了重要的史料，并且印证今天我们看到的桃渚城，基本上确是历史的原貌，这将进而体现其历史和文物价值。2001 年，桃渚城被列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

崔溥不但实录了桃渚城的概貌，而且指明"乃海门卫之桃渚所"。民国《临海县志·卷九·兵防营制》载："明洪武(1368~1398)初，置台州卫防守郡城，其沿海特设松门卫、海门卫(领前千户、新河、桃渚、健跳 4 所)，并隶松、海备倭把总统辖。凡军之政，必听于卫，卫下千户所，千户督百户，百户下总旗、小旗，率其士卒以听。"明朝的军队按卫、所编制，大致 112 人为百户所，长官叫百户；1120 人为千户所，长官叫千户；5600 人为一卫，长官叫指挥使。桃渚是个千户所，隶于海门卫。

《台州府志》据《明史·地理史》载："桃渚千户所……洪武二十年（1387）九月置，城高二丈五尺，周回三里五十步。"显然，初置的桃渚千户所不在现在的桃渚城。据明·王淮《桃渚千户所迁城记》载："桃渚属海门卫，城在临海邑海崖之颠，势甚孤危，适足以饵寇，且潮汐冲激，弗克宁居，乃集藩宪及都司官僚佥议，内迁十里许。"据考证，桃渚千户所，明洪武二十年九月始设"海崖之颠"，是在下旧城；"内迁十里许"，是在中旧城；明正统八年（1443）才迁到上旧城——桃渚城。故明代刑部郎中何宠在《新建敌台碑记》中写道："桃渚世受倭患，历兹三迁"。《漂海录》的记载，不但符合史实，而且填补有关志书之阙如，把当时的"人事"都记录下来：把总松门等处备倭指挥刘泽，桃渚所千户陈华、百户柳春，健跳所千户李昂，守塘头寨的是海门卫千户许清，等等。

在桃渚城，崔溥等接受了中国官方第一次审查。通过审查，明白了他们是朝鲜友人，"既无侵逆之情，当遇以礼"，于是决定"转送赴京，遣还本土"[10]。

其间，崔溥等受到桃渚军民的敬待，并与桃渚军民用纸墨进行笔谈，结下了深情厚谊。二十三日离开桃渚城，踏上归国的征途。

桃渚，是崔溥漂海的重大转折点：首先，从九死一生的漂海转为无风波之险的陆行——在狂风惊涛中历经 14 昼夜生与死的考验，桃渚是他们漂海的终点，由此踏上历览中国之大观的坦途，生还祖国；其次，从初被疑为犯境的“倭寇”转为受到敬待的“座上客”——又一次历经生与死的考验，桃渚是他们明白身份、启程回国的起点。当时，桃渚是抗倭的海防前线，崔溥一行突然间从外海漂来，语言不通，衣冠异样，难免被守边军民疑为倭寇。但既有高度海防意识、又讲求实事求是的桃渚军民不是“先斩后闻”[9]，而是“恐其中情有可矜”[9]，查明身份，热情款待，然后礼送回国。

中韩友谊源远流长。2006 年 2 月 15 日，即崔溥漂海时过 518 年之后，由韩国耽津崔氏后裔、崔溥漂海纪念事业会发起、由崔溥故里韩国罗州市政府资助，并由桃渚城里村建立了“崔溥漂海录·中韩民间友好碑”及护碑亭，还举行了揭幕盛典。以此为契机，进而发展中韩两国人民的友好往来，接续、增进传统友谊。崔溥与桃渚城的历史佳话，架起了今天大陆与韩半岛间的桥梁，是一道绚丽的彩虹！

十、两岭三大川，以及鉴溪

《漂海录》载：二十三日，他们离开桃渚所，“过山场、鸟头两岭，间有三大川。鸟头岭下又有鉴溪”。

考台州东北部沿海一带的岭名，大多以过岭后彼处岭脚的村庄或附近大村为名。比如：此为山场，过岭往吴都方向去，即呼是岭为吴都岭；相反地，此为吴都，过岭往山场方向去，即唤该岭为山场岭。其实，山场岭与吴都岭异名同岭，岭之南是山场，岭之北是吴都。鸟头岭，就是十八拥岭，因岭头东侧是鹅冠山的六蓬头，将鹅头唤做鸟头，这是该岭的初名，也是岭名的一种由来。而今，十八拥岭是临海市与三门县的界岭之一，北是三门县，南是临海市。

有山必有水，与鸟头、山场两岭相关，自有三大川：由南而北，第一川，即鸟头岭以南、六份山以北，称北涧溪(简称涧溪，古名杨溪，有桥为北涧八景之一，唤作“杨桥跨虹”)，入今之北大河，流经洞港出海；第二川，即鸟头岭以北、山场岭以南，叫山场溪，古称鉴溪，是现三门县六大山溪型河流之一，也流经洞港出海；第三川，即山场岭以北、关头山以南，为花桥溪，也是三门县六大山溪型河流之一[10]，入浦坝港经牛头门和白带门出海。

鉴溪，就是现在的山场溪，这是根据《山场柯氏宗谱》的两则记载：其一，

“柯氏之坤舆，其地饶，其风醇，有洞曰朝阳，其溪曰鉴溪，其桥曰柯桥，其山曰大雄。”其二，“宋·酂公，临海人，字仁甫，宋中神童科，卒业太学，授临海教谕，性敦厚。入元，临晚隐居东谷，建鉴溪书院，延名师以教乡人子弟，世高其谊，至今颂鉴溪先生。”另据《漂海录》记载：“鸟头岭下又有鉴溪。”事实上，今之山场溪正在鸟头岭(即十八拥岭)北坡之下，显见鉴溪就是山场溪。

十一、后郑殿与穿岩里

《漂海录》载：二十三日，“自桃渚所至此(引者注：此指后郑，下文予以考述)，乃臣前此被驱所经之路也。”可见从桃渚城到后郑，他们是沿着来时的路线返回的。“又行过塘头、蒲峰等地。犯夜，至一道旁佛宇而宿，其前里閈即仙岩里。”

显然，他们从桃渚城出发，已行过了蒲峰，但未至仙岩，因为“犯夜”，就在离仙岩最近——“其前里閈即仙岩里”——的“道旁佛宇而宿”。据踏查，这个佛宇就是现三门县浬浦镇后郑村的后郑殿，这是崔溥等回国路上的第一个住宿点。几经修葺的古殿尚在，印证着几被尘封的历史。

《漂海录》载：二十四日，“晓过穿岩里。里西有山，戴石壁屹立，穹隆有大窦洞，望如虹门，里之得名以此”。

1989 年版《临海县志·城乡行政区划》载：穿岩里，明代属于临海县第十九都，清代属于该县承恩乡黄荆坦庄，位处临海县与宁海县交界处，现属三门县浬浦镇。1957 年因建造库容 334 万立方米的施家岙水库（即黄荆坦水库），村民全部迁移，村已不复存在。

世事多沧桑，不变是河山。崔溥记述的穿岩里西边的山、岩、洞，经过 500 多年的风雨洗礼，依然以那迷人的景致吸引着过客。《三门县志·胜景》写道：在万心洞“北巨岩右下端有小穿岩，其岩壁立如城门，东西贯通，高 3 米，阔 12 米，深 4.2 米，有径可通”。“里西有山”，这山叫万心洞山；“望如虹门”的“大窦洞”叫穿岩洞。

十二、关于田岭

《漂海录》载：二十四日，过了穿岩里，“又过田岭，岭上有僧作佛宇横道，路行人从寺中以过”。

当时，崔溥等前去的地方是健跳所。过了穿岩里，去健跳有两条古道：一是走东北，经岙口，过田岙岭（与浮门岭异名同岭，岭之南是田岙，岭之北是浮门），

从浮门渡口过健跳港，直抵健跳所；一是走西北经东郭，过大宅岭（与东郭岭异名同岭），从沙木渡过健跳港，再至健跳所。当年，崔溥走的是哪条路线呢？

且从渡口研究入手。《三门县志·大事记》载：“唐贞观三年（629），健跳隶属宁海水司，有定期航船往来健跳与东关（今象山县石浦镇）。”又载：“南宋建炎四年（1130）正月，高宗赵构避金兵至章安金鳌山。途经浮门时，失琴于江，故浮门江又称琴江（今健跳港）。”由此可见，与浮门隔港相对的健跳，作为码头和渡口，早就有航路往来——开发、显名早；而沙木渡则无此等记载。

明代，崔溥等漂海入境，是由卫、所作为“军事行为”来处理的，既有千户、军吏等 20 多人护送他们从桃渚所去健跳所，健跳所定会事先接到军报，自当“备船”接他们渡过健跳港。《漂海录》记述了当时过渡的情况：过了田岭，“行至海浦，有兵船具戎器循浦上下，示以水战之状。臣从鼻居船以渡，则乃是健跳所也”[9]。江中的军事情状，以及过了江便是健跳所，这无疑是浮门—健跳渡口的写照；而沙木渡则不是、也没有这种情形。

显然，崔溥是从浮门渡口过健跳江到健跳所的。

不言而喻，崔溥过的“田岭”，不在去沙木渡的方向上，而在去浮门渡口的古道上；并且，田岭就是今之田岙岭。具体考析如下：

1、已如上述，从穿岩里去浮门渡口，必经惟一的岭道——浮门岭，亦称田岙岭。原来，该岭是浮门（在北）、田岙（在南）两村间的山岭，西峰有巨岩称“狮子头”，狮子头东伸低垂下去叫“狮子鼻头”。岭道就通过“狮子鼻头”上下的，海拔 259 米。

2、浮门村历史悠久，早有古道通达。唐大顺（890~891）间，那里就建有安住寺，规模较大。现寺后还有“古安住寺”、“蟠龙”两处摩崖石刻（其中“蟠龙”两字刻于清乾隆六十年，即 1795 年）。深山藏古寺，有寺必有路，并且此路通达海防要冲——健跳，因此，岭道铺有 1 米多宽的石级，至今仍很齐整坚实。

3、据踏访，符合《漂海录》对该岭的记载：“岭上有僧作佛宇横道，路行人从寺中以过。”这“佛宇”叫狮子佛殿，已圮，惟存数根粗大的石柱和断壁残垣，不时唤起人们的记忆。

显然，崔溥当年走过的“田岭”，就是田岙岭，亦称浮门岭。那么，崔溥何以说是“田岭”呢？这可能一是古今异名，一是疏漏之误。

十三、健跳城与健跳千户所

《漂海录》载：二十四日“至健跳所”。

《台州府志·卷五十·建置略》载：“健跳所城，在（宁海县）南 110 里凤

凰山麓，去海 5 里。明洪武二十年（1387），信国公汤和奏设千户，尚膺筑城，高 2 丈 3 尺，围 3 里 27 步。门二：西曰登明，北曰崇武。”该志《卷五十八 • 武备考》载：“健跳千户所，在卫城东北 110 里。”看来，健跳所城正处于海门卫城与宁海县城的中间。

另据《三门县志 • 军事设施》载：健跳所城，“明正统（1436~1449）间指挥王谦重建”。可见重建的健跳所城，与建于明正统八年（1443）的桃渚所城属于同一时代的军事建筑。崔溥是 1488 年行经健跳的，他见到的显然是王谦重建至多不超过 51 年的健跳所城。他在《漂海录》中写道：“城临海岸……门皆重城，鼓角铳鎗声震海岳。其唢呐等大小角末端皆上曲，钩向吹者眉目间。城中人物、第宅，视桃渚所尤丰盛”[52]。当时，健跳人张辅“引臣至其家，则其家前街果以雕龙石柱作两层 3 间之门，金碧眩耀，其上大书‘丙午科张辅之家’之标”[53]。显见当时的健跳城及城中“人物、第宅”，甚是气派。

《台州府志 • 建置略》又载：“健跳所城，国朝顺治七年（1650），海寇叛据，提督田雄攻破之，遂墟其地。康熙二十四年（1685）复为寨。”现在，该城从南山脚至北门山脚的城墙均毁，其余城墙基本保存完好，1988 年被列入三门县文物保护单位。

已如上述，健跳千户所，“明洪武二十年（1387）信国公汤和奏设”。《台州府志 • 武备考》据《康熙通志》载：明代，海门卫指挥使司“辖左、右、中、前、后 5 千户所，附辖健跳、新河、桃渚 3 千户所”。健跳所“操军 1000 名”。另据《宏治志》：“正千户 1 员，副千户 2 员。”据《漂海录》载：当时，正千户是李昂，他“躯干壮大，容仪丰美，具甲胄兵戎，导臣等入城门”。因该城在清朝已“墟其地”，而今遍是现代建筑，故千户所署难以觅迹了。对于“公所”，《漂海录》如此记载：“李昂引臣至一客馆，与翟勇、许清、王匡、王海等……皆环立桌之左右，问臣以漂流之故。臣略陈首末云云。李昂请升堂，行宾主之礼。昂由西阶、臣由东阶而上，相对再拜后，昂馈臣茶果，又馈臣之从者以酒肉，颇示忠款之意”[54]。这里的“客馆”，类乎桃渚城的“公馆”。当时亲见的健跳人张辅，在《送朝鲜崔校理序》中写道：“遂迎其所率吏卒 43 人者，馆之公所。”该公所可以“升堂”，大堂高处台上，要步着台阶拾级而上；并且十分宽敞，可以宴请崔溥等 43 人。可以想见，这公所就在千户所署之内，甚或就是所署。

此外，上文提及的张辅，《漂海录》记其“丙午年登科”，这与《三门县志 • 人物录》所记符合，他确于明成化二十二年（1486）、即丙午年乡试中礼部乙榜。这又一次见证《漂海录》之真实性。张辅中举，任蕲水县教谕，不久丁父忧回家。1488 年崔溥行经健跳，张辅与他认识，并引他到家少叙。光绪《宁海县志 • 艺文内编》载有张辅《送朝鲜崔校理序》。

十四、崔溥离开台州

崔溥等离开健跳所，船过猫头水道（昔称猫头洋），便离开了现在的台州；但明朝的台州，却包括整个宁海县，他们还要走好长的路，这才离开台州。

《漂海录》载：二十五日，健跳所千户李昂偕许清等“俱送臣于海上”，“臣于船上叙别”。然后，“与翟勇同舟过大海”，“夕至宁海县之越溪巡检司。城在山巅，军卒皆带甲列立海旁”。他们在那里住了一个晚上。

《台州府志·建置略》载：“越溪巡司城，在（宁海县）东 30 里，明洪武二十年（1387）汤和奏设，高 1 丈 8 尺，围 240 丈，门一。正统十三年（1448），潘臬会奏，县丞刘昌修筑。”显然，崔溥看到的是县丞刘昌修筑后才 40 年的越溪巡司城，它与健跳城、桃渚城修筑的年代相当，已废圮。

《漂海录》载：二十六日，“自（越溪）铺前舍舟乘陆，从溪岸而步”，“行过西洋岭、许家山，至市岙铺”。又过白峤岭，“过进士坊，至宁海县之白峤驿；驿在县治之中。有知县姓唐者，供馈臣等，期至于饱”。接着，“过桐山铺、梅林铺、江漩岭、缸窑铺（引者注：《漂海录》误为“缸空铺”，据《台州府志》改之）、海口铺”，夜宿西店驿。二十七日，“大风大雨，溪涧水涨，不得已留于西店驿”。二十八日，启程离开西店驿——“挥手从兹去”，离开了台州。

《漂海录》结语写道：“自牛头外洋至桃渚所 160 余里，自桃渚所至宁海县 400 余里间，俱是沿海僻地，无馆驿。到越溪巡检司，始有铺；到宁海县，始见白峤驿。”考《台州府志·武备考》和《台州地区志·交通》，确信《漂海录》的记载符合当时的事实。

据 1993 年版《宁海县志·驿站》载：白峤驿，原名“迎恩驿，宋初建，在县治东百步。元至正二十三年（1363），徙治西 200 步，易名白峤驿。有轿夫 50 名，馆夫 10 名。明初重设。万历二十年（1592）移桑洲”。《漂海录》载：二十六日“又行至白峤岭，有军卒 20 余人担轿来迎臣等，臣等 8 人又乘”。可见是宁海知县派出白峤驿的轿夫，前往白峤岭迎接崔溥的。

上述该志还附有《西店驿图》，并记载：“西店驿署….在台州府宁海县境。洪武十九年（1386），信国公汤和巡行海道过此，因连山驿与白峤驿相距 130 里，迎送为难，二十年（1387）增置。楼门 3 间，中门一座，前厅 3 间，后堂 2 间（名清意轩），廊房各 3 间。驿丞衙在正厅右，馆夫 8 名，水夫 2 名，铺陈 5 副，制造与连山驿同，新旧共 10 副。”由此可见明代驿站之概貌。

崔溥离开了台州，“却顾所来径”，他对这里的山川人文，是很赞赏的。他在《漂海录》结语中写道：“奉化县以南，并海滨，多高山峻岭，奇岩乱石，溪涧

萦绕，花卉明媚。”“臣当（闰）正月而到，气候与三四月同，牟麦欲穗，笋芽方盛，桃杏满开。又山川高大，林薮屏翳，人物繁伙，第宅壮丽，别是一区天地也”[83]。

十五、综　述

根据上述考析，现将崔溥行经台州的主要路线及区域，综述如下：

（一）行经明朝的临海县、现属三门县的路线及区域

一四八八年闰正月十六日，漂海——牛头外洋（浦坝港与健跳港口外连陆的近海，属今猫头洋内海，已湮其名）——金木沙海湾（停泊）。

十七日，登陆——金木沙岭——海岙冈头岭——沿江村[以上属今之沿赤乡]——路上（子半，遇隐儒王乙源）。

十八日，路上——西里村——西里岭——仙岩村[以上属今之浬浦镇]——蒲峰村——关头村（昔称塘头）——芝岙岭——岭南岭——吴都村——吴都岭[以上属今之花桥镇]——山场村（宿于安性寺）。

十九日，安性寺——西岑村——塔坑村[以上属今之小雄镇]。

（二）行经明朝的临海县、现属临海市的路线及区域

十九日，山下堂——十八拥岭——北涧村（旧称杜渎）——桃渚所城[以上属今之桃渚镇]。

二十日、二十一日、二十二日，在桃渚城。

二十三日，启程回国，第一天沿原路北上：桃渚城——后郑村（宿于后郑殿）。

（三）行经明朝的宁海县、现属三门县的路线及区域

二十四日，后郑殿——穿岩村——田岙村——田岙岭（《漂海录》称田岭）——浮门渡口——健跳港（过渡）——健跳所城。

二十五日，健跳城——健跳港（走水路）——猫头水道（昔称猫头洋）[以上属今之健跳镇]。

（四）行经明朝、现在都属宁海县的路线及区域

二十五日，（走水路）——越溪巡司城（住宿）。

二十六日，越溪巡检司（过渡）——越溪铺（陆行）——西洋岭——许家山——市岙铺——白峤岭——进士坊——白峤驿（在宁海县城中）——桐山铺——梅林铺——江漩铺——缸窑铺（《漂海录》误为缸空铺）——海口铺——西店驿（住宿两宵）。

二十八日，离开西店驿，离开宁海县，离开当时（明朝）的台州。

500 多年过去了，然而，崔溥当年漂海行经台州的足迹，台州军民对崔溥等

43 人“宽以待之，厚以别之”的历史事实，以及由此缘结的中韩两国人民的深厚情谊，将世代流传，永不磨灭！

[注释]

①《漂海录·卷之一·闰正月初三日》。

②《漂海录·卷之三》结语：“自牛头外洋至桃渚所 160 余里，自桃渚所至宁海县 400 余里”。

③《临海县志·卷九·兵防营制》。

④《漂海录·卷之二·二月十一日》。

⑤⑥⑦⑧《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六日》。

⑨⑩《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七日》。

⑪《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九日》。

⑫《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七日》。

⑬《临海县志·陆路道里》。

⑭《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八日》：“又递至 20 余里，其里中有大桥（引者注：即仙岩村）……过二岭，见递他里。向曙”。

⑮⑯⑰⑱⑲《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七日》。

⑳《漂海录·卷之二·二月初八日》。

㉑《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三日》：“还马鞍于臣”。

㉒《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九日》。

㉓《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八日》。

㉔《三门县志·武装建制》。

㉕《明史纪事本末·卷之五十五·沿海倭乱》。

㉖《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九日》。

㉗《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㉘《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九日》：“若获倭，则皆先斩后闻”。

㉙《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㉚《三门县志·陆地水体》：六大山溪型河流为：山场溪、花桥溪、清溪、珠游溪、亭旁溪、白溪。

㉛㉜㉝㉞《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四日》。

㉟《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二日》。

附：

1、崔溥行经台州路线图
2、牛头洋大鸡山、小鸡山两岛（照片 1 张）
3、金木沙海湾（照片 1 张）
4、浦坝港入海之牛头门（照片 1 张）
5、仙岩村大桥（照片 1 张）
6、安性寺（原图 1 张）
7、桃渚城（照片 2 张）
8、中韩民间友好碑（照片 2 张）
9、穿岩（照片 1 张）
10、镇东桥——缸窑铺至海口铺的路上（照片 1 张）
11、海口铺古驿道（照片 1 张）

联系：中国浙江省临海市回浦中学校史室
邮箱：anlun99@sina.com

作者简介

王金龙，中国浙江临海人，回浦中学教师， 台州成人教育学院客座教授、作家，浙江省民间文艺家，编著有《桃渚》、《临海市中小学德育丛书》、《回浦中学校志》等 100 多万字。近年潜心研究《漂海录》， 为韩国耽津崔氏族裔和罗州市政府成功地在宁海越溪、临海桃渚建立崔溥漂海纪念碑， 为促进中韩文化交流和民间友好往来作出应有的努力。

崔溥의 漂海 上陸 및 台州 경과지역에 대한 고찰

번역
최 철 호
(교양사회 대표)

*****

1488년 즉, 명조 홍치원년(弘治元年), 조선 성종 19년에 조선 홍문관 부교리이며 제주 3읍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인 최부(崔溥)는 그의 부친이 별세했다는 비보를 받고 분상(奔喪)차, 배리, 호송군 및 노비 등 42명을 인솔하여, 고향인 전라도 나주(현 한국 전라남도 나주)로 도해중이었다. 그들이 윤 정월 초 3일, 제주 별도포를 떠날 때는 동풍(東風)으로 바람이 약간 순하였으나, 밤에 접어들자마자 북풍(北風)으로 변하여 어찌할 바없이 끝내 해양에서 표류하게 되었다.①

16일에 그들은 다행히 중국 절강(浙江) 태주부(台州府) 임해현(臨海縣)의 우두외양(牛頭外洋)에 표착(漂着)했다. 17일 배를 버리고 등륙하였고, 19일에는 도저성에 도착, 23일에는 도저성을 떠나 귀국 길에 올랐으며, 28일에는 영해현(당시 태주부 소속)의 서점역을 떠나 영파로 향하였다. 이후 소흥부를 지나 항주부, 경항대운하를 따라서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 후 산해관, 요동을 거쳐 6월,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도착하였다. 귀국 후 최부는 왕명을 받들어 한문으로 표해록(漂海錄)을 완성한 후, 조선 선조 6년, 즉 명 만력원년(1573)에 출간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중국에 체재 일자가 135일, 행정(行程)은 4000여 킬로미터로, 그 중 태주에 12일, 행정으로 280여 킬로미터였다.② 표해록에 그 당시 태주의 각 방면에 대한 상세한 정황이 기술되어 있으니, 그 기록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표착지, 그리고 그들이 경과한 태주의 일부 주요 지역만을 몇 차례 실지 답사하였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두외양(牛頭外洋)에 대해서

표해록 16일 자에, 우두외양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 6척의 선박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언어가 불통, 서로 필담으로 왕래하였다. 최부는 배리, 정보를 시켜, 여기가 어느 나라 바다요? 라고 묻자, 이 바다

기념비 개수 전면

는 우두외양으로, 대당국(필자 주: 때는 명의 중기(中期)로서, 당은 58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하였고, 송, 원을 거치며 백성은 대당국(大唐國)이라고 적지 않게 불렀는 바, 이는 중국의 역사상 대당제국이 심대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겠다)은 태주부 임해현에 속해 있소 라고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보면, 최부 등이 해상에서 바람에 쫓기며 14일간 표류한 후, 중국 절강 태주부 임해현의 바로 우두외양에 도착한 것이다.

임해현의 우두외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당시 임해현의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개의 이빨처럼 굴신(屈伸)의 형상으로, 감만(岬灣)이 많고 해안선이 구불구불 길게 이어져 있으며, 북으로 영해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무곡령 동쪽(현 삼문현 소속으로 건도항 남쪽), 남으로는 황암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태화산(숙강 남쪽으로 현재 숙강구 소속)지역이다. 이 해안선 동쪽의 해역(海域) 중, 최부일행이 도저성 이남 지역에 도착한 일이 없기 때문에 도저항 남쪽에서 숙강 동쪽 방향의 해역은 분명 우두외양이 아닐 것이다. 또한 도저항 북에서 포파항(浦壩, 옛 지명, 파파항) 동쪽 해역은 예부터 동양(東洋)이라 일컬었으며, 현재 두교(杜橋)일대인 서양(西洋)의 상대적 명칭으로, 이도 분명 우두외양은 아니다.

이처럼 임해연의 해역 중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포파항 북에서 건도항에 이르는 곳, 즉 우두산에서 무곡령 동쪽 해역을 들 수 있다. 사실 이 해역이 바로 역사적인 우두외양이다. 논거(論據)는 다음과 같다.

1. 표해록의 기술에 의하면 당시 최부의 선박이 정박한 곳이 바로 우두외양이다. 물론 정박지점을 해양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해양중(海洋中)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정박지를 살펴보면, 그 곳은 포파항 북쪽 연안으로 우두산 동쪽 기슭인데 아래에서 상술하겠다. 바다는 산의 이름을 빌린다. 즉 우두외양은 우두산 밖의 해양을 일컫는 것이다. 산의 이름으로 명명될 뿐만 아니라 부근의 바다로 통하는 문(門)역시 산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포파항의 출해구(出海口)는 백대산(현 확당산)의 남쪽을 백대문이라고 하는 바, 이도 백대산의 이름에서 온 것이고 산의 북쪽 우두문 역시

우두양의
대계산, 소계산
두개의 섬

우두산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민국 19년(1930) 절강 사전국(沙田局)에서 복제한 삼문만형세도(三門灣形勢圖), 민국 20년, 1931년의 태주부지 태주부 20리 방면(臺州府志 · 臺州府 20里方圖, 민국 32년, 1943년의절강성 삼문현 전도(浙江省 三門縣全圖)와 사문현수도도(沙門縣水道圖)등 지도 자료를 살펴본 바, 필자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뻤다. 과연 포파항 북에서 건도항에 이르는, 즉 우두산에서 무곡령 동쪽 해역이 또렷이 우두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명대(明代)에는 해안방위 목적으로 내항과 외항으로 구분된 바, 우두양 역시 우두외양으로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청대(淸代)로 내려와서, 이 곳에 좌영외양우두문범(左營外洋牛頭門汎)을 설치하였다. 민국시기의 우두양은 명대 최부가 정박했던 우두외양이 분명하다.

위에 언급한 역사지도 자료에 다음의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즉 우두외양 북쪽은 묘두양(묘두산에서 명명)이고, 묘두양 북쪽은 사반양(사반산에서 나옴)이다. 과거의 양(洋)은 모두가 먼 양양대해가 아니고 단지 육지와 연결된 근해(近海)임을 특히 지적해야겠다. 고대에는 근해에 어로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대형선으로 멀리 항해할 필요없이 어민들 대개가 부근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해왔으며,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까운 산의 이름을 빌려 해양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예컨대 이전의 사반양은 지금의 삼문만 오치문 이내에 위치, 현재는 사반수도(水道)로 개칭되었으며, 과거의 묘두양은 가까운 섬 청문산, 전만산 안에 위치, 현재는 묘두수도로 개칭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우두양은 오자도, 삼문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 신판 절강도를 살펴보면, 대목양(상산현 동쪽)과 대진양(숙강구 대진진 동쪽)사이, 즉 삼문현에서 태주만 동쪽에 이르는 곳을 통칭하여 묘두양이라 부른다. 이처럼 역사의 변천을 겪으면서 해양의 동쪽도 점차 개명되었다.

2. 표해록의 기록에 의하면, 최부 일행은 태주를 떠나 소흥부를 거쳐 항주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았다. 심사에서 그들을 북경으로 전송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항주부는 그들이 앞으로 경유할 각기 부, 현, 역에 도저천호소의 신고에 의하여 해당 천호, 백호

유춘 등은 기군(旗軍)을 대동하고 임해현 20도(都)로 가서 그곳 현지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선박을 포획, 소(所)에 그들을 압송, 심문하였다④ 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기록을 보면 최부는 당시 행정구역상 임해현 20도에 속한 우두외양, 즉 상륙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두외양은 20도와 인접하고 있다.

그러면 20도는 어떤 구역일까?

1989년 판 임해현지(臨海縣志) 의원명성방(元明城坊)과 도도(都圖) 및 청대향장(清代鄕庄)의 기록에 의하면, 원 초기에 송대의 향, 리를 도(都) 와 도(圖)로 개칭, 모든 현(县)을 68도(都), 134 도(圖)로 하였으며 이는 청 초기까지 존속하였다. 또한 청 옹정 4년, 즉 1726년에 도 등을 향, 장(庄)으로 개칭하여 모든 현을 다시 15 향, 149 장(庄)으로 하였으며 후에 간척지 5 장을 추가하여 도합 154 장이 되었다. 그 중 송대의 향(鄕)은 원, 명대에 17, 18, 19, 20, 21, 23, 24 등 7도(都), 19개 도((圖)로 개칭, 분리하여 20도를 포함한 각 도(都)는 임해현에 직속되었다. 청대에 폐기한 도(都) 와 도(圖)는 다시 향(鄕)으로 복귀, 20 장(庄) 228 촌(村)으로 관할되었으며, 원래의 20 도(都)는 적감(赤堪), 대역(大域), 어서(漁西), 연강(沿江) 등 4개 장(庄) 구역으로 개칭, 분리되었다. 즉 현재의 삼문현(三門县) 연적향(沿赤鄕)과 이포진(浬浦鎭)의 어서편(漁西片)구역이다. 해당 구역의 해안선은 남쪽의 우두산에서 북쪽의 무곡령 동편에 이르는, 즉 포파항과 건도항 사이를 일컫는다. 해당 구역은 바로 우두양 서쪽 해안의 육지로 지도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지역 동쪽의 해양이 우두양인 바, 이는 바로 우두외양(牛頭外洋)인 것이다.

3. 송대에 이미 우두양은 현존하는 태주의 부지(府志)중에서 가장 빠른 부지(府志)인, 적성지(赤城志)에 실려있다. 상기 적성지는 진기경(陳耆卿, 1180~1236)이 가정 16년, 즉 1223년에 편찬하였다. 그 책, 제 1권의 영해현 편에 "동남 250리 우두양이 임해현으로" 라는 구절이 있는데, 송대의 우두양은 영해현 동남, 임해현의 동북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적성지의 영해현 경계도에, 지금의 부문(浮門, 현 삼문현 건도항 남쪽해안, 아래에서 언급)의 동남쪽을 우두양 이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적성지 권 1, 임해현 경계(赤城志 · 卷第一 · 臨海县境) 편에 "동쪽 180리 우두산이 바다로" 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바다는 바로 우두양이며, 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적성지 수권(首卷)의 주경계도(州境圖)에 해안의 명칭이 우두라고 분명 표시되어 있다. 적성지 제 19권 임해산(臨海山) 편에 임해산은 본래 우두산으로 바위 모습이 그것과 닮았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기록을 보면 우두산은 바위로 알려진 산임을 알 수 있다.

간략하면, 임해현에 있는 임해의 산은 바위가 마치 소의 머리와 같다 하여 우두산(牛頭山)이란 이름을 얻었고, 우두산 외면(外面)의 바다가 우두양(우두외양이라고도 칭함)임을 송대의 적성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우두외양은 해만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왔기때문에 옛날부터 동북에서 강한 바

람이 이는 경우, 표류 선박이 해안으로 밀려오거나 침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명 가정 초(1522~1531)에 일본 선박이 표류 끝에 건도에 도착, 관에 이송된 후 환국시킨 일도 있었다.

현 연적향(沿赤鄕)의 소어서촌(小漁西村)밖의 작은 섬 인근에서 옛날 한 척의 대형선박이 침몰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곳을 도선곤(倒船坤)이라 부르고 있다. 10여 년 전 연적향의 연강촌(沿江村)밖의 우밀당(牛密塘)에서 어민들이 조난품으로 여겨지는 한 쌍의 귀한 금팔찌를 건진 일도 있었다. 근래에 건도항이나 포파항에서는 태풍을 피하는 왕래선박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2000년 태풍이 왔을 때는 영파해운회사 소속의 4000톤 급 대형 선박이 우밀당(牛密塘) 북쪽의 필가산(筆架山) 밖 바다에서 침몰하여, 그 곳 주민들이 작은 거룻배를 이용 선원들을 우두문까지 실어 나르며 구출한 일도 있거니와… 1488년에 최부 역시 영파의 하산(下山)에서 우두외양까지 표류하였다. 최부는 평생에 당한 조난 중 이러한 험난한 표류의 조난은 순전히 우연일 수는 있으나, 특정 시간, 같은 조건 하에서 동북쪽에서 선박이 표류되어 우두외양에서 침몰 혹은 표착이라는 일정한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해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2. 최부(崔溥)의 상륙장소

당시 최부의 정박지, 즉 상륙 지점은 표해록에 여러 명시가 되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표해록의 명시에 의거하여 우두양과 육지와 연결된 해만, 북의 초두를 기점으로 목작, 화문공과 재차 소어서, 우밀당, 삼랑만까지, 남으로 채후문, 금목사, 우두궁까지, 또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실제 상륙을 해보는 등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답사결과와 최부의 각종 기술내용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의 선박이 정박한 곳이 현 삼문현 연적향의 우두산 동쪽 기슭의 금목사 해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아래에서 상술하겠다.

1) 당시 임해현 20도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다시 췌언하지 않겠다.

2) 해상에서, "서쪽을 보니, 연이은 첩첩한 봉우리와... 하늘을 받치고 바다를 안고... 산상에는 봉화대가 열을지어 있었다"⑤

우두양 서해안은 뭇산이 연이어져 마치 천연병풍과도 같다. 북에서 남으로 해발 120미터의 우산(牛山), 259미터의 포대산, 196미터의 마안산, 294미터의 7자매강(崗, 언덕), 158미터의 상등강, 209미터의 태평산, 258미터의 필가산, 197미터의 우각문산과 119미터의 우두산이 있다. 그 곳은 왜를 방비하는 전선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봉화대가 열을 지어" 있었던 것이다. 우두궁의 인근 해상에서 천정잔, 전후양강과 우두산 등지의 봉화대 유적을 볼 수가 있다.

3) 16일, "동풍을 타고 다가가... 오후에 풍랑이 거세지고 비가 내렸다. 배는 바람을 타고 속도가 빨라졌다."⑥ 표해록 12일 기록에 의하면, 최부 등은 영파부 하산에 도착

하였고, 13일에는 서북풍이 크게 일어났고, 14일은 한 섬에서 머무르며 북풍만은 피할 수 있었고, 15일은 동풍이 다시 일어났고, 16일은 동풍을 타고 태주부 임해현 우두외양에 정박하였다. 즉, 영파에서 그들의 선박은 서북풍, 북풍에서 남으로 표류, 다시 풍향은 바뀌어 동풍이 다시 일었고, 실은 동풍을 탄 것이지만, 이처럼 바람은 선박을 서쪽으로 표류케 한 후 우두외양으로 진입, 금목사 해만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계속 남쪽으로 표류했을 것이다. 당시 만조를 만났더라면 그들은 아마 우두문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절강의 조류는 음력 16일 오후에 썰물의 정맹(正猛, 만조 8분 혹은 썰물 8분 시의 기세)시이기 때문에 표류선은 역류하여 "문"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동풍과 썰물 중의 "회류(回流)"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으로의 진입은 할 수 없었고 급류를 타고 북쪽의 금목사 해만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4) "삽시간에 두 섬 사이에 이르렀다. 해안을 살펴보니 중선 6척이 열을 지어 정박하고 있었다."⑦ 금목사 해만을 살펴 보면, 동쪽에 대계(大鷄), 소계(小鷄)라고 하는 두 섬이 있다. 이곳은 오래 전부터 배를 정박한 곳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최부의 표류선이 도착하기 전에 중선(中船)6척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지 주민에 의하면, 폭풍 시 근처의 선박은 우두문으로 대피 하든가, 문 밖의 우두궁, 금목사 해만에 정박했던 것이다. 이 두 섬이 대계산과 소계산인 것이다.

5) 북에 산이 있고, "이 산에 샘이 있고", "산에 올라 살펴보니 인가가 보인다 하니, 여기가 육지와 연결된 곳"⑧ 북쪽의 산이 연이어진 우두산이다. 산의 토질이 좋아 수림이 무성하고 지금도 샘이 있다. 산의 정상에 올라 바라 보니, 아름다운 평지가 보이는데 적감 등의 농촌이다.

6) "처음 배를 매어둔 곳이 사자채의 관할지다." (아래에 상술)

7) 17일, "배를 버리고 상륙... 비를 무릅쓰고 밀림을 뚫고 몰래 도주하였다. 고개 둘을 넘었다. 고개는 모두 밀림지대였고 용도(甬道)처럼 돌이 있었다."⑨ 명대에는 우두산의 3면은 바다였고, 한 면만이 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금목사에 상륙한 후에는 반드시 북쪽 길로 가야만 하는데, 즉 금목사령과 해오강두령을 넘어야만 한다. 이 두 고개는 세로로 늘어서 있었는데, 그 동쪽은 모두 밀림지대였다. 금목사령 북쪽 비탈길에 과연 용도처럼 돌이 있는 데,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렀다.

8) 양 고개를 지나, 6,7리 지나니, 한 마을이 나타났다.⑩ 양 고개를 지나, 전후양에 바로 도착했다. 이 곳에서 옛 길을 따라 해안 첫째 마을인 연강촌에(아래에서 설명할 계획)에 도착했는데, 표해록에서 6,7리 라고 기술되어 있고, 민국의 임해현지 육로(臨海縣志 · 陸路道里) 편을 보면 5리9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기록이 부합된다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해 보면, 당시 최부의 정박지, 즉 상륙장소는 지금의 삼문현(三門縣) 연적향(沿赤鄉) 금목사 해만(金木沙海灣)이다.

3. 사자채(獅子寨)에 대해서

표해록에 "처음 배를 매어 놓은 곳이 사자채 관할지"라고 기록되어 있다.⑪ 우두양 서쪽 해안 및 인근지역을 살펴 보니, 채를 세웠던 곳이 3곳이다. 즉 (1) 우두산의 서북쪽 기슭, 거대한 입처럼 횡으로 벌어진 산의 바위로 속칭 사자구(獅子口), 옛날부터 수채(水寨)라 불린 곳으로 아직도 채후문(寨后門)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이하 수채라 간칭) (2) 어서의 포대산, 속칭 사자산으로 명 만력5년, 즉 1577년의 이포어서정씨종보 및 거리산천기(浬浦漁西程氏宗譜 · 居里山川記)의 기록에 의하면 무곡령, 정동 산상에 다섯 개의 죽순이 우뚝 솟아 있는데, 오지봉(五指峰)이라 부르며 대씨(戴氏)의 오두막 집이 그 밑에 있다. 임씨(林氏)는 바로 그 옆에 거주하고 있다. 과거 일찍이 여기에 채를 세워 방어를 한 바, 오르는 산 마루를 백로강(白露崗)이라 일컫고, 위에 봉화대가 있어 군관이 해마다 숙박하며 왜구를 망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하 오지봉이라 칭함) (3) 이포진구 동남쪽 사자산 동쪽의 한 켠에 적감, 민국의 임해현지 육로 편에 의하면 적감범의 거리는 서남방향으로 대역영(大域營)까지 4리 5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범(汎)과 영(營) 모두 군사설치물이다. 적감에는 이미 소위 채부(寨部)가 있었다. 이 곳은 바닷길의 요충지로서 우두문과 당두채(현 관두, 아래에서 고찰) 간의 전략요충지였다.이상 3곳으로, 표해록에서 언급한 사자채는 대체 어디일까? 필자는 사자산 적감채가 응당 사자채라고 생각하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사자채는 산의 이름을 따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자산 부근에 위치했을 것이다. 우두산의 서북 기슭, 어서의 포대산은 바로 이른바 사자구이며, 이 곳의 사자산은 진정한 사자산은 아니다. 이포진구 동남쪽에 위한 산을 명대 이후부터 줄곧 사자산이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지도상에도 분명 표시되어 있다.

민국의 임해현지 병방(兵防)편은 명대 도저천호소에 12개의 봉화대가 있는 바, 그 중 하나는 사자채에 있었다고 소개하였지만, 사자산은 영해현 90리에 우두산 근처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 원래의 주(注)다. 광서의 영해현지에는 무곡령 하향산은 임해현 동남 70리에 소재, 민국의 임해현지 육로편에는 무곡령에서 이포범 16.4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포에서 사자산까지는 3리 여, 그래서 70리, 16.4리, 3리 여를 합하면 "영해현 90리" 이며, 우두산 근처까지는 약 18리다. 우두산 서북 기슭, 어서의 포대산은 "영해현 90리" 가 아니며, "우두산 근처" 도 아니다. (우두산 서북 기슭은 본래 우두산 지맥에 속해 있으며, 어서의 포대산과 우두산은 바다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육로는 약 40리) 명대 이래의 사자산은 분명 아닐 것이다.

2. 당시 최부의 선박의 정박지와 상호 실증이 된다. 1488년 윤 정월 16일 오후, 최부의 표류선은 우두외양에 정박한다. 그리고 17일 배를 버리고 상륙한 후, 두 개의 고개를 지나고 6,7쯤 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이미 늦은 시간에 ⑫ 식사를 하게 된다.

이를 보면 배를 버리고 상륙한 때는 오후가 될 것이다. 즉, 최부 일행 43명은 우두외양의 정박지에서 온전하게 하루 낮과 밤 이상을 보냈던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비록 비 바람이 동시에 몰아쳤다 하더라도 변방을 지키는 병사가 외국 표류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과 43명이 상륙 후 두 고개를 지나고 6,7리까지 간 후, 사람이 많은 마을에 진입토록 했으니, 당시 최부의 정박지, 즉 금목사 해만 혹은 그 근방에 사자채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수채(水寨)가 사자채일 것이라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이유는 소위 수채와 금목사 해만은 우두산 서쪽 혹은 우두산 동쪽 혹은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자채의 수채관은 적의 귀를 잘라 공훈으로 삼았을 것이다. 즉 병사를 인솔하여 최부 일행을 붙잡아 참수했을 것이다. 만일 수채가 사자채라면 왜 채(寨)를 지키고 있는 관병이 이국의 표류선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째서 최부 일행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사람이 많은 마을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

동일한 이유로 당시 최부 선박의 정박지가 오지봉채(五指峰寨)인근의 호문공(虎門孔)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두산 동쪽 기슭의 금목사 해만이 정박지라는 점은 더욱 더 확실해진다.

사자채의 관병이 당일 최부 표류선 및 그 이튿날 상륙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부 보다는 좀 늦더라도, 사람이 많은 마을, 즉 연강촌에 바로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사자채가 우두산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오지봉채가 사자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지봉채와 우두산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주 바라보고 있으며, 육로로는 40리이기 때문에 우두산 근처는 아니다. 이렇다면, 우두양 서쪽 해안 및 부근 구역에 설치했던 채(寨)의 4곳 중 사자산 적감채(赤墈寨)만 남게 된다. 우두산 근처의 노상에서 연강촌 적감과 우두산 사이를 살펴보면, 동남 방향으로 우두문까지 5.9리, 서쪽으로 적감까지 9.5리이기 ⑬ 때문에 최부는 오래지 않아 연강촌에 도착하였고, 사자채의 관병이 즉시 그 곳에 도착했던 것이다. 종합해 보면, 표해록에서 언급한 사자채는 당시 사자산 적감채이다. 후에 적감범(赤墈汎)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사자채라는 이름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4. 최부가 상륙 후 진입한 첫 번째 마을

마을은 농촌이다. 필자는 최부가 상륙한 후 첫 번째 들어간 농촌이 연적향 연강촌으로 아래에서 고찰해 보겠다.

1) 노정 거리는 기본적으로 부합이 된다. 표해록에, 최부가 상륙한 후 두 고개를 넘고, "6,7가량 가서 첫 마을에 도착", "저녁무렵, 그 마을을 떠나서 50여 리를 갔다, 이미 밤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는 바, 이는 선암촌을 지나 유수암(流水岩) 일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⑭ 이쪽에서 해변까지는 6, 7리이며 한편 유수암까지는

선암촌 큰 다리

50여 리로, 중간에 위치한 농촌이 바로 연강촌이다.

2) 연강촌은 우두산에서 모가산 일대 해안의 첫 마을로, 이 일대 해안에 상륙한 후 서쪽으로 가면 반드시 이 농촌을 거쳐야만 한다. 당시 최부의 정박지에 중선 6척의 사람들 말투가 불성실하고 겁탈이 심했으며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⑮ 최부는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일행의 목숨이 그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어, 마침내는 바다의 원귀가 되고 만다고 했다. 그래서 중선(中船)의 사람들이 비를 피해 선창에 들어가고 망을 보는 사람이 없는 기회를 틈타 도주하여, 사람이 많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구조를 받는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연강촌을 우회해서 다른 마을로 갈 수 없는 이유이다.

3) 성씨로 농촌의 역사를 고찰해 보자. 삼문현지의 성씨 편을 보면 연적향의 형(邢)씨는 송 건도(1165~1173)간 승현에서 이주 오에서 들어 왔으며, 다시 형가당, 겸구, 후에 연강으로 이주했으며, 연적 관(管)씨는 남송 건염(1127~1130)간에 복건 포전에서 항해, 이주했고, 이포부두 왕씨는 단 건부(874~879)간에 복건 포전에서 이주, 후손은 노상, 심가왕, 연강 등지로 옮겼다. 최부가 연강촌에 당도한 때는 오래 전이고, 그 마을은 많은 성씨가 취거(聚居)한 큰 농촌이었기 때문에, 마을에 도착한 최부 일행을 마을 사람들의 남녀노소가 몰려들며 괴이쩍게 바라봤던 것이다.

4) 표해록에 마을 앞에 불당이 있어 불당에서 젖은 옷을 바람에 말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유구한 옛 마을, 불당, 신사 등은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 현재 연강촌 앞에는 몇 번 보수된 불당이 있다. 복진당이라고 부르며 사당(社堂)이라고도 한다. 남향으로 북쪽에 자리 잡은 7 칸의 전각이 있고, 제법 큰 정원이 있으며 앞에는 무대, 중앙에 큰 문, 사방에 담이 두르고 있다.

최부가 상륙한 후, 첫 번째로 들어간 마을이 바로 연강촌임이 틀림 없다.

5. 야간에 왕을원(王乙源)을 만난 언덕

표해록 17일 자에, 해질 무렵에 최부 일행은 첫 번째 마을을 떠나 야반(밤 12시가 넘은 18일)에 높은 언덕과 소나무 대나무 숲 속을 지난다. 우연히 은유(隱儒, 초야의 선

비)라고 자칭하는 왕을원(王乙源)이라는 자를 만난다. 쏟아지는 비속을 밤새도록 걸으며 구솔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최부를 가련하게 여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저지하며 잠시 쉬도록 하였다. 을원은 술을 가져와 최부에게 권하였다. 최부는 자신이 상을 당했다며 술, 고기, 양념이 들어 있는 음식과 단 음식을 들지 않는다고 하자, 을원은 차로 최부를, 종자들은 술로 대접하였다. 떠날 때, 을원은 최부의 손을 잡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이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행운의 만남이었다. 필자가 답사해 보니, 이 높은 언덕은 현재 삼문현 이포진의 노상촌에 있었다. 표해록에 당시 최부 등이 갔던 곳은 분명 서리당이며, 노상촌은 바로 연강촌에서 서리당으로 가는 도중의 마을로서 반드시 거치는 곳이다. 노상촌은 높은 언덕에 있으며, 그 외 부근의 촌락 어느 곳도 소위 높은 언덕이 없었다. 다시 말한다면 노상촌은 왕씨 성의 취락지이며 인근에 있는 부두촌과도 동성동본이다. 과거 이포 일대가 바다였을 때, 부두촌은 선박이 정박하는 부두였던 것이다. 다만, 당시부터 훌륭한 가문이 있었으며, 이른바 부두부(埠頭府)라는 호칭이 이어진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은유나 관리가 있었다는 모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왕을원은 평범한 백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과 아수라장의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관리에 의해 체송 당하고 있는 외국인 43명을 잠시 쉬도록 했으며 또한 차를 접대하고 그와 담화를 했던 것이다. 이로 보아 그는 마을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나 명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가 담력과 식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법이 지엄하고 법도가 매우 엄하여 누설을 하는 경우 충군이라는 벌을 받는 항왜 시기에, 그가 왕을원 이라는 이름을 알린 것은 반드시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부두 왕씨 족보를 살펴 본 즉 왕을원은 없었으나, 그 당시 두 사람에 관해 고려해볼 가치는 있다. 그 하나로 제 25세 손으로, 이름이 기숭, 호 개정, 적공랑을 지내면서 여러 번 관직 시험에 등제하지 못하다가 성화 2년, 즉 1466년에 납부리 후보직에 올랐다. 두 번째는 제 25세 손으로 이름은 기헌, 호는 덕시, 읍상(명, 청때 현의 학교)생도로 벼슬이 신통치 않다가 86세에 생원이 되어 학생들을 훈도하였다. 생도가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최부가 높은 언덕, 즉 당시 노상촌에서 왕을원을 우연히 만났으나, 왕을원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6. 서리당(西里堂)과 선암리(仙岩里)

표해록에 17일 자에, 최부일행이 상륙 후 한 마을에 들어갔다. 마을 앞 불당에서 어떤 두 사람은 최부에게 일어나라며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최부가 그 지명을 묻자 서리당이라고 답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상륙 후 표해록에서 기록된 첫 번째 실지 지명이었고 오늘날도 지역 이름은 마찬가지며 삼문현 이포진에 속해 있다.

서리촌은 서리당으로도 불린다. 송조 가정의 적성지 주경(赤城志 · 州境) 편을 보면 해당 마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서 서례(西禮)라고 부르고 있는 바, 예(禮)와 리(里)는 발음상 동음이다. 이포(浬浦)의 서쪽에 있고 거리가 불과 2리이기 때문에 서리로 개칭하였다. 즉 이포 서쪽에 있는 농촌이다.

선암리는 서북쪽에 선암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따온 것이다. 적성지 주경편에 역시 그림으로 그 농촌이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는 이포진에 속해 있다. 표해록 18일 자에, 날샐 무렵 그 마을 앞을 지나며 마을에 큰 다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행은 그 마을에서 곤장으로 마구 맞고 말 안장도 겁탈 당하였다. 당시 그 지역 주민은 국경을 침범한 왜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23일 귀국 길에 다시 그 마을 지나면서 말의 안장을 되찾았다. 50미터로 이곳 신선이 팠다는 전설로 선암동이라고 불린다. 진나라 때부터 건축한 법운원은 송조에 와서 백화청동으로 개칭되었다. 송 덕우 2년, 즉 1276년에 우승상 문천상은 진강에서 원 병영을 탈출하여 통주까지 배를 타고 남하하면서 묘두양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쫓아오는 군대를 발견, 배로 우두문으로 이동, 선암항으로 진입한 후 선암동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후세 사람들이 이 곳에 문신국공대충사를 건립하였다 한다.

7. 포봉(蒲峰)과 당두채(塘頭寨)

표해록 18일 자에 날이 샐 무렵, 포봉리에 도착, 비가 잠시 그치다, 한 관리가 군리를 인솔하고 왔다, 신이 관인에게 성명과 직책을 물어보자, 왕괄이라는 자는 그가 해문위 천호 허청(許淸)이고, 당두채를 수비하며 왜인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말을 듣고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포봉은 선암에서 당두채로 가는 길에 있으며, 현재도 이름이 그대로 이며 삼문현 화교진에 속하고 있다. 황씨 성을 가진 촌민, 그의 선조는 송의 효종(1163~1189)때에 영파 여요에서 태주 유천으로 이사했으며, 그의 자손이 포봉으로 옮겼다.

허청은 최부가 상륙한 후 처음 만난 중국 관원이다. 그는 당두채를 수비하는 자인데 어찌해서 포봉에서 최부를 만났을까? 한편 고도의 해안 방어의식을 갖춘 해안 주민들이 최부 일행이 국경을 침범한 왜구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을 좌우로 에워싸고 차례차례 체송시키면서 관에 도착, 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다른 방면에서 사자채를 수비하던 병력이 최부 일행이 사람이 많은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마병을 보내 왜구가 국경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당두채와 도저소에 알렸다. 보고를 받은 허청은 즉시 군리를 인솔하고 당두채를 출발, 포봉으로 가는 최부 등 43명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두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표해록에 포봉에서 5리 가량 가면 관아, 즉 당두채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최부 등을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는 도저소가 틀

림없었을 것이다. 포봉에서 출발, 도저로 가는 방향으로 5리 가량 되는 곳은 현재 화교진의 관두촌이다. 오늘날까지 그 촌 뒤에는 아직도 옛 채(병영)의 유적이 남아 있다. 지금의 관두가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당두라고 불렀을까? 원래 해안가 옛날 마을이었던 그 곳은 제방을 축조한 간척지인 바, 그 마을 북쪽이 제방(堤塘)의 한쪽 끝이었기 때문에 당두라 불렀고 채도 마을 이름으로 명명, 자연스럽게 당두채가 된 것이다. 표해록에 최부 일행은 당두에 도착하면서 하나의 긴 제방을 지났는데 10여 리가 될 성 싶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도저소로 갔으니, 확실한 증거이다. 그 후 어떤 이유로 당두가 관두로 개칭되었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마을은 해변가에 있었다. 마을 뒤편에 해발 362미터의 관두산이 있는데. 촌락의 옛 커브 길이 마침 산 입구에 나있고, 또한 그곳이 천연 관문 요충지이기 때문에 채를 설치했던 것이다. 청조 광서(1875~1908)년간까지 이곳은 여전히 군사주둔지로 남아 있었다.장기간에 걸쳐 변방 관문의 군사적 위치와 그 영향으로 이전의 제방의 명성은 묻히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며 점차 당두(塘頭)가 관두(關頭)가 되고 채 역시 그에 따라 관두채로 개칭되었다.

이 기회에 지적할 것이 있다. 포봉에서 당두(현 관두)까지, 지금의 거리는 정확히 5리이다. 이를 봐도 최부의 표해록 기록은 진실한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최부 등이 변경을 침입한 왜구로 의심받아 도저소까지 체송, 심문을 받은 것이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나, 그의 실시간 기록도 중요사이다. 측량공구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나간 노정의 거리를 이처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실로 놀랍기 그지 없다.

이외에도 당두채가 도저천호소 소속, 도저소가 해문위 소속이며, 허청이 해문위 천호라면 무엇 때문에 당두채를 수비했을까? 이를 보면 왜환(倭患)의 비상시기에 상급 군사기구의 관원이 친히 전선에 가서 주둔하며 그곳의 지휘체계를 보강한다든가, 명의 당두채 지위가 중요하다는 것 등, 명 홍치 초년의 공무집행의 좋은 일면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문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8. 오도, 안성사(安性寺) 및 두독장

표해록 18일 자에, 최부 등은 당두에서 긴 제방을 지나, 10 여 리, 두 고개를 지나니 30 여 리에 마을이 있으며, 매우 번창하고, 앞에 절이 있다, 또한 해질 무렵에, 한 큰 고개를 지나, 밤 2경에 한 냇가에 당도, 계속해서 3, 4리쯤에 성곽으로 둘러싸인 큰 집이 있어, 관문같아서 물어본 즉 두독장이라 했다. 도저소 혹은 비험소라고도 했다. 성내에 안성사가 있어 최부 등은 그 절에서 묵도록 허락을 받았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단적으로 말한다면 최부 등은 당두를 출발하여 상륙 후 첫번 째 숙박지인 안성사(安性寺)에 당도했다.

송 가정 적성지의 임해현지 권35, 사원 편에, 안성사는 현의 동쪽 170리에 있으며,

옛 명은 신안, 후진 천복 4년, 즉 939년에 건축했다. "송 치평 3년, 1066년에 이름을 고쳤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해당 지(志)인 태주부지에 "청 순치(1644~1661)간에 해경이 유기(遺棄)하였으며, 강희(1661~1722)때 스님, 진연이 중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최부 등의 목적지는 도저소였다. 답사 결과 당두에서 도저소까지의 옛 길가에 역사상 안성사가 확실히 존재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절은 현 삼문현 소웅진 산장촌 동북쪽, 상산 남쪽 기슭에 있었다. 옛 절은 이미 일찍이 폐허가 되었지만, 어렴풋이나마 유지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었다. 다만 성곽으로 둘러 싸인 큰 집이 마치 관문 같았다 라는 최부가 기록한 바의 유적은 찾기 어려웠다.

산장 가씨 족보에, 산장은 태주의 마을 이름이다. 해대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한 평산(平山), 광야와 수려한 산맥이 펼쳐져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안성사는 그 마을의 10경 중의 하나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죽림(竹林) 깊은 곳에 선방(禪房)이 자리잡아, 스님의 염불이 밤새도록 끝이 나지 않는구나. 108번의 만종이 꿈을 어지럽히고, 은은한 종소리가 산 넘어 퍼지고 있다.*" 라는 안성종성(安性鍾聲)이라는 시가 있다.

다음으로 "당두에서 산장 사이에 있는 하나의 큰 고개와 고개를 넘기 전에 매우 번화했고, 앞에 절이 있었다"라는 기재에 대해 살펴 보겠다.

원래 당두와 산장 사이에 연면해 있는 주산은 장대산으로, 해발 높이 470미터이며 3개의 길이 나, 고개를 넘으면 바로 산장에 이른다. 갱령(坑嶺)을 따라 서쪽 길이 있고, 화교촌(구 성문)을 지나면 상령 (上嶺), 하령(下嶺), 넘은 후 상동촌을 지나 산장에 이르고, 가운데 길, 작은 고개를 통해 화교를 지나면 상반촌, 다시 상령, 후령을 넘은 후에 대오촌을 지나면 서쪽으로 산장에 이르며, 오른 쪽 길 오도령은 오도촌을 지나, 상령, 하령을 넘은 후에 대오촌을 지나면 동쪽으로 산장에 이른다. 필자가 태주 해안 지역을 고찰해보니, 주민들이 대체로 먼저 산상에서 산 기슭으로, 다음에는 점차 평원으로 개척하며 이주하였고, 일부는 폭풍을 만났거나 혹은 난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를 항행하여 이주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서향(西向)의 옛 길이 가장 먼저 개척되었다, 정부는 취거(聚居)를 이루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 길을 낸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서 구불구불한 길이 똑바로 개수되어 가장 편리한 도로로 변모되었는데, 이는 황무지를 개발하고 경제가 발전 된 후였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 바탕으로 당시 최부가 지나갔던 이른바, 큰 고개는 바로 오도령이며, 마을이 매우 번창하고 앞에 절이 있었다는 그 곳은 오도촌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삼문현지의 군사시설(軍事施設) 편에, 오도채는 송 가정 15년, 즉 1222년에 건설되었고 병사의 수는 120명이라 기록, 또한 동지 무장설치 편(武裝建置)에 명 홍무 3년(1370) 후 오도는 순검사(필자 주: 명 회전에는 홍무 26년, 즉 1393년 후에 설치)를 둔 바, 순검 1명, 순라선 한 척, 활 사수 35명을 두고 왕래하는 상인과 여행객을 검사하고 도적을 순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장은 송 희녕 5년, 즉 1072년에 세운 두독염비험소

(이하 설명)에 설치, 시장이 형성되어 오도와는 일찍부터 필히 통로가 있었을 것이다. 이 옛 도로가 오도령이며, 이로 인해 북쪽의 오도촌의 이름이 유래되었을 것이다.

2) 표해록에, "한 큰 고개를 지나, 앞에 마을이 있고, 매우 번창하며, 앞에 절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갱령을 따라 서도(西道), 중도 작은 고개 그리고 그 북쪽 언덕 아래, 즉 상령 앞에는 모두 역사적 흔적이 없고 오도령의 북쪽 언덕 밑, 즉 오도촌은 기록과 일부 부합된다. 바꾸어 말한다면 마을이 있고, 매우 번창하며, 앞에 절이 있다는 곳은 현 화교진의 오도촌이다.

3) 당두에서 오도촌까지 긴 제방을 지나고 10 여 리, 또한 두 고개를 지나 30 여 리에라는 표해록의 기재는 노선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이정 역시 부합된다. 그 사이 양 고개는 바로 지오령과 영남령이다.

4) 오도령을 지나, 한 냇가에 도착했다는 이 냇가는 바로 대오촌의 시냇가이다. 이 시냇물은 동항에서 산장의 시내로 모두 유입, 바다로 나간다. 계속해서 3, 4리 가면 산장 안성사에 도달하게 된다. 표해록의 기재는 현지 실정과 완벽하게 부합된다.

다시 두독염장을 살펴보자. 당시 최부는 산장까지 당도하여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니 두독장, 도저소가 보이고, 혹은 비험소라 했다는 구절이 있다. 사실 산장과 도저소는 두개의 산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근본적으로 도저소가 보일리 만무이다. "도저소가 보인다"라는 말은 가깝다, 즉 멀지 않은 곳이라 볼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이 마을과 도저소의 거리는 실로 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장, 성곽으로 둘러싸인 큰 집, 마치 관문의 구절에 성 내는 필경 두독장일까, 아니면 두독장의 비험소일까? 분명히 말할 수 있거니와, 이는 비험소이다. 이유인 두독장 관아는 현재 임해시 도저진 북간촌에 세워졌으며, 거리로 보면 산장과 산 하나 간격이다. 지리 방향은 북간은 산장의 동남,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도저성은 북간의 남쪽, 마찬가지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고개는 높지 않다.

양절염법지(兩浙鹽法志)의 태주부지 제 8권 과세표(課稅表)에, 두독장, 장은 현 동북 120이에 있으며, 희녕 5년, 즉 1072년에 건설. 소(所)가 장(場)지 관할. 동으로 바다와 경계, 서로 분수령과 경계, 남으로 해문위와, 북으로 황이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 85리. 도표에, 두독장은 임해현 승은향에 있으며, 과거에 해수가 팽창되며 유입되어 수로가 생겼는데 독(瀆)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송 희녕 5년에 동양염라 라는 곳, 지금의 북간에 설치했다. 명은 염과사를 두었고 국조(청조) 강희 3년, 즉 1664년에 황암장에 합병, 옹정 6년, 1728년에 다시 설치, 관아는 도하교에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1987년 여름 북간촌 왕씨는 선조인 왕훈(1255~1319)의 묘비를 발견한 바, 승사랑 두독장염사령 범영조가 휘(諱)를 기(記)하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 역시 하나의 증좌다

양절염법지(兩浙鹽法志)의 태주부지에, 두독장은 소금을 생산, 임해, 천태, 선거의 3현을 제외하고 금소의 동양, 영강, 무의, 처속의 진운, 전뢰에 판매했다. 잔여 소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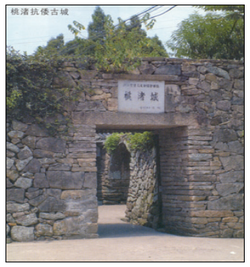

도저고성

사포로 운송, 분배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해록에 기재된 산장의 두독염장 비험소는 두독장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비험을 거친 후 각지로 운송했으니, 두독장(북간)에서 산장(비험소)까지 오래 전부터 통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최부가 거쳐간 곳이 바로 도독장의 소금을 운송하던 고도(古道), 즉 서령, 탑령, 18용령을 거친 후, 북간 그리고 다시 도저성에 도착했던 것이다.

반드시 지적할 사항으로, 최부가 언급한 비험소는 당지의 부지(府志)는 물론, 현지(縣志)에도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바, 표해록은 이와 같은 문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실로 사료가치가 충분하다.

9. 도저성(桃渚城)과 도저천호소(桃渚千戶所)

표해록 19일 자에, 19일 고개 하나를 넘고 20여 리를 가니, 한 성에 도착하였는데, 해문위 도저소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성은 바로 도저성이고, 도저 설치물은 해문위의 천호소에 예속, 그 소(所)의 관아는 도저성 내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소로 불렸다.

최부가 상륙한 곳은 당시 행정 구역상 임해현 20도이고, 군사 편제상 도저 천호소의 관할지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국경을 침범한 왜구로 의심을 받아, 체송된 후 도저천호소에 도착, 심문을 받은 것이다.

삼문만과 태주만 사이에 위치한 도저는 옛날 태주의 해상의 요충지였다. 즉 바다에서 상륙하면 곧바로 태주부성의 전략 요충지로 향하게 된다. 명 조정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홍무 17년, 즉 1384년부터 북으로는 산동, 남으로는 절강 연안에 이르기까지 전략 요충지에 축성을 하였다. 도저성은 명 정통 8년, 즉 1443년에 호부우시랑 집굉친의 감독하에 건축하였다. 당시 절강 동남 해안에 41 위, 소를 가진 성의 하나였다.

태주부지 51권 시설물 편에, 도저성은 임해현 33도(都)에 위치하며 해문위 동북쪽으로 50리, 성의 높이가 2장 1척, 둘레가 2리 70보고, 명나라 정통 8년(1443)에 건립되었고, 동남방향으로 소(所)의 앞까지 40리, 북쪽의 건도까지는 100리, 서쪽의 부성(府城)까지는 120리다. 삼면이 산이고, 한 면이 바다에 임해있어 실로 웅장하다 라고 기록되

어 있다. 성곽 위에 11개의 망대(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성 밖에 해자(護城河)가 있다. 최부는 이 성이 세워진 지 45년 밖에 안되었을 때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척계광(戚繼光)이 이곳에서 왜구와 맞서 싸운(명 가정 38년, 1559년)때보다 71년이나 이르다. 그가 본 것 역시 원래 모습 그대로의 도저성이다. 표해록에 "한 성에 도착하였는데, 그 성에는 중문이 있고 문은 철로 되어 있다. 성곽위에는 성을 수비하는 초소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성안에는 점포가 즐비하였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물자가 풍부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그 중, "성곽위에는 성을 수비하는 초소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는 가정 40년(1561) 형부상중 하총(何寵)의 도저성 신건적대비기(新建敵臺碑記)에 성 위에 망대가 있고, 망대 위에 누각이라는 기록과 부합된다. 이것은 최부가 떠난지 73년 후 도저성의 대략적인 면모가 여전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성에 중문, 성 안에 점포가 연락한다는 것도 지금의 도저성과 비슷했음을 말해 준다. 500년이 지났지만 옛성은 여전하고, 다만 사람과 물자가 전보다 더 번창할 뿐이다. 표해록의 기록은 도저고성에 관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도저성이 기본적으로 과거 도저성의 역사적 본래 모습임이 확실하다. 장차 도저성의 역사와 문물적 가치가 진일보될 것이다. 2001년 도저성은 국가 급 문화재로 발탁되었다.

최부는 도저성의 개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였을 뿐만아니라, "그곳이 해문위의 도저소였다" 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민국의 임해현지 제9권 병영편제 편에, 명 홍무(1368~1398) 초 태주위를 설치 군성(郡城)을 방위케 하고, 해안에 송문위, 해문위(전천호소, 신하, 도저, 건도 등 4 천호소를 관할) 를 특설, 송, 해비왜파총에 소속, 관할케 하였다. 군정에 대해서는 위의 지시를 받고, 위 예하에 천호소, 천호는 백호를 감독, 백호 예하에 총기, 소기를 두었다. 명 조정의 군대는 위, 소의 편제로, 대략 112명이 백호소, 장(長)을 백호라 했고 1120명은 천호소, 장을 천호, 5600명은 위, 장을 지휘사라 했다. 도저는 일게 천호소로 해문위에 속하였다.

명사 · 지리사의 태주부지(台州府志)에, 도저천호소… 홍무 20년, 즉 1387년 9월 설치, 성의 높이는 2장 5척, 둘레는 3리 50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음 설치된 도저 천호소는 현재 도저성에 있지 않다. 명 왕회의 도저천호소천성기(遷城記)에, 도저는 해문위에 속하고, 성은 해변가 절벽 정상에 위치한 바, 장소가 궁벽지고 험하며, 적의 표적이 쉽게 될 수 있고, 또한 조류가 급격하여 잠시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번헌 및 도사를 소집, 10리 내륙으로 옮기도록 했다. 고증에 의하면 도저천호소는 명 홍무 20년 9월 소위 해변가 절벽의 정산에 처음 설치 되었는데, 위치는 하구성(下舊城)이며, 10리 내륙으로 옮겼다는 위치는 중구성(中舊城), 명 정통 8년, 즉 1443년에 이르러서야 상구성(上舊城), 즉 도저성으로 옮겼다. 명대 형부낭중 하총재의 신건적대비기(新建敵台碑記)중에, 도저는 대대로 왜환(倭患)을 겪었다. 이 때문에 3번이나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표해록의 기록은 역사 사실에 부합될 뿐만아니라 유관 지서(志書)에 결여된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인사(人事) 상황, 즉 파총송문 등의

비왜지휘인 유택, 도저소 천호인 진화, 백호인 유춘, 건도소 천호인 이앙, 당두채 수비는 해문위 천호인 허청 등등이 기재되어 있다.

도저성에서 최부 등은 처음으로 중국관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심사 후, 조선의 우방인으로 판명되었다. 침략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를 갖추어 대접하고, 북경으로 전송, 본국으로 환국케 한다고 결정했다. 그 동안 최부 일행은 도저 군민의 환대를 받으며 도저 군민과는 지필묵을 이용 필담으로 대화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그들은 23일 도저성을 떠나 귀국길의 장도에 올랐다.

도저는 최부 표류의 중대 전환점이 되었다. 우선 14일 주야간 광풍의 바다에서 생사기로를 넘나드는 처절한 표류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들에게 도저는 표류의 종점이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중국의 연도를 관람하며 조국으로 생환하였으며, 처음에 변경을 침입한 왜구로 의심을 받다가 빈객으로 환대를 받으며 그들의 신분이 밝혀진 곳이 도저이다. 즉 환국의 기점이기도 하다. 당시 도저는 항왜의 해안 방어 전선으로 최부 일행이 갑자기 외부에서 표착, 언어 불통, 다른 의관 때문에 군민으로부터 왜구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비록 고도의 해안 방어 의식은 갖추었지만, 실사구시적인 도저의 군민은 소위 선참후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협은 가했지만 연민의 정은 있었다.그들의 신분이 밝혀진 이후, 열렬한 환대를 하며 그들을 전송하였다.

중, 한 우의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2006년 2월 15일, 즉 최부가 표류한지 518년 후, 한국의 탐진 최씨 후예, 최부표해록기념사업회, 최부의 고향인 한국 나주시의 경제원조로 도저성리촌에 최부표해록 중한민간우호비와 비각을 건립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기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중,한 민간우호의 왕래는 물론, 전통적 우의를 증진시켜 나아갈 것이다. 최부와 도저성의 역사적 가화(佳話) 는 현재 대륙과 한반도간의 교량이 되고 있다. 한 줄기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겠는가!

10. 두 곳의 고개와 세 곳의 하천 및 감계(鑑溪)

표해록 23일 자에, 그들은 도저소를 떠나 산장과 오두 두 고개를 넘었는데 고개 사이에는 3개의 큰 시내가 있었다. "오두 고개 밑에 감계가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태주 북부 연해일대에 있는 고개(嶺) 이름을 살펴 봤다. 대다수가 고개를 넘은 후, 그 기슭의 농촌 혹은 부근의 큰 농촌의 이름이 통과한 고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예를 들어 산장 방면에서 고개를 넘어 오도 방향으로 가면 바로 오도령이고, 반대로 오도 방면에서 고개를 넘어 산장 방향으로 가면 그 고개는 산장령으로 바뀌게 된다. 사실 산장령과 오도령은, 이름은 다르나 같은 고개인 것이다, 즉 고개의 남쪽은 산장이고, 고개의 북쪽은 오도다. 오도령이 바로 18용령이다. 고개마루 동쪽은 아관산(鵝冠山)의 6봉두로, 아두(鵝頭)를 오두(烏頭)로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오두령 명칭의 유래가 오두에서 오게 된 것이다. 현재 18용령은 임해시와 삼문현의 경계를 이루는 고

개의 하나이다. 즉 북은 삼문현이고, 남은 임해시다.

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기 마련이다. 오두와 산장, 양 고개간의 3개의 큰 시내인데, 남에서 북으로 제 1천, 즉 오두령 이남, 6분산 이북의 시내로 북간계로 불리며(약칭으로 간계, 고명은 양계로 다리는 북간 8경의 하나로 양교과홍)지금의 북대하로 유입, 동항을 거쳐 바다로 빠져 나간다. 제 2천, 즉 오두령 이북, 산장령 이남의 시내로 산장계라 불리며 옛 이름은 감계다. 현 삼문현 6개 산의 계곡 물의 하나로 역시 동항을 통해 바다로 나간다. 제 3천은 산장령 이북, 관두산 이남의 시내로 화교계다. 역시 계곡물의 하나로 포파항으로 유입, 우두문과 백대문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 간다.

감계는 현재의 산장계로 산장 가씨 족보에 두 구절이 나오는 바, "가씨의 땅은 풍요하며, 기풍은 순박하다. 동굴은 조양, 시내를 감계, 다리는 가교, 산은 대웅이라 불린다"가 한 구절이고, "송의 뇌공은 임해인으로 자는 인보, 송의 신동과에 들어 갔으며, 태학을 졸업했으며, 임해교수의 벼슬 받았다. 성품이 돈후(敦厚)하며, 원나라 때는 만년에 동곡에 은거 감계서원을 세워 마을의 자제를 가르쳤다. 대대로 그의 품격이 전해져 지금은 감계선생이라 불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11. 후정전(后鄭殿)과 천암리(穿岩里)

표해록 23일 자에 도저소에서 이곳(필자 주: 이곳은 후정을 지칭)까지는 최부가 전에 끌려서 지나갔던 곳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도저성에서 후정까지 그들은 원래의 오던 길을 따라 되돌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두와 포봉 등지를 지났다. 밤이 되어 길가의 불당에 유숙하였는데, 그 앞 마을이 바로 선암리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들은 도저성을 출발, 포봉을 지났지만 선암까지는 도착하지 않았다. 이유는 밤이 되었고 그 앞 마을이 선암리라 선암에사 가장 가까운 길가에 있는 불당에서 유숙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답사를 해본 결과 이 불당은 바로 현 삼문현 이포진 후정촌의 후정전이며, 최부 일행이 귀국하는 여정에서 첫 번째 숙박지이다. 몇 차례 보수된 옛 건물은 상존하고 있으나, 하마터면 먼지로 뒤덮였을 것이다.

표해록 24일 자에, 새벽에 천암리를 지났다. 마을 서쪽에 있는 산으로 석벽이 높이 솟아 있고 아치 형의 큰 구멍이, 마치 무지개 문처럼 보였는데 마을 이름이 이 때문에 얻어진 것 같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1989년 판 임해현지의 성, 마을 행정구획(城鄕行政區劃) 편에 의하면 천암리는 명대에는 임해현 19도에, 청대에는 임해현 승은향 황형탄장에 속했다. 위치는 임해현과 영해현의 경계로 현재는 삼문현 이포진에 속해 있다. 1957년에 334만 임방미터의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가오 저수지(즉 황형탄 수고)를 건조했기 때문에 주민 모두 이주를 하여 마을은 있지 않았다.

세상사가 벽해상전(碧海桑田)이지만 산하는 의구(依舊)한 법. 최부가 기록한 천암

리 서쪽 산, 바위, 동굴이 500 여 년의 비바람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가 설명한 경치는 아직도 예전처럼 지나는 나그네를 유혹하고 있다. 삼문현지 경승편에, 만심동산을 북의 거대한 바위 오른쪽 하단에 작은 천암이 있고, 그 암벽이 마치 성문처럼 서있다.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높이 3미터, 폭 12 미터, 깊이 4.2 미터로 통하는 길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표해록의 기록 중 마을 서쪽에 산이 있다는 기록의 산은 만심동산(万心洞山)이며, 마치 무지개문 같아 보였다 와 매우 큰 구멍의 구멍은 천암동을 지칭한 것이다.

12. 전령(田嶺)에 관해서

표해록 24일 자에, 천암리를 지났다. 다시 전령을 지났는데, 고개위에 절이 길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행인들은 절의 안을 지나고 있었다 라는 귀절이 있다.

당시 최부 등이 앞서 지나간 곳은 건도소이다. 천암리를 지나 건도로 갔는데 그곳에는 옛 길이 두개가 나 있었다. 하나는 동북으로 향하면 오구를 거쳐 전오령(부문령과 이름은 다르나 같은 고개다. 고개의 남쪽은 전오, 북은 부문이다)을 지나게 된다. 부문도구(浮門渡口)에서 건도항을 지나면 바로 건도소에 도착한다. 또 하나는 서북 방향으로 동곽을 거쳐 대택령(동곽령과 이명이나 같은 고개)을 지난다. 사목도에서 건도항을 지나면 또 건도소에 도착한다. 당시 최부가 걸은 곳은 어느 노선이었을까?

도구(渡口)로부터 시작해 보자. 삼문현지의 대사기(大事記)편에, "당 정관 3년, 즉 629년에 건도는 영해수사에 속했으며, 건도와 동관(지금의 상산현 석포진)간에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이 있었다. 또한 남송 건염 4년, 1130년 정월에 고종 조구는 금의 병력을 피하여 장안(章安)의 금오산(金鰲山)에 도착한다. 부문을 지날 때 강에 한 악기를 놓쳤다하여 부문강은 금강(琴江, 현 건도항)이라고도 불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부문은 항(港)을 사이에 두고 건도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건도가 부두, 나룻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도는 일찍부터 배가 왕래, 즉 개발이 되어 이름이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사목도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명대 최부 일행의 입경(入境)을 위와 소는 군사행위로 간주했다. 천호 군리(軍吏) 등 20 여 명이 그들을 도저소에서 건도소로 호송한다. 건도소는 사전에 보고를 받고 건도항을 지나갈 수 있도록 배를 준비했을 것이다. 표해록에 당시 배를 이용한 상황에 대해, "전령을 지났다. 해포에 도착했는데 병선이 무장을 갖추고 포(浦)상하를 순회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수전(水戰)을 방불케 했다. 일행은 거룻배를 이용, 도강하니 바로 건도소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에서의 군사상황, 배로 도강하여 건도소 등의 언급과 건도도구의 사진과 대조해 보면 이는 의심할 바 없이 부문(浮門)이다. 정황상 사목도(沙木渡)는 아니다.

분명 최부는 부문도구에서 건도강을 도강, 건도소에 도착했던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최부가 경과한 전령은 사목도 방향으로 가는 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문도구의 고도(古道)상에 있는 것이다. 또한 전령은 바로 지금의 전오령이다. 구체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암리에서 부문도구로 가면 반드시 고갯길인 부문령, 즉 전오령을 통과한다. 원래, 그 고개는 부문(북에 위치), 전오(남에 위치)로 양 마을간의 산 고개였다. 서쪽 봉우리 위에는 사자두(獅子頭)라 불리는 거대한 암석이 있고, 사자두 동쪽의 밑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을 사자비두(獅子鼻頭)라 불리고 있다. 고갯길은 바로 사자비두의 상하 해발 259미터 지점이다.

2) 부문촌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일찍부터 옛 길이 나있었다. 당 대순(890~891)간 그 곳에 안주사를 세웠는데 규모가 비교적 컸다 한다. 현제 절 뒤에 고안주사(古安住寺) 가 있다. 반용(蟠龍, 몸을 도사리고 있는 용), 석벽 두 곳에 글씨가 새겨 있는데, 그 중 반용, 두 글자는 청 건륭 60년, 즉 1795년에 새겼다 한다. 깊은 산중의 고찰에 길이 있기 마련이다. 이 길 또한 해방의 요충지인 건도로 통하고 있다. 고갯길을 따라 1미터 폭의 돌 층계가 깔려 있는 바, 현재도 이용할 수 있을만큼 견고하고 단정하다.

3) 답사해 보니, 해당 고개에 대한 표해록의, 즉 고개 위에 절이 길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행인들은 절의 안을 지나고 있었다는 기술과 부합되었다. 여기의 절은 사자불전(獅子佛殿)이라 불렸으나, 이미 폐허가 되어 몇 개의 거대한 굵은 석주와 부서진 담벽이 남아 이따금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최부가 지났던 전령은 바로 전오령이며, 부문령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최부는 왜 전령이라고 했을까? 고금(古今)의 이명(異名) 아니면 누락의 실수가 아닐까 싶다.

13. 건도성(健跳城)과 건도천호소(健跳千戶所)

표해록 24일 자에 건도소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주부지 권 50의 시설 편에, 건도소 성은 (영해현) 남쪽 110리 봉황산 기슭에 위치하며 바다까지는 5리다. 명 홍무20년, 즉 1387년에 신국공 탕화의 주청으로 천호(千戶)를 설치함과 동시에 축성의 책임을 맡았다. 높이는 2장 3척, 둘레는 3리 27보. 2개의 문으로, 서문은 등명문, 북문은 숭무문이라 기록되어 있다. 해당지 권 58, 군비 편에, 건도천호소는 성의 동북 110리에 위치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 건도소 성은 해문위 성과 영해현 성의 중간 지점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삼문현지의 군사시설 편에 건도소 성은 명 정통(1436~1449)간에 지휘 왕겸이 중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건된 건도소 성과 명 정통 8년, 즉 1443년의 도저소 성은 동일시대의 군사 건축물임을 알 수가 있다. 최부는 1488년에 건도를 지나 갔다. 그가

목격한 것은 왕겸이 중건한 지 51년이 채 안된 건도소 성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표해록에, "성은 해안에 접해 있었고 성문은 모두 중문이며 고각, 총포가 바다와 산을 진동했다. 날라리 등 대소각은 그 끝이 위를 향해 구부러져 있어서 그 갈고리가 취자(吹者)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다. 성 내의 인물, 주택은 도저소보다 풍성하였다 라고 기록했는데, 당시 건도인, 장보는 최부를 집으로 안내했다. 들어가 보니, 집 앞 돌기둥에는 용이 새겨져 있고, 2층 3간으로 된 대문은 금빛과 푸른 빛이 눈부셨는데 그 위에 큰 글씨로 병오과장보지가(丙午科張輔之家) 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라고 기재했다. 당시의 건도성 및 성 내의 인물, 주택 등의 기상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태주부지의 건물 편에, 건도소 성은 "국조 순치 7년, 1650년에 해구(海寇)가 점거하였으나, 제독 전응이 공파(攻破), 폐허가 되었다. 강희 24년, 1685년에 채(寨)로 다시 세웠다"라고 기재되었는 바, 현재 남산 기슭에서 북문산 기슭에 이르는 그 성의 성벽이 모두 훼손되어 있다. 그 외의 성벽은 기본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988년 삼문현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상기에서 기술한 것처럼 건도천호소는 명 홍무20년, 1387년 신국공탕 화주가 건설했다. 강희통지(康熙通志)의 태주부지 군비고(武備考)편에, "명대 해문위지휘사사(指揮使司)가 좌, 우, 중, 전, 후의 천호소를 관할, 또한 건도, 신하, 도저의 3곳의 천호소도 관할했다"라고 기재된 바, 건도소에서 1000명의 군대를 조련했다. 또한 굉치지(宏治志)에, 정(正)천호가 1명, 부천호가 2명이라 기재되어 있고 표해록에, 당시 정천호는 이앙이며, 그는 체구가 장대하고 용모가 출중,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최부 일행을 성 문으로 안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조 시의 그 성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지금의 것은 현대 건축물이라 당시 천호소의 관아는 찾기가 어려웠다. 공관(公所)에 대해서 표해록은, "이앙이 한 객관으로 인도했다. 적용, 하청, 왕광, 왕해 등도 뒤 따랐다.... 그들이 탁자에 둘러서서 표류 내력을 묻자, 최부는 그 전말을 설명했다. 이앙이 최부에게 마루에 오르기를 권하며, 주객의 예를 행하였다. 이앙은 서쪽 계단, 최부는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마주서서 절했다. 이앙은 최부에게 다과를, 일행에게는 술과 고기를 내주며 매우 정성을 다했다"라고 기록된 바, 이곳에서 객관은 도저성의 공관과 비슷하다. 당시 실제로 상면했던 건도인 장보는 그의 조선 최교리를 보내며(送朝鮮崔校理序)라는 글에서, 그가 인솔했던 일행 43명을 공소에 맞아들였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해당 공소는 승당(升堂)의 당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큰 마루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계단씩 걸어서 올라갔던 것이다. 게다가 마루가 매우 넓어 최부 등 43명을 접대할 수 있었다. 공소는 바로 천호소 관아 내, 아니면 바로 관아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장보(張輔), 표해록에서는 그가 병오년에 등과했다고 했는데, 삼문현지의 인물록 편의 기록과도 부합된다. 그는 명 성화22년(1486), 즉 병오년에 향시 중례부 을에 합격했다. 이 또한 표해록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장보는 향시에 급제하고 기수현 교유(教諭)에 임명된다. 머지 않아 부친의 상을 당하여 귀가

했다. 1488년 최부는 건도로 가서 장보를 알게 되고. 그의 집에 초청받아 몇 마디 환담을 나누었다. 광서 영해현지의 예문내편(藝文內編)에 장보의 조선 최교리를 보내며 라는 글이 실려 있다.

14. 최부가 태주(台州)를 떠나다

최부일행은 건도소를 떠나, 배로 묘두수도(과거의 묘두양)를 지났다. 즉 현재의 태주를 떠난 것이다. 명조(明朝)시기에는 전 영해현이 태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 길로 겨우 태주를 벗어날 수 있었다.

표해록25일 자에, "건도소 천호 이앙은 허청 등과 함께 최부를 해상에서 전송하였다. 또한 최부도 선상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 후 적용과 함께 배로 바다를 건넜다. 저녁 무렵 영해현의 월계순검사에 도착. 성은 산 정상에 있었으며 무장한 군졸이 바닷가에 늘어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그 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태주부지의 시설편에 월계순검사성은 (영해현) 동쪽 3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 홍무 20년, 즉 1387년에 탕화의 주청으로 축조, 높이 1장 8척, 둘레 240장, 문 하나로 되어 있다.

정통 13년, 즉 1448년에 반얼의 주청으로 현의 부지사, 유창이 개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부가 목격한 것은 현의 부지사인 유창이 개축한 후 겨우 40년 된 월계순검사성인 것이 분명하다. 그 성과 건도성은 도저성의 개축 연대와 비슷하지만, 이미 헐어 없어졌다.

표해록 26일 자에 (월계) 포 앞에서 하선한 후 강 언덕을 따라 걸었다. 서양령, 허가산을 지나 시오포에 도착. 다시 백교령을 지나고 진사방을 거쳐 영해현의 백교역에 도착하였다. 역은 현안에 있었으며 성이 당이라는 현의 지사가 최부 일행을 배부르게 접대하였다. 다시 동산포, 매림포, 강선령, 항요포(필자 주: 표해록에 항공포로 오기. 태주부지에 의거함)와 해구포를 경과한 후 서점역에서 유숙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27일 자에 큰 비바람으로 냇물이 불어나 부득이 서점역에서 유숙하였고 28일 자에는 서점역을 떠나 출발,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을 고하면서(역자 주: 이백의 시, 送友人의 한 구절)태주를 벗어났던 것이다.

표해록의 결어에 우두외양에서 도저소까지 160 여 리, 도저소에서 영해현까지 400 여 리 사이에 모두 해안 벽지라 관이나 역이 없었다. 월계순검사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포(鋪)가 있었고, 영해현에 도착하여 겨우 백교역을 볼 수 있었다 라고 기록된 바, 태주부지(台州府志)의 군비 편과 태주지구지(台州地區志)의 교통 편을 살펴 보면 표해록의 기술은 당시의 사실과 부합이 된다.

1993년 판 영해현지의 역참 편에, "백교역은 원명이 영은역으로 송나라 초기에 현 정부 동쪽 백보 떨어진 곳에 건설. 원 지정 23년, 즉 1363년에 현 정부 서쪽 200보로 이

전, 백교역으로 개명. 가마꾼 50명, 역원 10명. 명 초기에 중건. 만력 20년, 즉 1592년에 상주로 이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표해록의 백교령에 도착, 군졸 20 여명이 가마를 들고 최부 일행을 영접, 최부 등 8명이 가마를 탔다는 기록을 보면 영해현 지사가 백교역의 가마꾼을 파견하여 백교령까지 와서 최부를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지(志)에 서점역도(西店驛圖)가 첨부되어 있으며, 아울러 "서점 역사는… 태주부 영해현 경계에 위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홍무 19년, 즉 1386년에 신국공(벼슬 이름), 탕화가 해도 순시 차 이곳을 지났다. 연산역과 백교역이 130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접과 환송이 어려워 20년, 즉 1387년에 증축했다. 누문(樓門)이 3칸, 중문 하나, 전청(대청)이 3칸, 후당 2칸(명, 청때에 헌), 낭방(복도 방) 각 3칸. 역장 관사 정청(정면 대청) 오른쪽, 관원이 8명, 수부 2명, 침구는 5벌인 바, 연산역의 제조와 동일하며 옛것과 새 것, 합해서 10벌. 이로써 명대 역참의 대략 면모를 알 수 있다.

최부는 태주를 떠났다. 거쳐 간 곳을 돌아보며 이 곳의 산천, 인문을 평가했던 것이다. 표해록의 결어에, 최부는 "봉화현 이남, 해안에는 고산준령과 기암괴석이 많으며 계곡의 물이 구불구불, 꽃이 만발하여 아름답다"라고 기록했고, "윤 정월에 도착, 기후는 3, 4월과 같아 보리 이삭이 막 패려 하고 있고, 죽순이 한창이었으며 복숭아, 살구꽃이 만발하였다. 또한 산이 높고, 울창한 숲, 인물은 번창하고 주택은 웅장하고 화려하니, 별천지다"라고 표해록에 기술했다.

15. 경과 노선과 지역에 대한 종합서술

상기 고찰에 의거 최부가 경과한 주요 노선과 지역에 대한 종합서술은 은 디음과 같다.

1) 명조(明朝)의 임해현, 현 삼문현의 노선 및 지역

1488년 윤 정월 16일: 표해→우두외양(포파항과 건도항구와 연결된 근해, 현 묘두양 내해 소속)→금목사해만(숙박)

17일: 상륙→금목사령→해오강두령→연강촌(이상 지금의 연적향 소속)
→노상(새벽 은유 왕을원을 만남)

18일: 노상→서리촌→서리령→선암촌(이상 현 이포진 소속)→
포봉촌→관두촌(이전 당두)→지오령→영남령→오도촌→오도령(이상 현 화교진 소속)→산장촌(안성사에서 숙박)

19일: 안성사→서잠촌→탑갱촌(이상 현 소웅진 소속)

2) 명조(明朝)의 임해현, 현 임해현 소속의 노선 및 지역

19일: 산하당→18용령→북간촌(옛명 두독)→도저소성(이상 현 도저진 소속)

20일, 21일, 22일: 도저성 체재

23일: 귀국길에 오르다. 도저성→후정촌(후정전에서 숙박)

3) 명조의 영해현, 현 삼문현의 노선 및 지역

24일: 후정전→천암촌→전오촌→전오령(표해록상은 전령)
→부문도구→건도항(배를 타고 건느다)→건도소성

25일: 건도성→건도항(수로 이용)→묘두수도(이전의 묘두양) 이상 현 건도진 소속

4) 명조, 현재의 영해현 소속의 노선 및 지역

25일: 수로 이용→월계순검사(숙박)

26일: 월계순검사(걷는다)→월계포(육로)→서양령→허가산→시오포→
백교령→진사방→백교역(영해현성내)→동산포→매림포→강선포→항요포(표해록에 항공포로 오기)→해구포→서점역(이틀밤 숫박)

28일: 서점역을 떠나다. 영해현을 떠나다. 당시 명조의 태주를 떠나다.

500여 년이 지났으나 당시 최부가 표착한 후 경과한 태주에 남긴 족적, 태주 군민(軍民)과 최부일행 43명의 후정(厚情)의 교류는 역사상 사실이며, 이를 통해 맺어진 중, 한 양국 인민간의 심후한 정의는 대대로 전승될 것이며, 또한 영원 불멸할 것이다.

〈注譯〉

①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初三日》
②《漂海錄 · 卷之三》결어 : "우두외양에서 도저소까지 160여 리, 도저소에서 영해현까지 400여 리"
③《臨海县志 · 卷九 · 兵防營制》
④《漂海錄 · 卷之二 · 二月十一日》
⑤⑥⑦⑧《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六日》
⑨⑩《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七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九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七日》
《臨海县志 · 陸路道里》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八日》: "20여 리까지 체송, 마을에 큰 다리(필자 주: 선암촌...두 고개를 지나고, 체송. 날샐무렵"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七日》
《漂海錄 · 卷之二 · 二月初八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二十三日》: "최부에게 말안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九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八日》
《三門县志 · 武裝建制》
《明史紀事本末 · 卷之五十五 · 沿海倭亂》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九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二十一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十九日》: "왜구라면 모두 선참후계"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二十一日》
《三門县志 · 陸地水體》: 6개 산의 계곡형 하천 즉 산장계(山場溪), 화교계(花橋溪), 청계(淸溪), 주유계(珠游溪), 정방계(亭旁溪), 백계(白溪)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二十四日》
《漂海錄 · 卷之一 · 閏正月二十二日》

필자 소개

왕금룡은 중국 절강 임해인으로 회포중학(고등학교) 교사이며,
태주 성인 교육원 객좌교수, 작가, 절강성민간문예가, 편저로는 "도저" 등 100여 만 자.
근래에는 표해록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연락처 : 中國浙江省臨海市回浦中學校史室
이메일 : anlun99@sina.com

Abstract

Study on the Circumstances and Present Situation of Immi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Hyun-Hee Kim (Researcher, Pyeongtaek University)

Key words: Migrant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Many ministr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s have supported women migrants since 2000. The Korean government also established comprehensive policies on social integration of women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April 2006. However, diverse policie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not only have made progress separately and sporadically but also have only concentrated on migrants' assimilation and settlemen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of immi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women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The study analyzes pull factors for immigration into Korea such as a low birth rate and the arrival of an aging society. It also introduces specific social policies to help women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clusion, the research makes suggestions for the change of current policies and win-win situations between migrants and a majority society in Korea.

Study on Supporting Programs for Multicutural Family in Korea

Hee-Seon Kim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ing Program, Integration,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tinuous introductions of supporting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women migrants from variou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central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Even thoug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integration of migrants had led the programs, the actors of the supporting programs has extended to diverse organizations like businesses and regional governments at recent tim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imitations and realities of the supporting programs in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government, corporations, and NGOs. It also suggests divers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current supporting programs such as separateness and sporadic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rograms and policies on various levels.

Study on Supporting Program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Japan: Case Study on the Yamagata Prefecture

Bum-Soo Kim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

Key words: Mutlicultural Coexistence, Supporting Program, Yamagata Prefecture, Jap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upporting program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of the Yamagata Prefecture in Japan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he change of policies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 study is based on the field researche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in the "Dewa Shonai International Village" which was set up in 1994 in Tsuruoka city of the Yamagata Prefecture.

It shows the specific programs and policies of multicutural coexistence in the Yamagata Prefecture as follows: First, public institution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multicultural coexistence programs. Second, some individual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system. Third, a central organization to supervise and encourage the programs was formed and has supported other organizations. Fourth, There have been various multilingual programs. Fifth, many organizations have held cultural and food festivals in relation to multiclulturalism. Sixth, multicultural coexistence programs have been linked with tour programs of the city. Centr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Korea need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s of the Yamagata Prefecture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small cities such as Ansan and Pyeongtaek.

Policy on Multicultural Family in Germany

Yong-Seung Lee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Multicultural Policy, 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Germany

Germany recognized at recent times that the German society is changed as a multicultural one, but there have been anti-immigration sentiments and racial discriminations in social and economic areas. However, the Germ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for the integration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to a majority society.

Immigration to Germany originated in the recruitment of guestworkers in the 1950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economy, the German government had employed many migrant workers who were from Southern Europe and Asia. The German government's guestworker program aimed at the return of foreign workers to origin countries, but the policy failed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employers and employees' economic interest. After the continuous settlements and community formations of migrants, the German government admitted the realities of mulicultural society establishment and has formed new integration policies on migrants.

This study explains the change of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in Germany and specifically makes an analysis of the limitations and practice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various policie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olutions to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in Korea.

Study on Choi Bu's Mooring and Landing Point and his Travel Routes across Taizhou at Zhejiang in China.

Wang Jing Long(Professor of Taozhu Education Academy for Grown-ups)

Key words: Piao Hai Lu, Choi Bu's arrival and travel routes, Taizhou, Taozhu Castle.

Piao Hai Lu is the diary of drifting across the sea written by Choi Bu(1454-1504), an official of Korea, then Joseon Dynasty, who was caught in a storm off the coast of southern islet of Korea en route home to mourn his father's death, and then drifted in his vessel together with his other 42 attendants. Eventually they managed to arrive at the eastern coast of China, and started his adventures as a castaway and unwelcoming visitor for more than five months both in open sea and inside China until their returning home.

Meanhile the moment he landed at a certain seashore of Taizhou district he was arrested under suspicion of Japanese pirates. After their arriving they were forcibly driven on and on by Chinese officials and soldiers, and fainally reached Taozhu Old Castle, then a navy fortress where he underwent an intensive hearing of the case for nearly 5 days from the Chinese authorities. When Choi Bu was thoroughly questioned there, his identity was proved that he was an officer of the friendly neighbor state, Joseon. He was afterwards released and was sent back all the way home along with his 42-men under the courteous escort of Chinese officials.

Taozhou was a critical point to seal Choi Bu's fate in such a castaway career. Namely the Taozhu, where he stayed for 12 days out of the whole 135 days covering 280km inland, was a starting point and a terminal at the same time for his career. The writer deals with the whole routes of Taozhu where Choi Bu and his party set their feet on, not to mention their first arriving and mooring point. The writer surveyed the whole palces at Taozhu on his foot referring each by each to the related old accounts, leading to conclude that Chi Bu's records and descriptions in his diary, Piao Hai Lu were perfect and manifest.

『민족연구』 논문투고와 집필요령 및 심사과정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설정, 현대세계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본 연구원은 관련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Ⅰ.논문투고

1.편집대상: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국가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등과 관련된 논문.
2.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의 논문은 편집대상에서 제외함.
3.원고는 '한글' 혹은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본 1부와 디스켓을 아래주소로 우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기 바람.
4.연락처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전화번호: 010-4716-3616
Fax: 925-3906
Email: goodsociety123@hanmail.net

Ⅱ.논문집필요령

1.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120매 혹은 A4용지 15-20매 내외.
2.한자와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
3.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 각주 작성 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292쪽.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95.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민족연구』 제5호, 150-151쪽.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pp. 799-801.

2)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민족연구』 제5호.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Ⅲ.논문심사

1.본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음.
2.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함.
3.심사위원 3인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개별 심사위원의 "가, 수정,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됨.
4.심사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3인 기준)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 수정,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5.수정과정에서 논문 필자는 수정한 부분을 별도의 양식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함.

Ⅳ.『민족연구』발행일 및 논문투고 마감일

민족연구 발행일	논문 마감일
2006년 3월 1일	2005년 12월 31일
2006년 6월 1일	2006년 3월 31일
2006년 9월 1일	2006년 6월 31일
2006년 12월 1일	2006년 9월 31일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4회 발행 · 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cncho.pe.kr/krce)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인적구성

원　　장 : 趙玫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위원 : 葛振家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Dmitry V. MYONG(국립 알마티대학교 교수)
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우평균, 김인성, 조화성, 김용찬
연 구 원 : 고병국, 김태영, 강권찬, 박지원, 이용승, 김혜림, 김희선
유정석, 송종호, 정려정, 김재원

발 행 처

민 족 연 구
31

〈계 간〉

ISSN 1229-2796

〈저널 편집부〉
편집인 : 조 정 남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
우/142-881 (☎ 010-4716-3616)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발행일 : 2007년 9월 1일(연 4회 간)
발행처 : 교양사회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편집위원〉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김인성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기완 (창원대학교 교수)
조정남 (고려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Dmitry V. MYONG(국립 알마티국립대학 교수)

〈편집주간〉
김용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www.goodsociety.co.kr

시대와 민족연구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대와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대와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교양사회

----------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교양사회

저 널 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시대와 민족연구		계간	4권(1년분)	₩ 60,000	~	
			8권(2년분)	₩ 10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